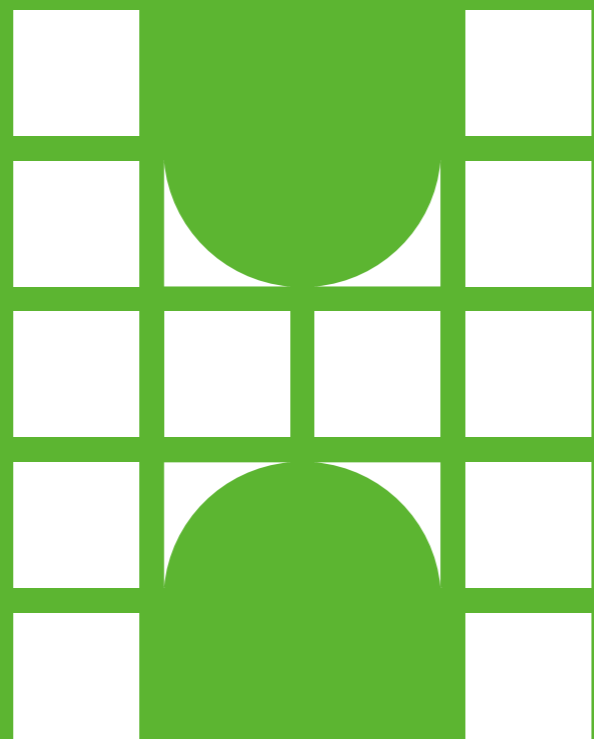


ISBN 979-11-6599-881-3 1354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공공주택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PUBLIC HOUSING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공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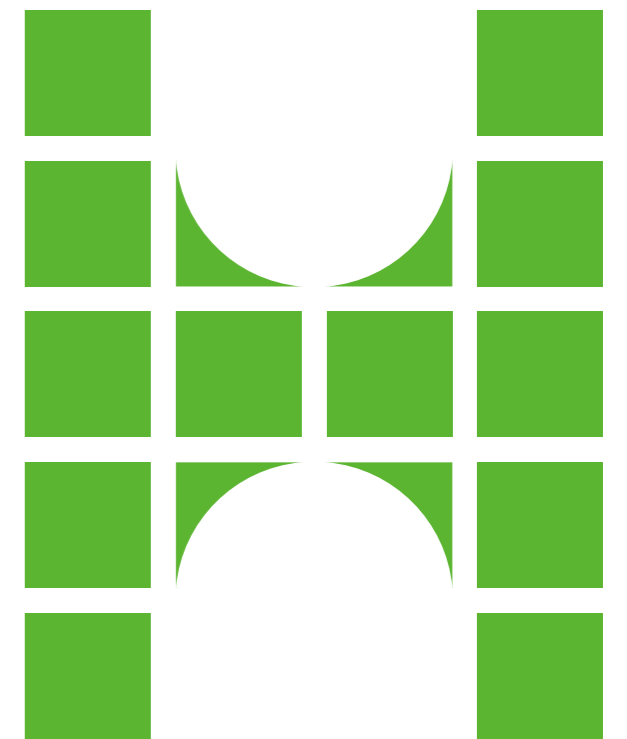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855-01

PUBLIC

HOUSING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PUBLIC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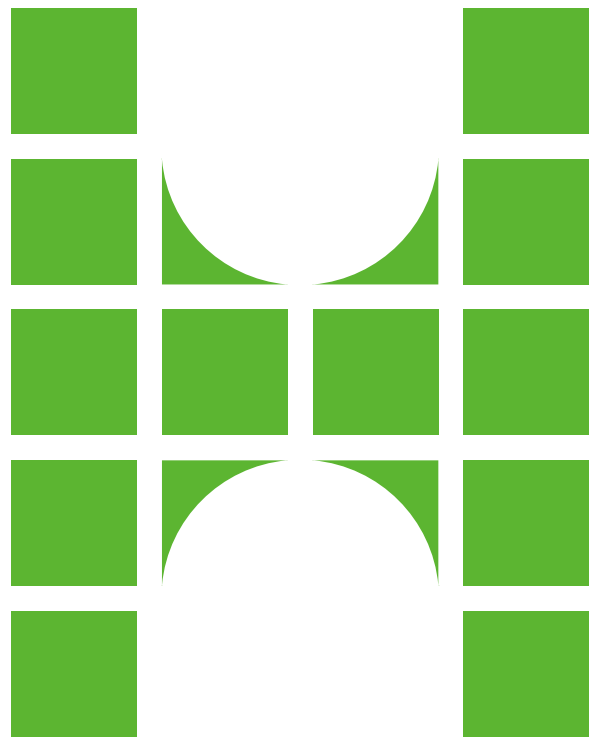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공공주택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PUBLIC
HOUSING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공공주택 소개

본 적용지침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적용지침을 고도화하고, 이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수립) <개정 및 신설 2021.7.20.>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지침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적용목적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입주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시민의 신체 상황, 세대 유형 및 주택 규모 특성을 고려한 UD적용 기준과 모델을 개발·확산을 목표로 한다.
- 서울시 공공주택 내 정주성(AIP; Aging In Place)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본 지침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고려는 노인(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포함), 장애인(이동, 감각, 소통, 정신 및 지적 장애 등), 어린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활용방향

본 지침은 공공주택 기획, 공모, 설계 및 공사 등 조성 과정의 단계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내용 검토 시 활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이 되도록 한다.

적용원칙

본 지침은 모든 입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공간별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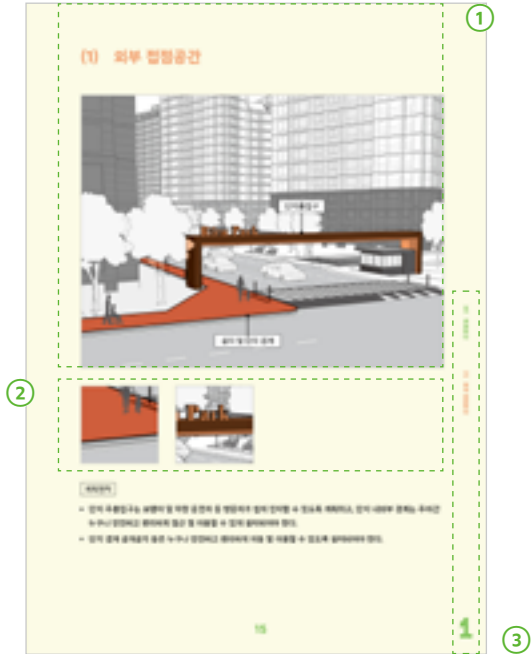
- 접근성: 옥내외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등의 고려 요소
- 편리성: 각종 시설물, 설비, 가구 등의 편리한 조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설비 등의 고려 요소
- 안전성: 옥내외 모든 공간에서의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피난 및 안전한 구호대기와 관련된 공간, 설비 및 안내표지 등의 고려 요소
- 선택가능성: 주거의 선택, 이동, 정주(AIP) 등의 지원을 위한 공간과 설비 등의 고려 요소
- 지속성: 공간, 시설과 공동체의 성능이 유지 및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공간, 설비, 서비스와 운영 등의 고려 요소

주택의 입주자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한다.

- 주택 형태별로는 소형(21~39㎡ 내외의 1LDK 유형), 중소형(41~51㎡ 내외의 1LDK+1~2R 유형), 중형(59~84㎡ 내외의 1LDK+2~3R) 으로 구분한다.
- 주택의 입주자 특성별로 UD세대, UD+세대(주거약자형), UD++세대(중증장애인형)로 구분하고, 사업지의 규모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활용방법

본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이미지는 지침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이미지를 참고하여 사업여건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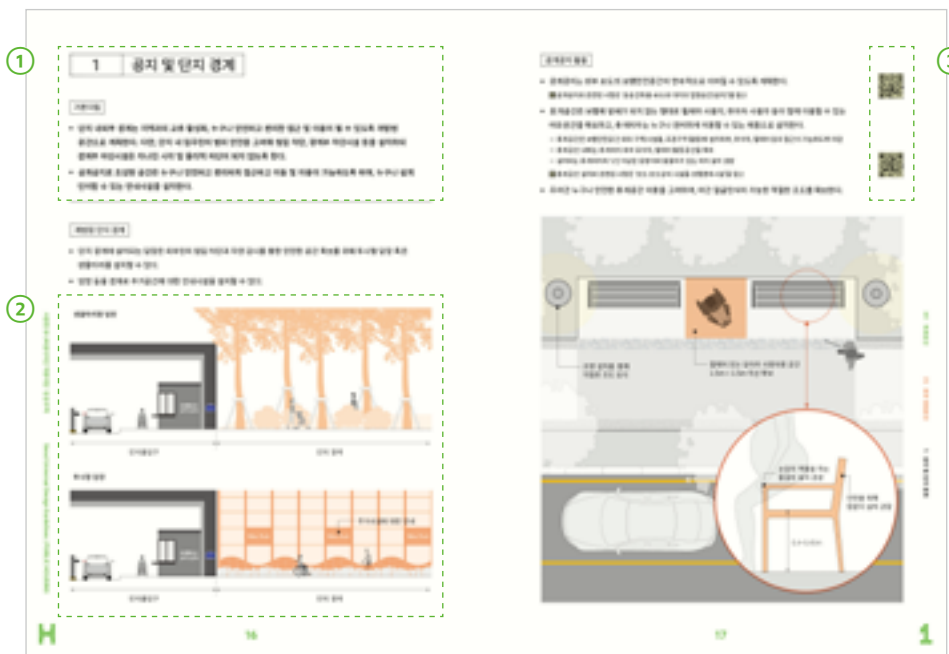
① 먼저, 전체 구성을 알아본다.

소분류 첫 페이지에 위치한 이미지를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계획 시 필요한 상세 요점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 ① 소분류 전체 이미지
- ② 상세 요점 부분
- ③ 페이지 분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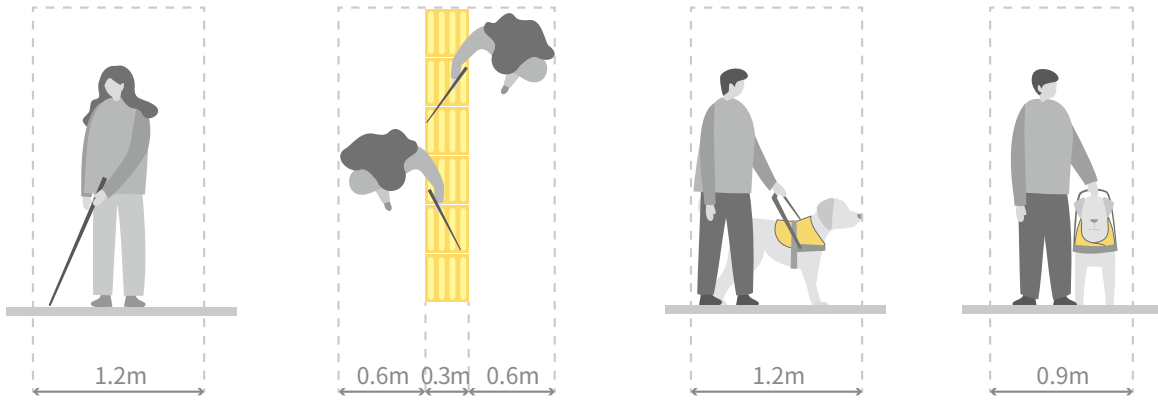
그 다음, 자세히 살펴본다.

상세 이미지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글과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세부 수치 및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주변 상황과의 관계 등을 통해 더 심도있는 이해를 돕는다. 관련 자료는 페이지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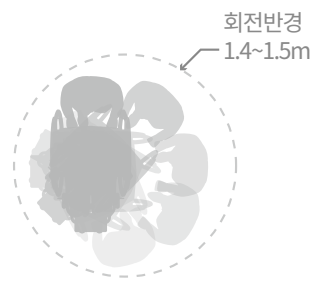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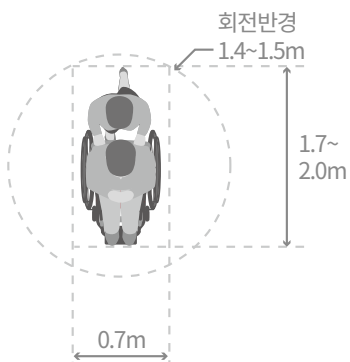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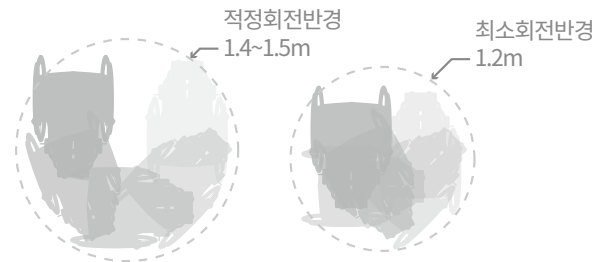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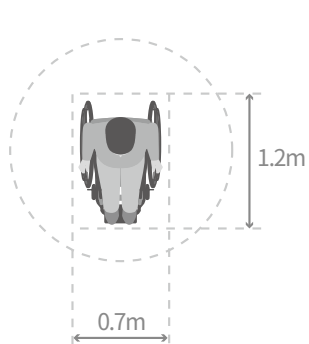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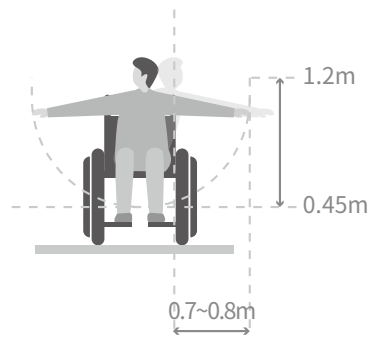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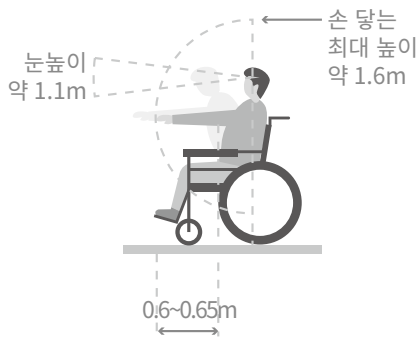


- ① 상세 타이틀 및 기본지침
- ②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③ 참고자료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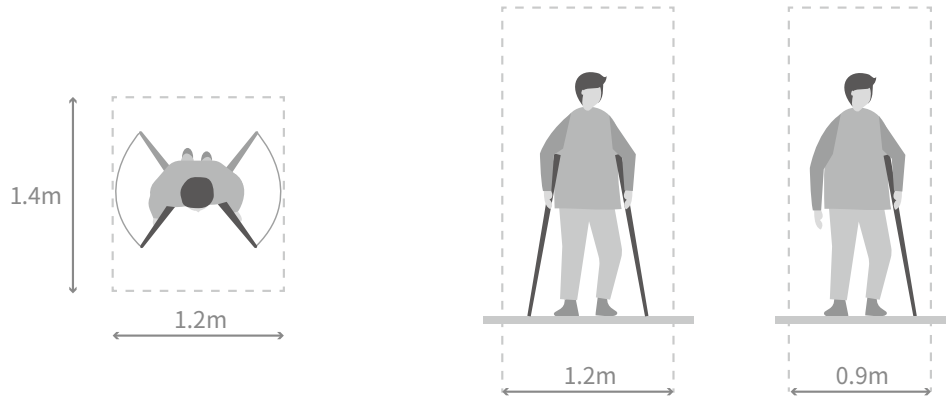
1.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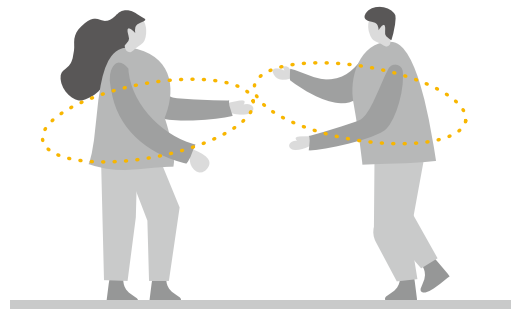
2. 휠체어 사용자



3. 목발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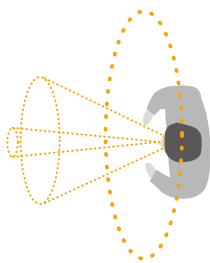


4. 청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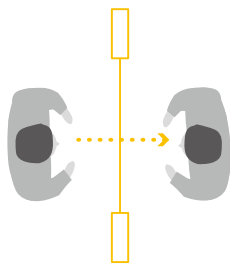


수어 사용을 위한 행동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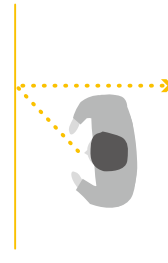
청각장애인의 인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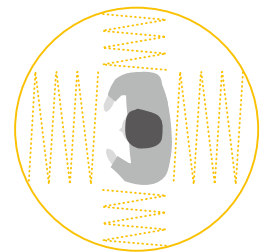
시각과 후각



투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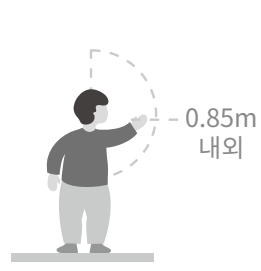


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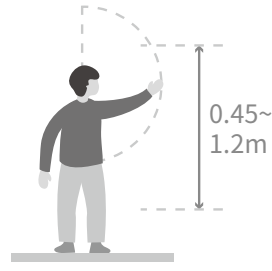


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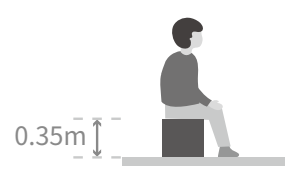
5. 어린이/저신장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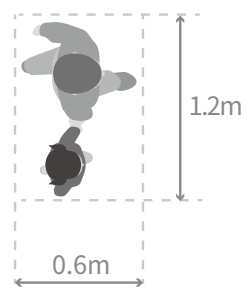
저신장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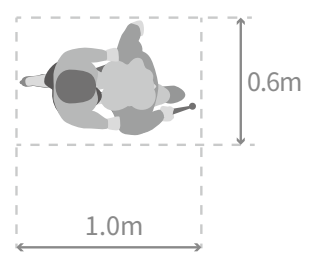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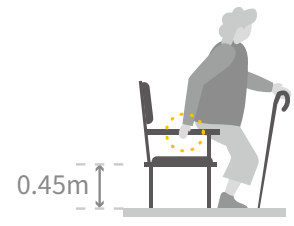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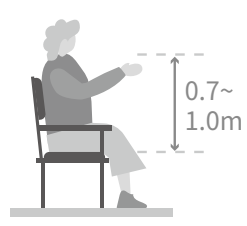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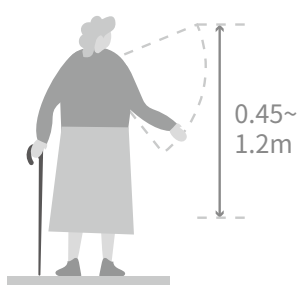
어린이(3~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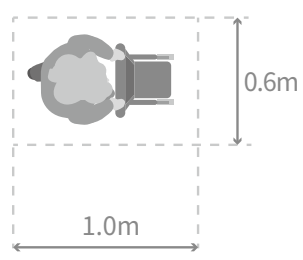
어린이(3~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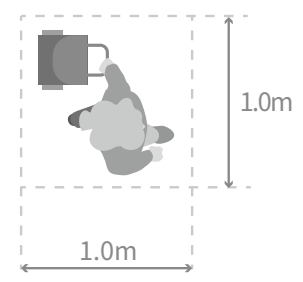
6. 노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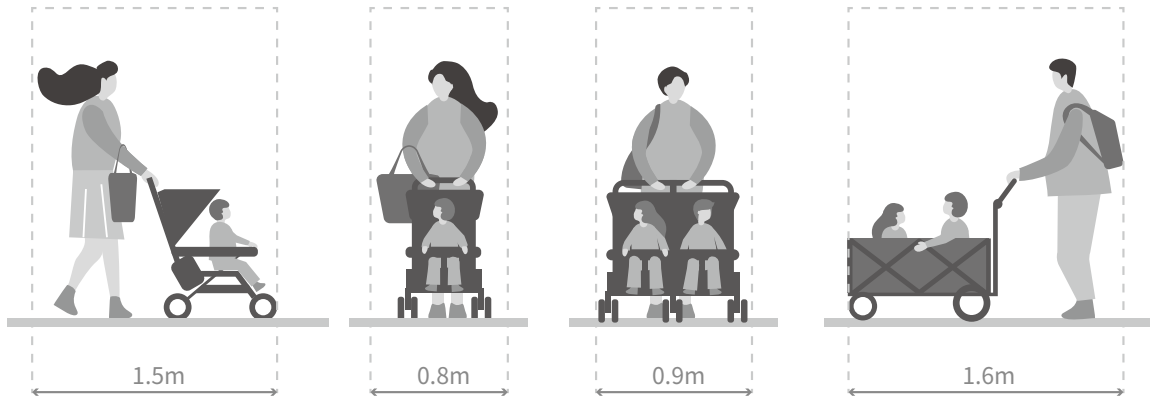


보행보조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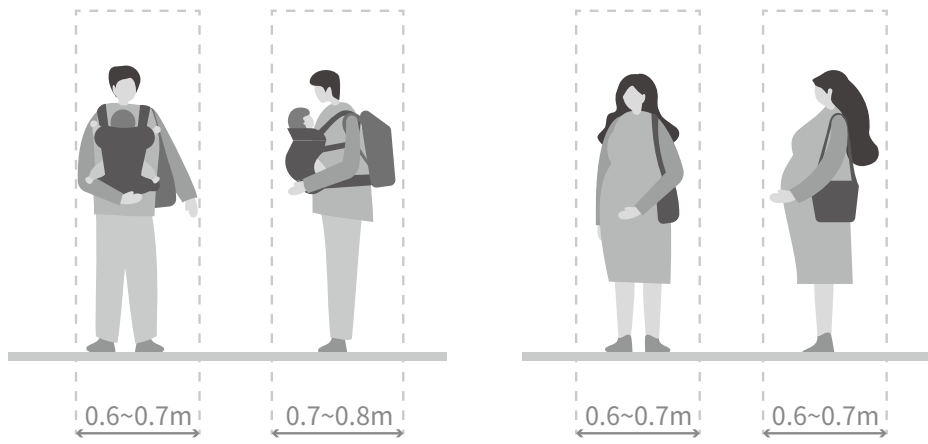


장바구니 사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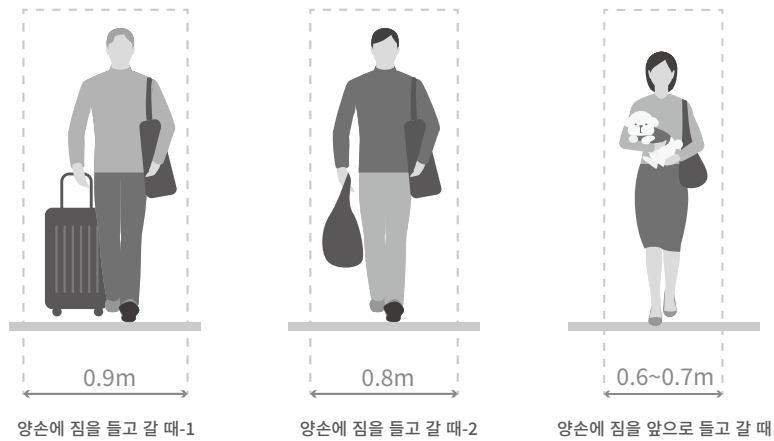
7. 유아차/쌍둥이 유아차/유아웨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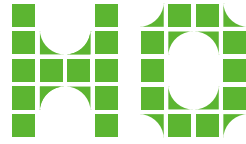
8. 아기띠 사용자/임산부



9. 기타 사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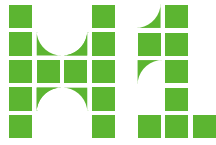


개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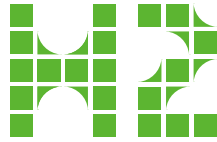
옥외공간



13

- (1) 외부 접점공간 15
- (2) 단지 내 이동공간 23
- (3) 차량공간 30
- (4) 안내 및 기타공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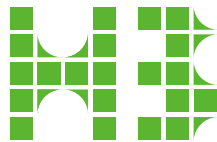
주거동



47

- (1) 공용출입구 49
- (2) 공용홀 및 복도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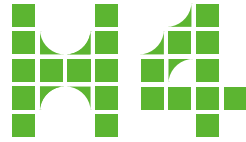
단위세대



61

- (1) 출입문 및 현관 63
- (2) 거실 및 통로 71
- (3) 주방 77
- (4) 위생공간 82
- (5) 방 90
- (6) 다용도실 및 발코니 93

주거동 외 시설



99

(1) 공동체 지원시설

101

(2) 관리 지원시설

108

운영 및 유지관리



113

(1) 공동체 활성화 지원

115

(2) 유지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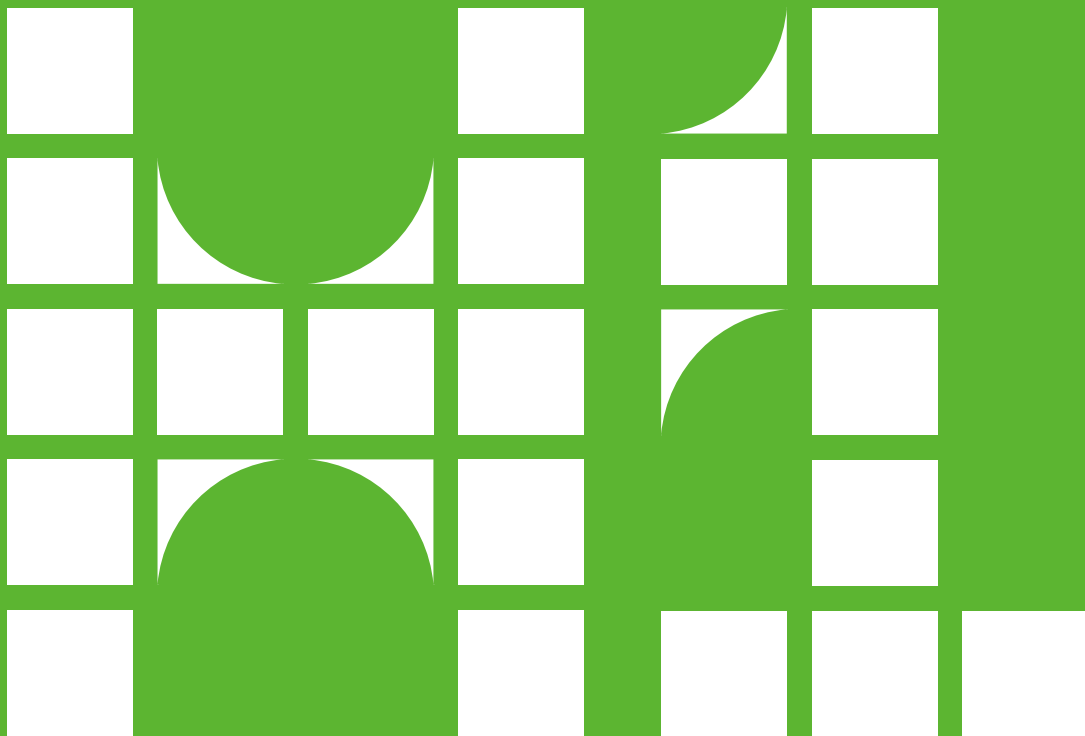
117

부록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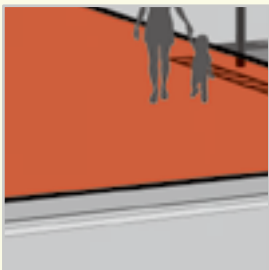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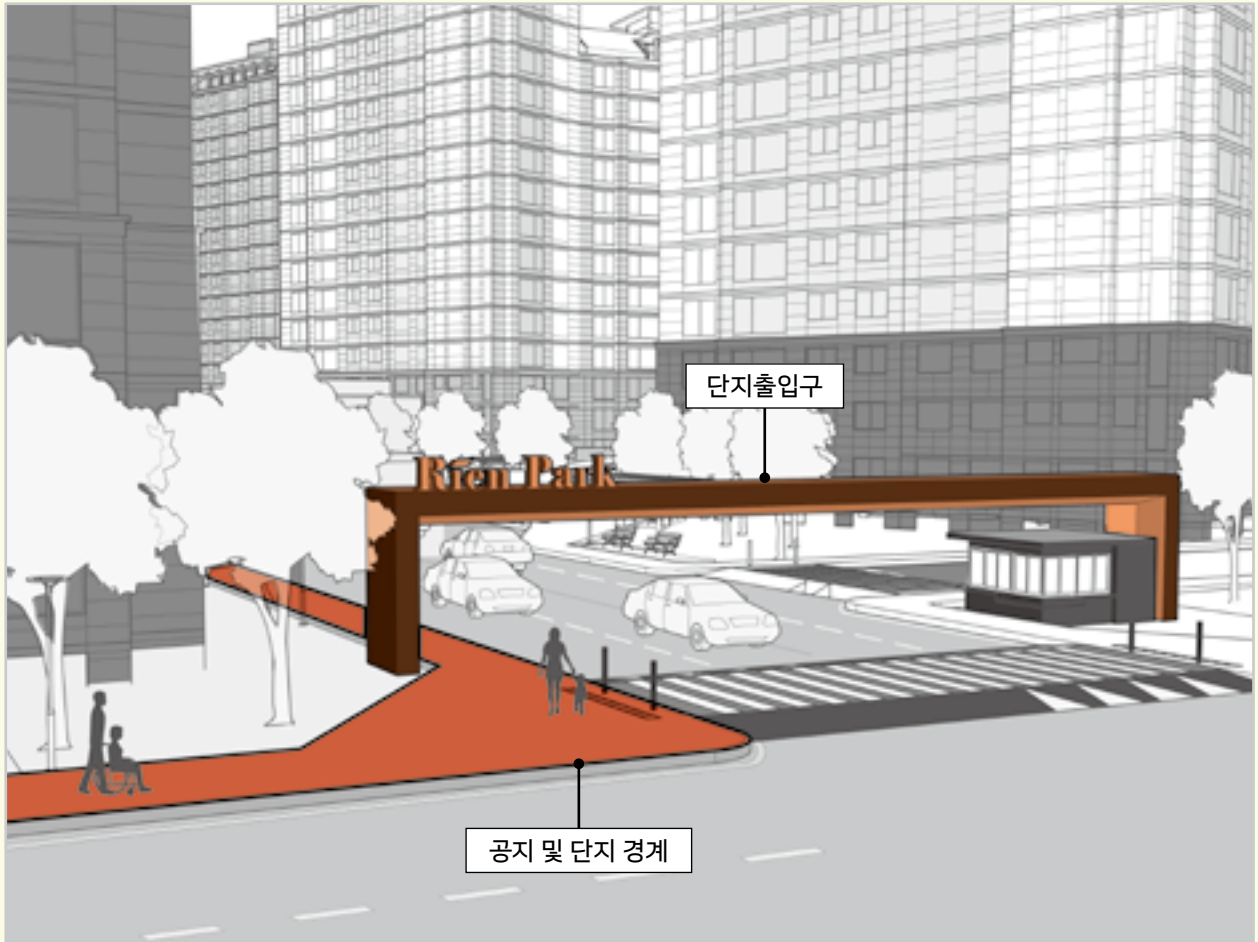
옥외공간



(1) 외부 접점공간	15
(2) 단지 내 이동공간	23
(3) 차량공간	30
(4) 안내 및 기타공간	38



(1) 외부 접점공간



계획원칙

- 단지 주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방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단지 내외부 경계는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경계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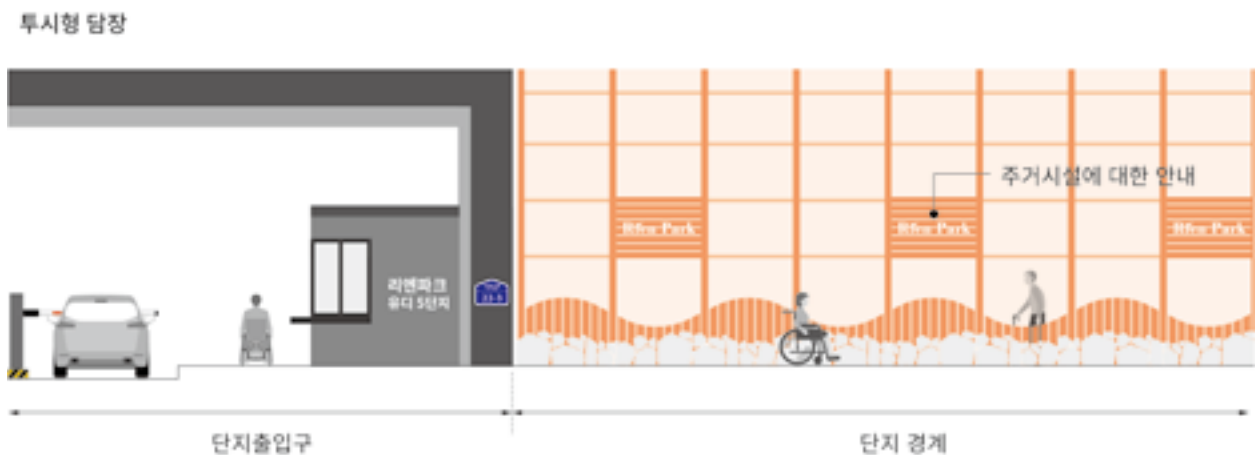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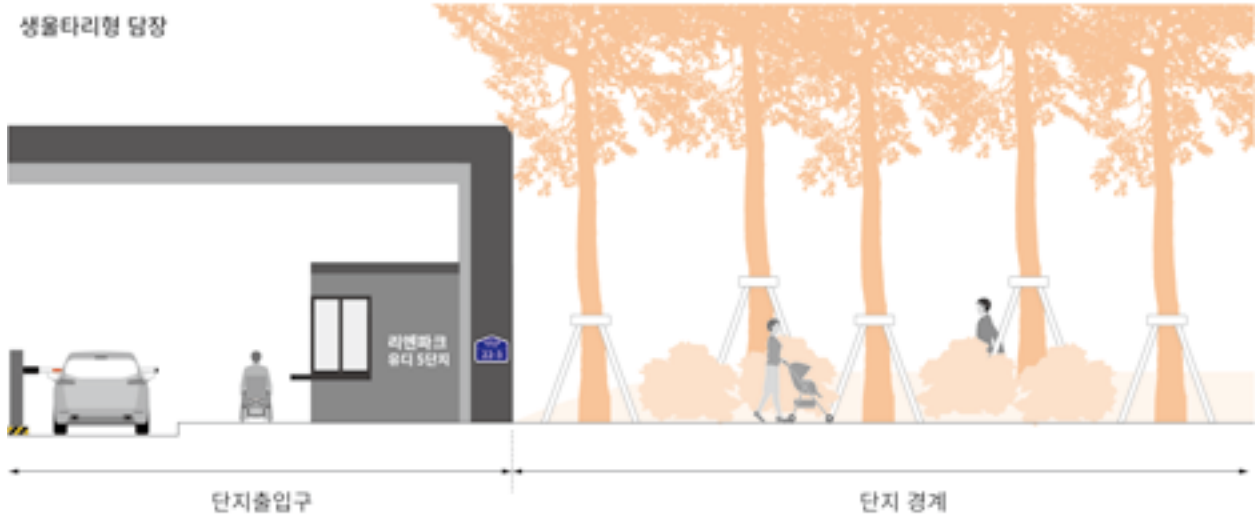
공지 및 단지 경계

기본지침

- 단지 내외부 경계는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만, 단지 내 입주민의 범죄 안전을 고려해 침입 차단, 경계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되 경계부 차단시설은 지나친 시각 및 물리적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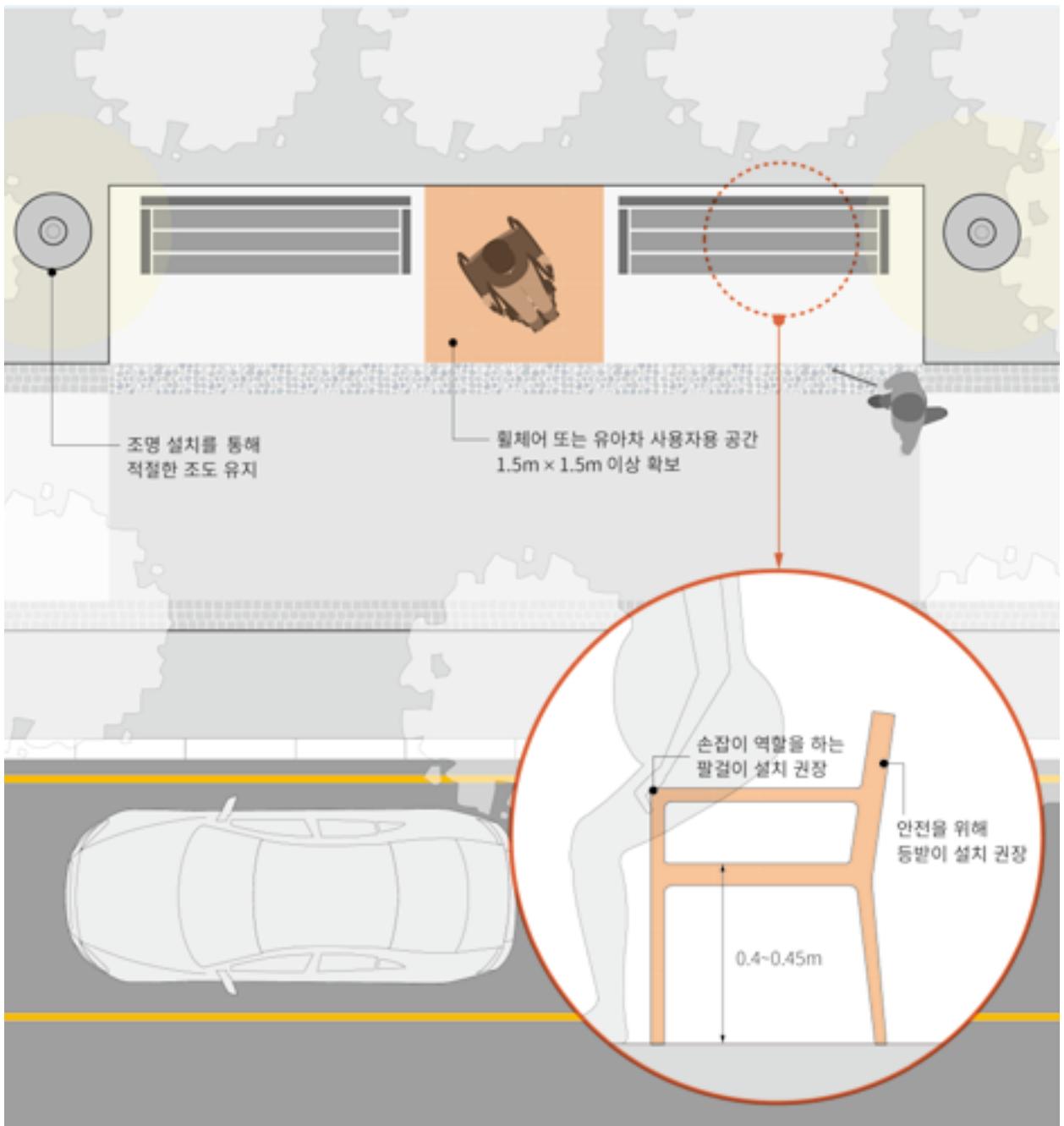
개방된 단지 경계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 차단과 자연 감시를 통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담장 등을 경계로 주거공간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활용

- 공개공지는 외부 보도의 보행안전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공지)'를 참고
-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의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시설물, 조경구역 활용)에 설치하며, 유아차,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감
 - 휴게공간 내에는 휴게의자 외의 유아차,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
 - 설치되는 휴게의자의 1/2 이상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설치 권장
 - ▣ 휴게공간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보행편의시설'을 참고
- 주야간 누구나 안전한 휴게공간 이용을 고려하여, 야간 얼굴인식이 가능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2

단지 출입구

기본지침

- 단지 주출입구는 방문자 누구나 쉽게 주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단지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출입구의 내외부 경계 지점과 출입문 등은 단지 외부 보행로에서 단지 내부까지 주야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 단지 내부로 연결되는 보행로의 기울기 확보를 위해 단지 외부의 기존 보행로에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단지 내외부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누구나 차량 접근에 대한 쉬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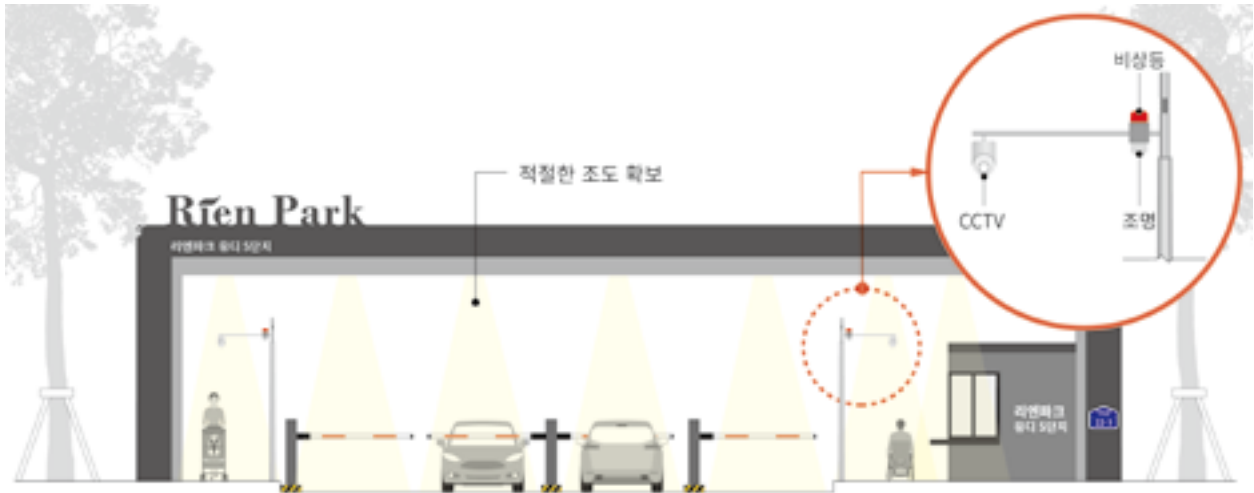
인지성 확보(출입구 인지)

- 시설물(상징물, 문주, 조경수 등)을 설치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색상, 재질 등)를 통해 인지성과 영역성 확보를 고려한다. 단, 지나친 경계 구분이나 단절감으로 인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주거단지 명칭 또는 주소 표시는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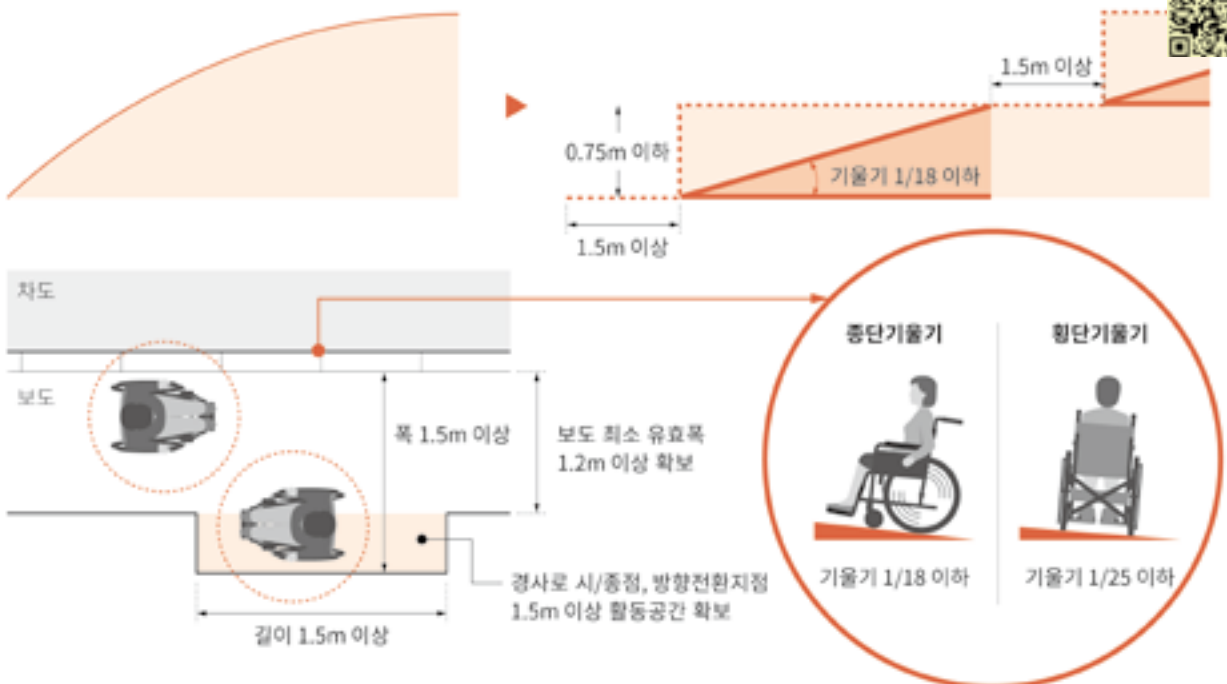
인지성 확보(안전공간화)

- 단지 출입구에는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위해 경비실, 차량 및 보행자 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한다.
- 문주 하부, 산책로, 경비실 인근에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개선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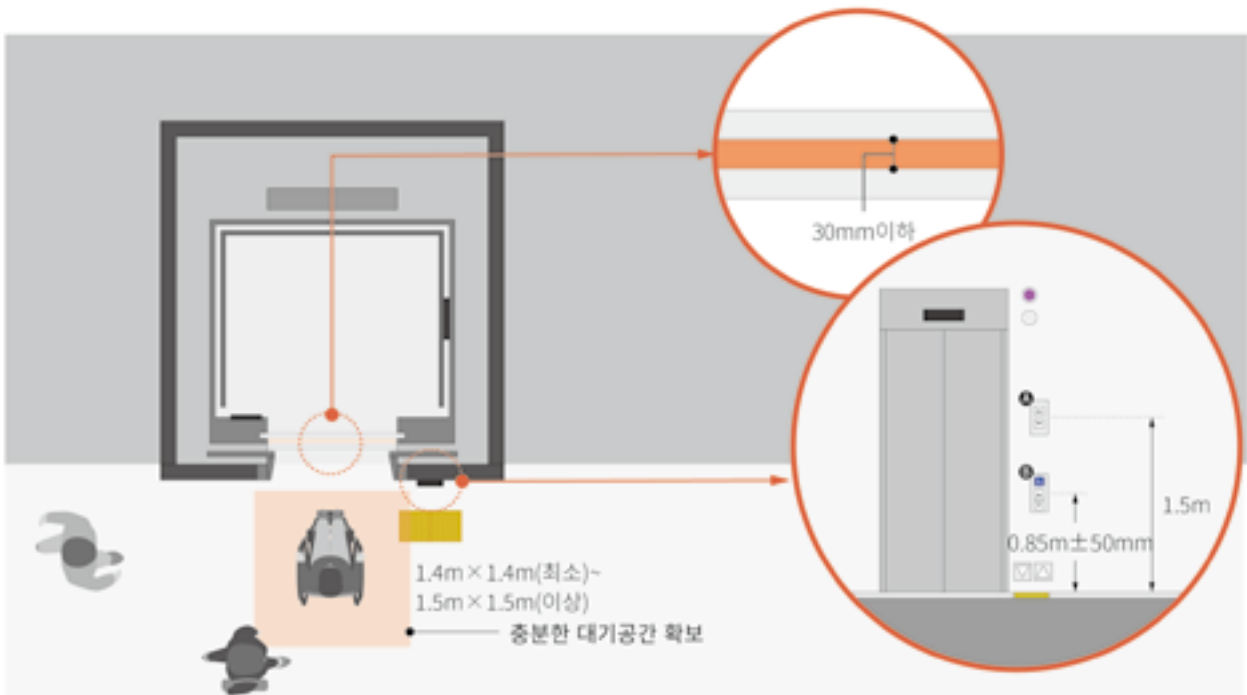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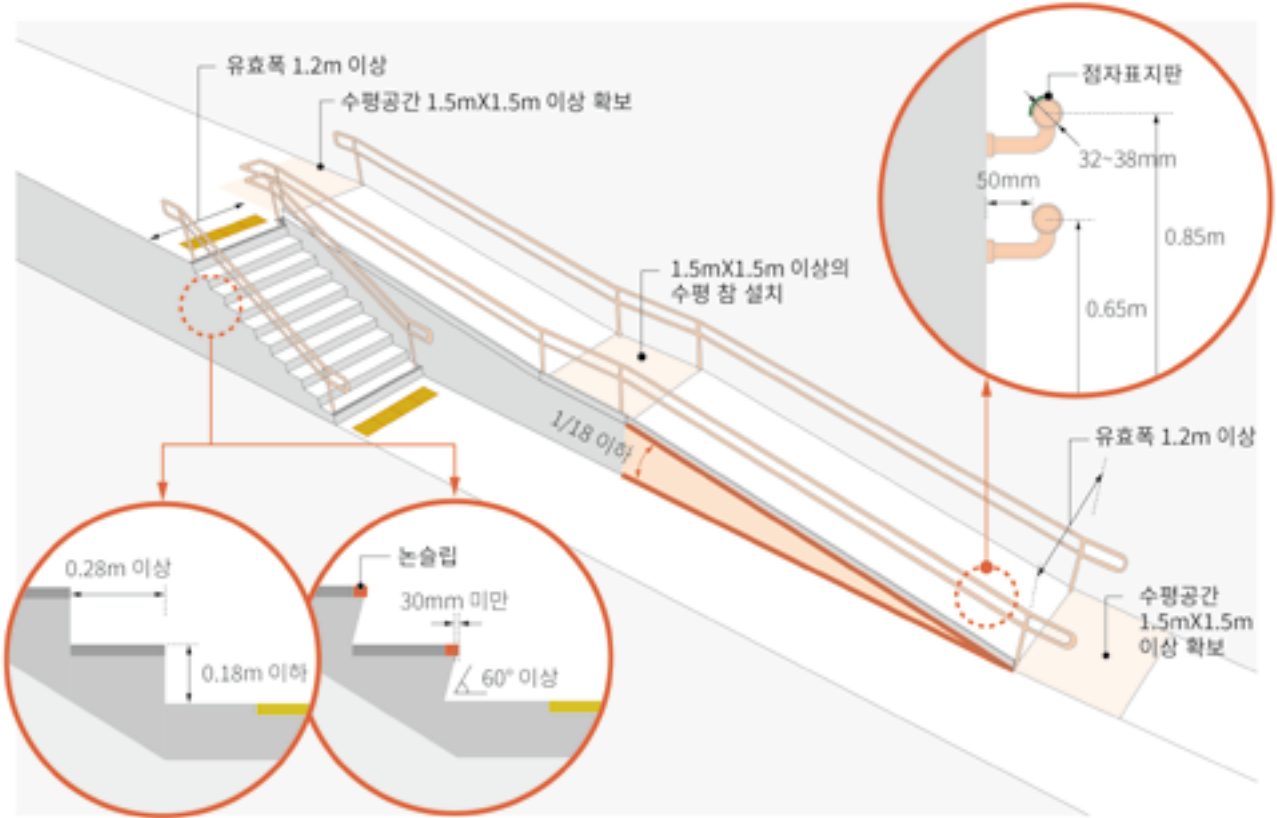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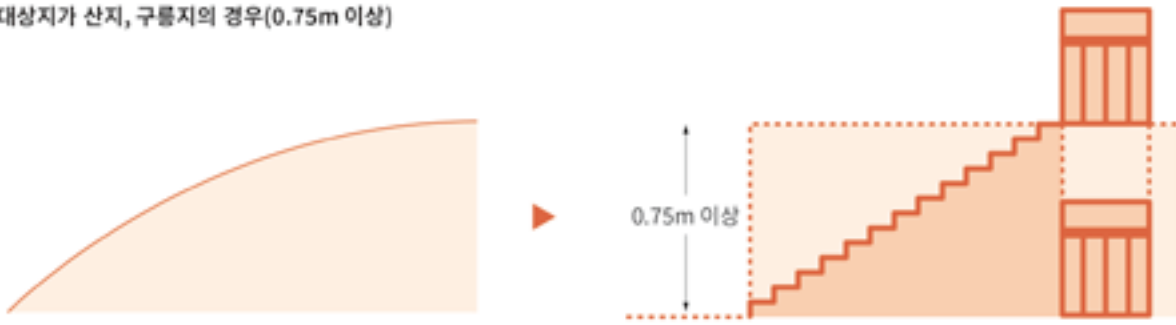


경계부 높이 차이 제거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구분한다.
- 보행로는 단지 내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보도와 단지 경계의 접점에서 급격한 높이 차이로 인한 경사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단지 외부 보행로의 횡경사는 1/25 이하로 처리
 - 단지 내부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종단 1/18 이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단, 경사로 시/종점과 방향 전환 지점은 1.5m 이상의 수평 활동공간 확보
- 산지, 구릉지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0.75m 이하의 높이차이가 되도록 계획하며, 높이 차이 극복을 위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 수직이동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공간-내부이동공간-높이 차이 제거',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승강기 설치 기준'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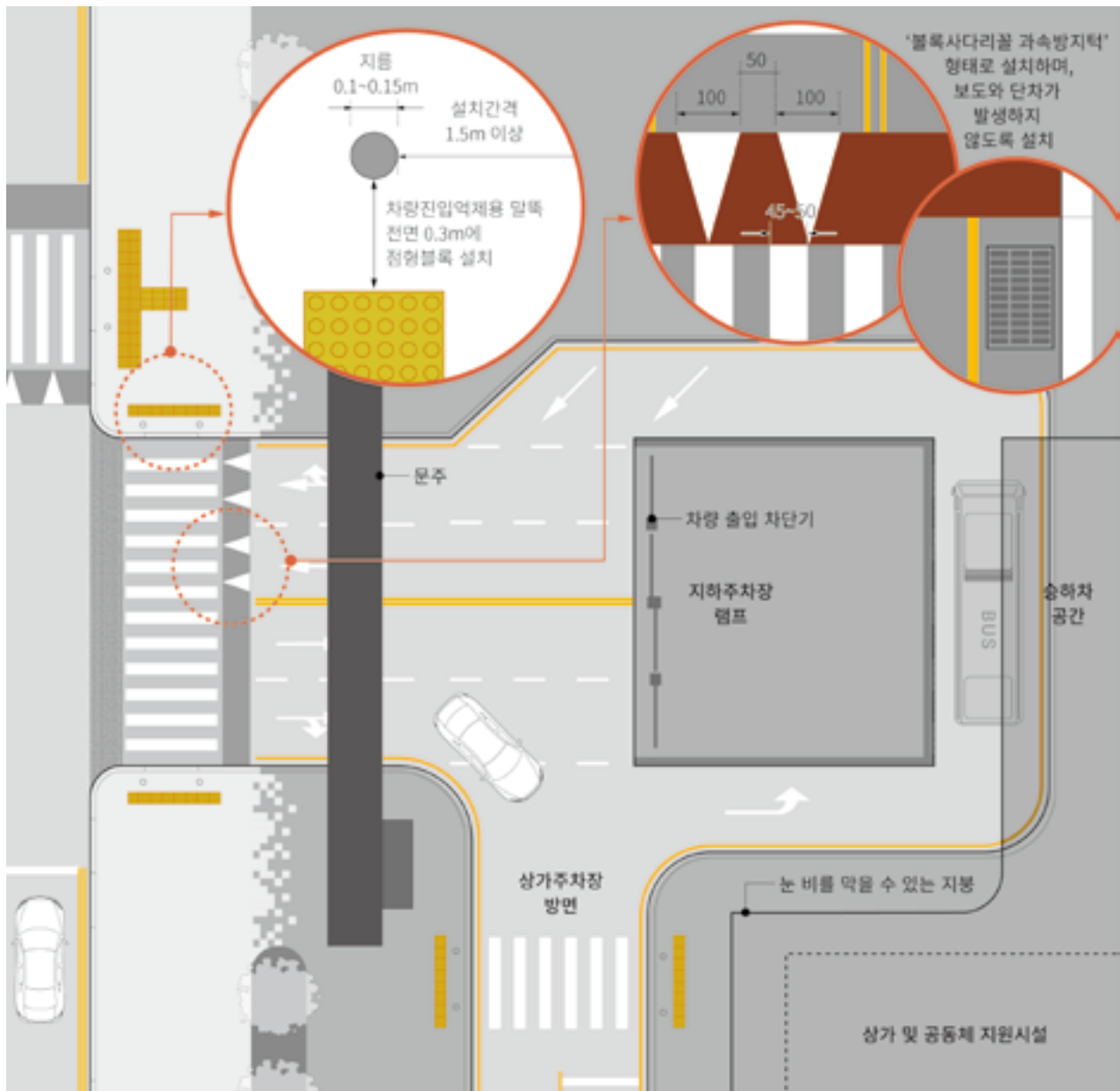


대상지가 산지, 구릉지의 경우(0.75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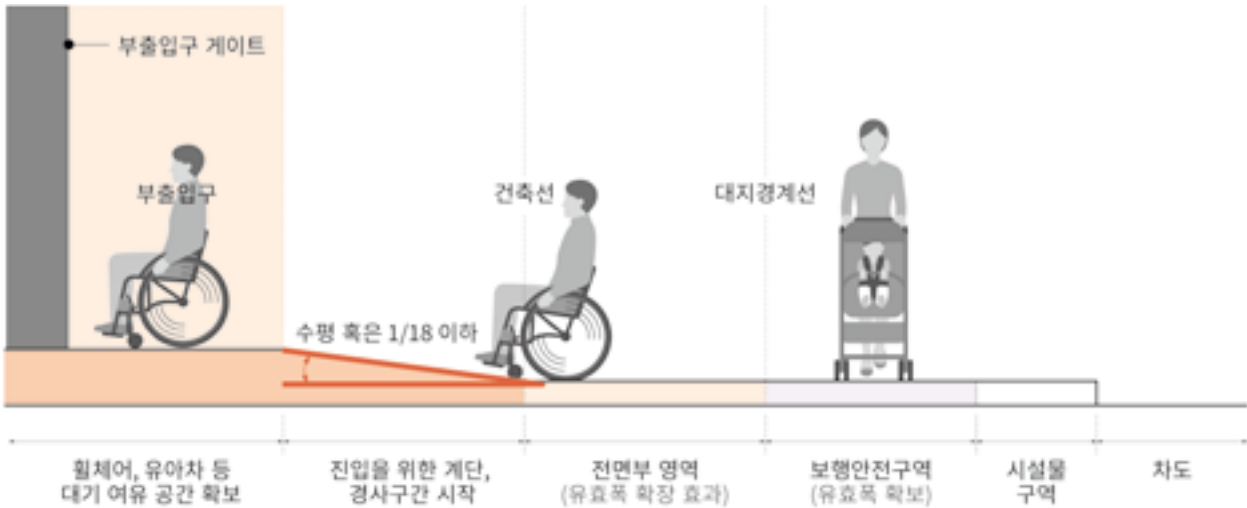
차량 진출입구 및 차량통제

- 단지 출입구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차로 횡단이 가능하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호우 시 물 고임 방지를 위해 경계부에는 미끄럽지 않고, 틈새가 좁은 배수 설비를 설치
 - 횡단보도의 경계 및 대기공간에는 이질재, 경고블럭,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 주의·경고 시설을 설치
- ▣ 보차교행구간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차량 진출입구'를 참고
- 차량 출입 차단기 전후 공간에는 1대 이상의 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차량 출입 차단기에는 방문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출입 요청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카메라 내장된 관리자 통화/호출 설비, 차량 자동인식 등 지원설비 설치 권장
- 주출입구 인근에는 승하차 공간 및 회차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옥외 승하차 이용자 등의 편의를 확보한다.
 - 옥외 승하차 공간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동선을 짧게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부출입구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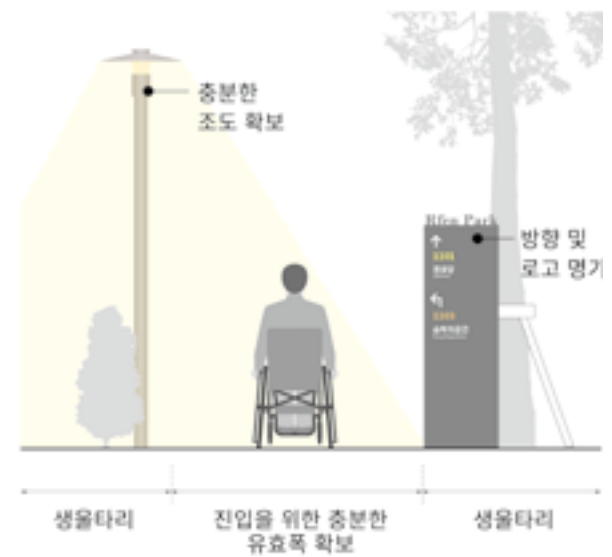
- 보도에서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지형상의 이유로 계단, 경사로 등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출입문 설치 시에는 조작 설비의 위치, 문의 형태와 규모, 보안키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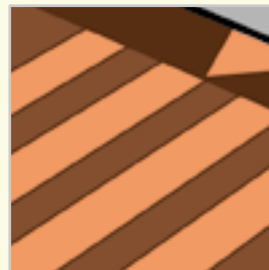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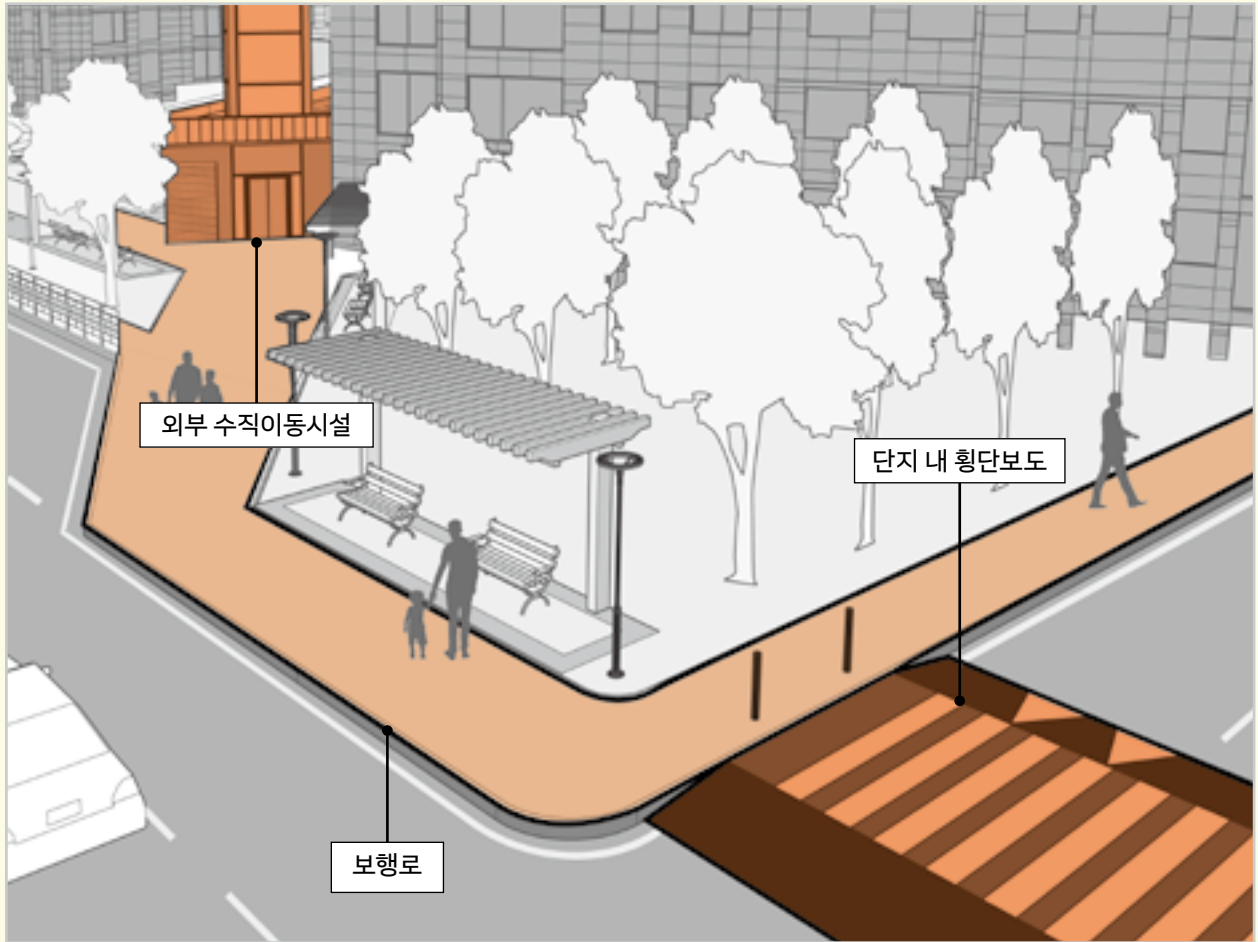
부출입구 게이트가 있는 경우



부출입구 게이트가 없는 경우



(2) 단지 내 이동공간



계획원칙

- 단지 내 주거동, 각종 공간과 시설 등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리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옥외 공간은 보행자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로 횡단 구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 상에 높이 차이 또는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또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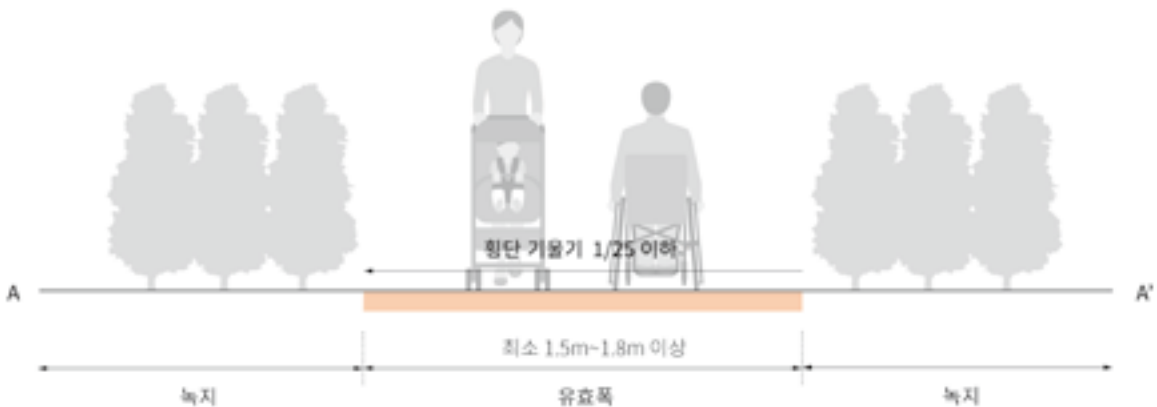
보행로

기본지침

- 단지 외부 경계에서 내부의 각 주거동과 각종 공간 및 시설 등의 출입구까지는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된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 자전거도로와 연속성을 갖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안전공간 확보

- 주 이용시설과 연결되는 보행로는 누구나 보행 및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한다.
 - ▣ 보행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보행접근'과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내부이동공간'을 참고
- 거주자 및 외부인의 단지 내 시설 이용, 단지 내 공공공간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광장형, 공원형 등 보행로 설치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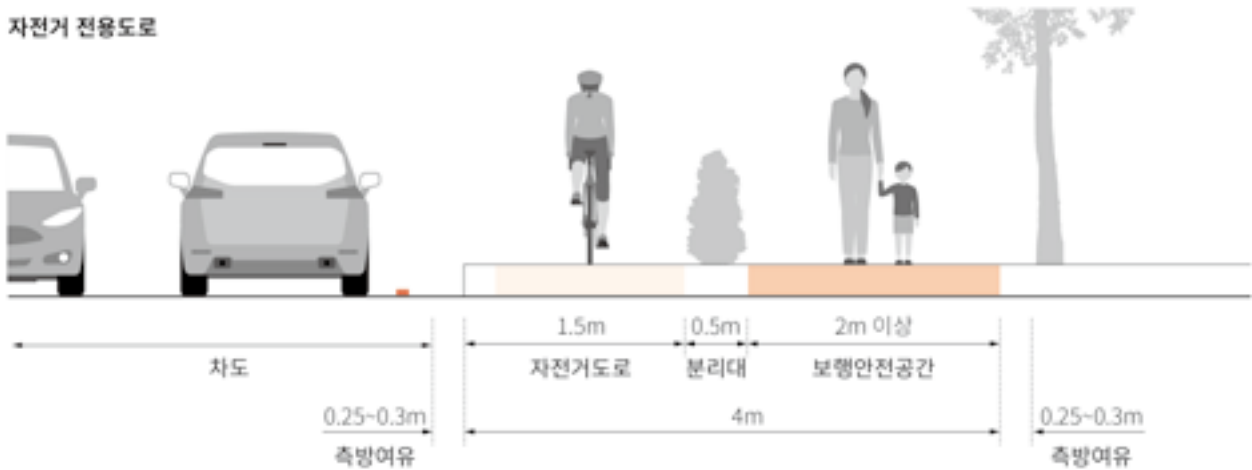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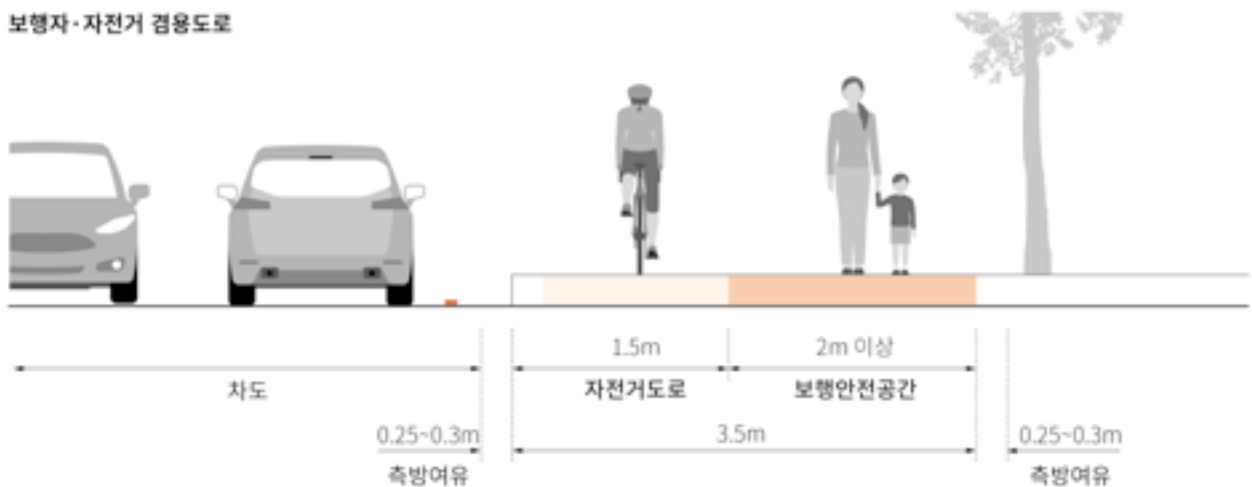
- 단지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 차도 방향으로 설치하고, 주거동 혹은 거치대까지 연속하여 설치한다. 이때 자전거도로는 보행공간과 재질 및 색상이 구분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교차구간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주의·경고 표지를 설치하며, 단지 내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방법 유도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 단지 내부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설치
-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자전거도로 접점 구간'을 참고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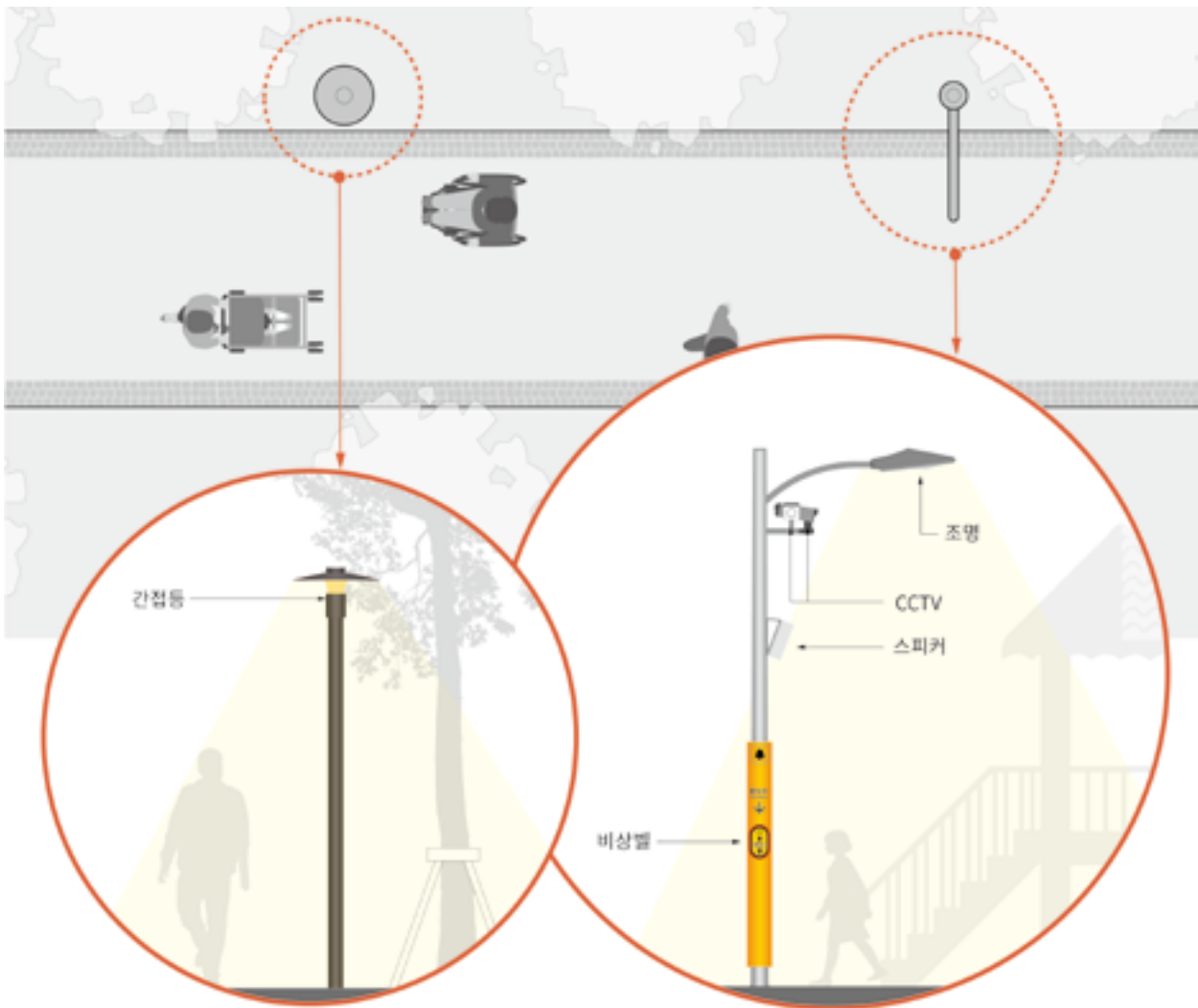


자전거 통행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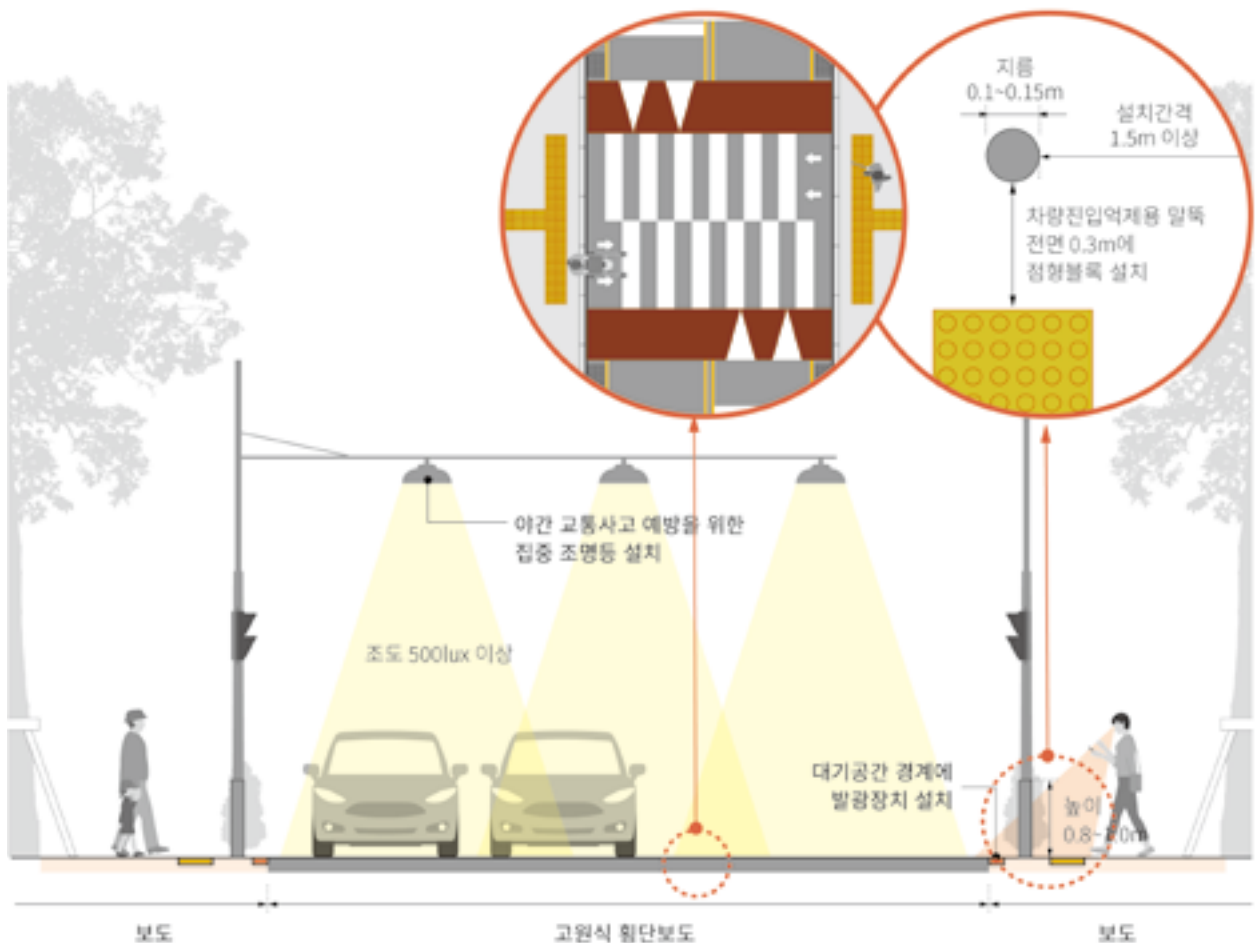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보행공간

- 단지 경계, 주거동과 그 외 시설에 이르는 보행로 및 안내시설 등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설치 위치: 조명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설치 간격: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
 - 눈부심 방지: 세대 내부 및 보행자의 눈부심 발생 방지를 위한 간접조명으로 설치
 - ▣ 보행로 조명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행안전공간-보행공간의 조도'를 참고
- 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CCTV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경공간 등에 지주를 설치한다.
 - ▣ CCTV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안전 환경-안심, 안전 보행공간 확보'를 참고
- 어린이놀이터 등 비상벨 설치 시 인지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비상 호출장치는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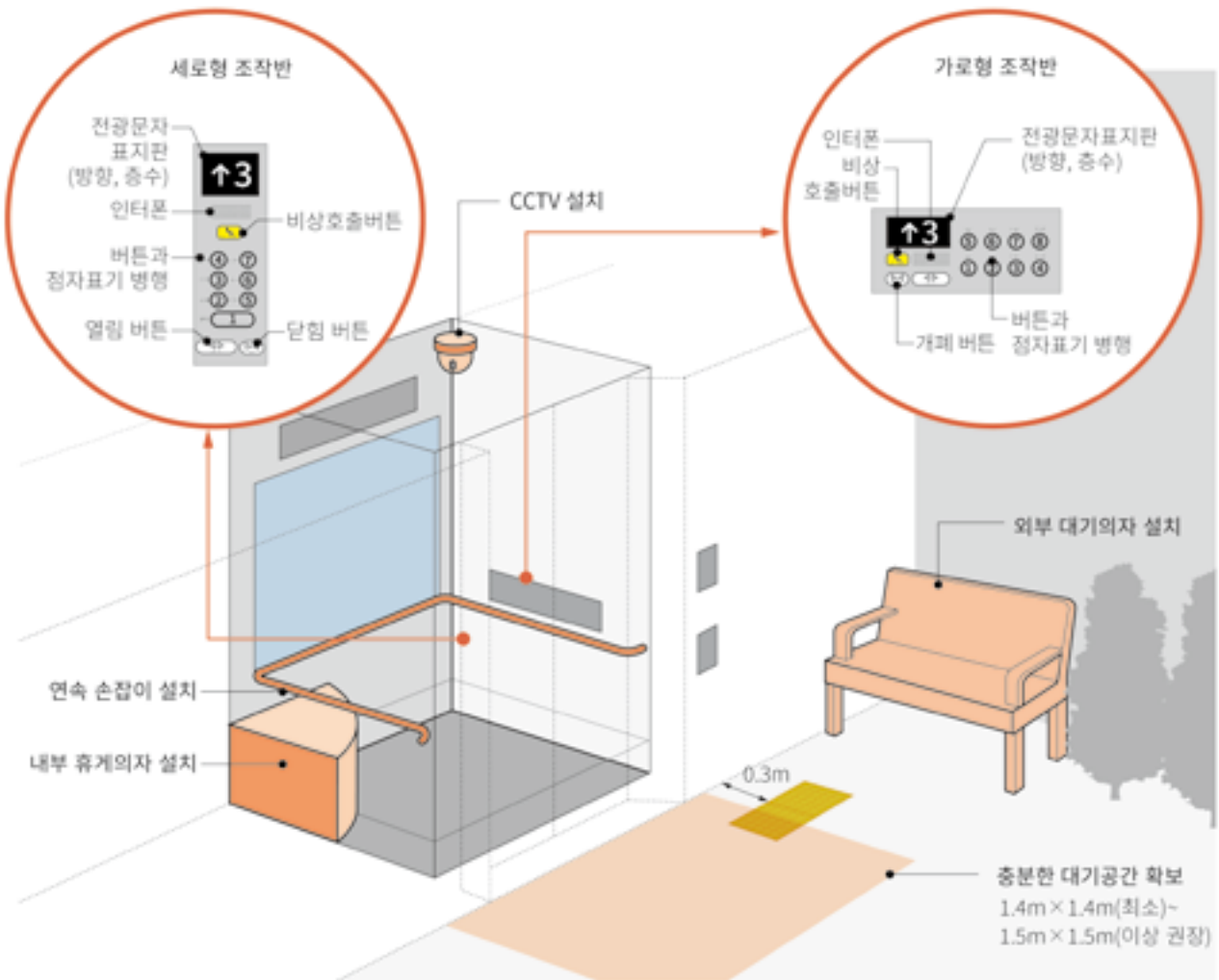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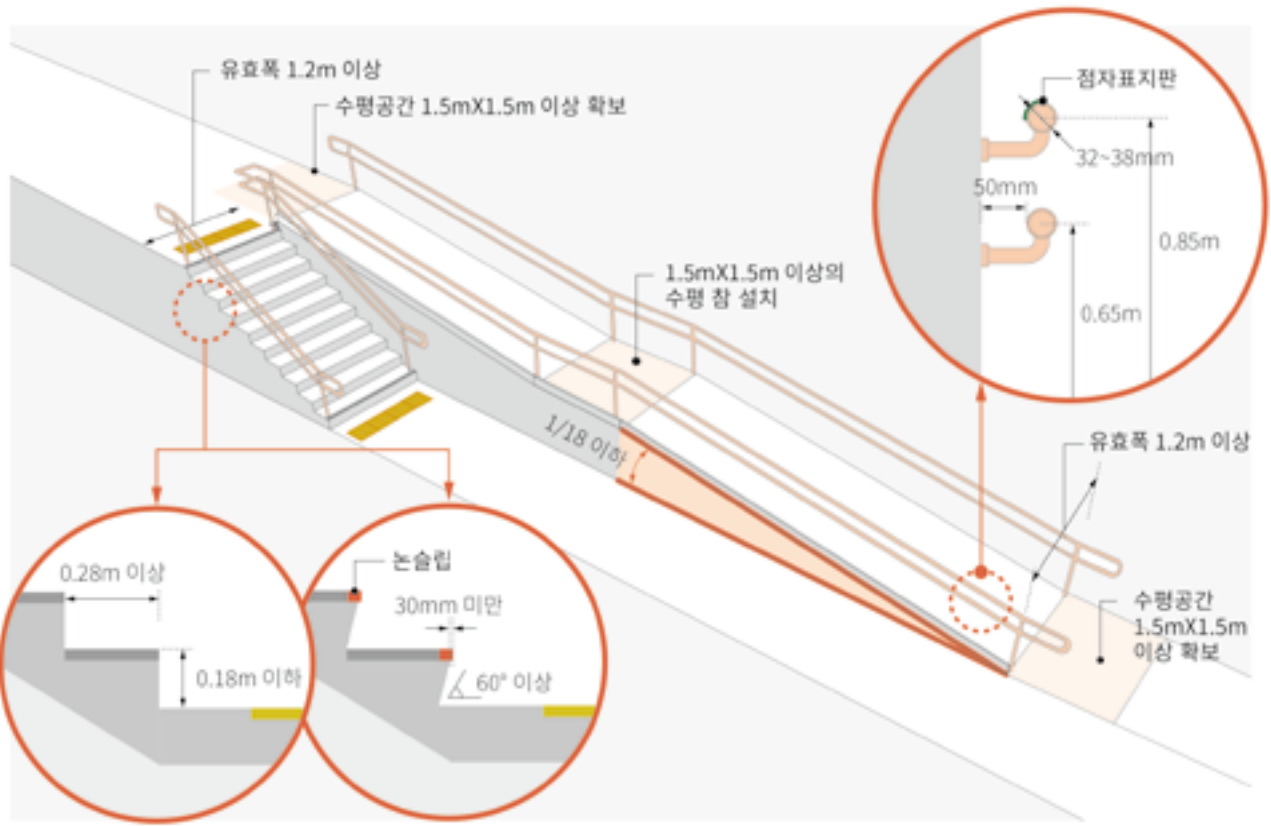
- 단지 내 옥외 공간은 가능한 보행전용공간으로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차량교통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대기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단지 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평단면 폭 2.5m 이상(법적기준에서는 4m 이상으로 하되 보행량이 적은 경우 2.5m으로 설치할 수 있음.) 구조물 경사면과 횡단보도 부분은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고 차도부 경사면은 완만하게 처리
 - 대기공간은 안전한 횡단 대기가 가능하도록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대기공간 및 차로횡단 구간 경계는 경고 재질, 점자블록,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주의·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횡단 대기 공간은 보행 공간과 색상 및 재질로 차이가 나는 바닥마감 설치
 - 대기 및 횡단 구간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색을 달리하거나 주변보다 높은 조도를 확보한다. 단, 주변 주거동 등에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그 외 횡단보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도-보차교통구간-횡단보도'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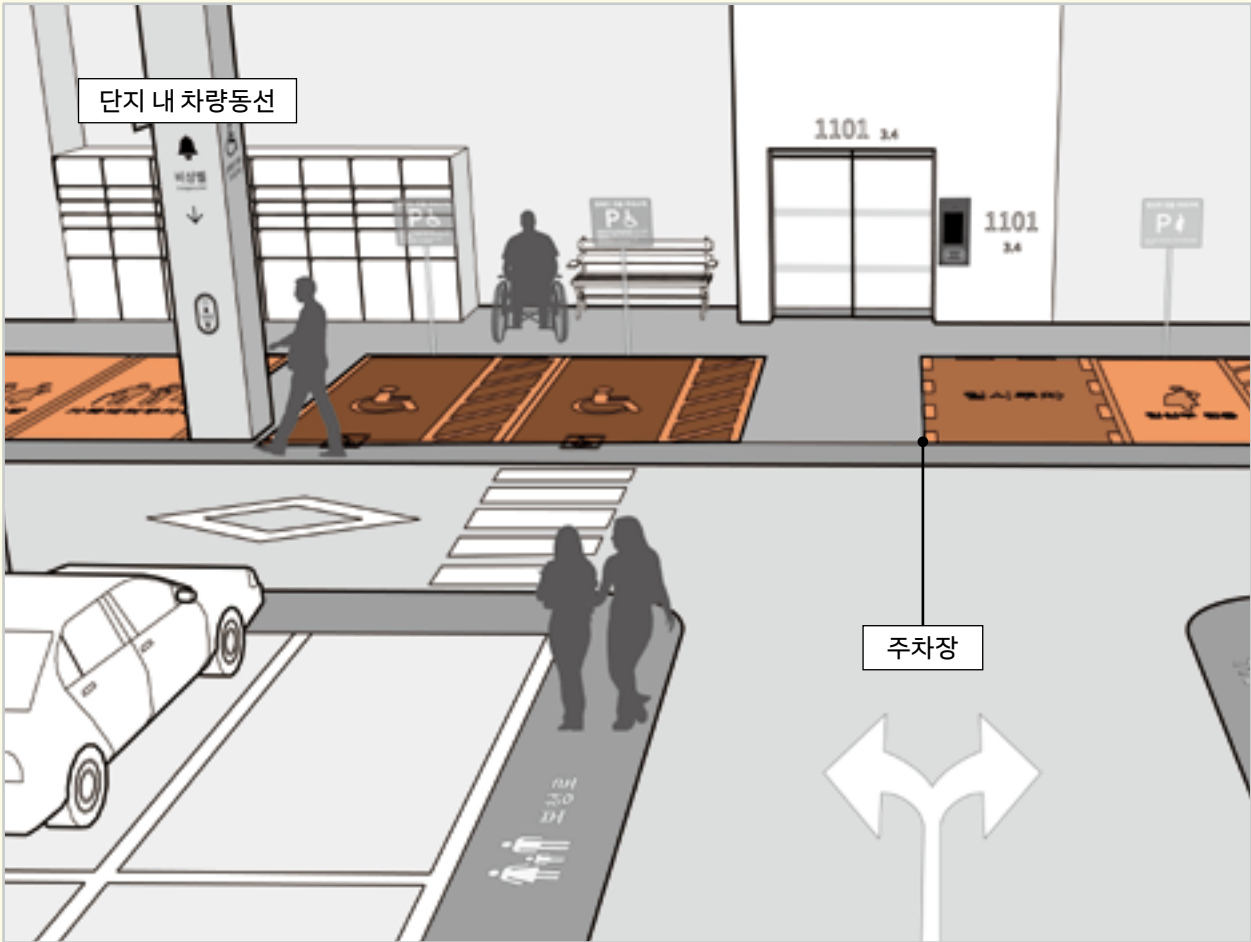
기본지침

- 단지 내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수직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 단지 내 보행로는 수평 보행로 또는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가 연속되도록 조성해야 하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 수직이동시설에는 야간 이용 시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겨울철 바닥 결빙, 우천 시 물고임(또는 넘침), 강한 일조에 따른 사용 불편을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 입구 캐노피 및 배수설비, 바닥열선,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처리, 차갑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차양시설 등
 - 단지 내 계단 설치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치하며, 경사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도로 설치한다.
 - 유효폭: 1.2m 이상
 - 휴식참 및 시/종점 활동공간: 1.5m 이상
 - 수직안전 높이: 2.1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철크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손잡이: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단지 내 고저차가 심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보행편의를 위해 옥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승강기는 안내시설 등과 함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강한 햇빛이나 우천 시를 대비하여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 승강기 내·외부에는 노인, 어린이 등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대기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 그 외 수직이동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





(3) 차량 공간



계획원칙

- 주차장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이용자 등의 여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저시력자 등 누구나 쉽게 출입구, 설치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주차 후 누구나 목적 공간을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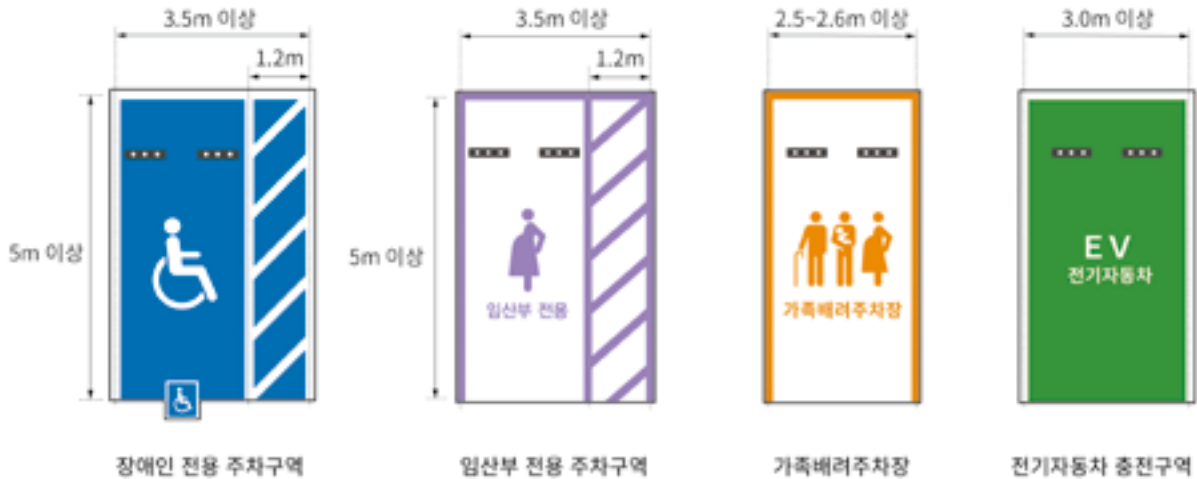
1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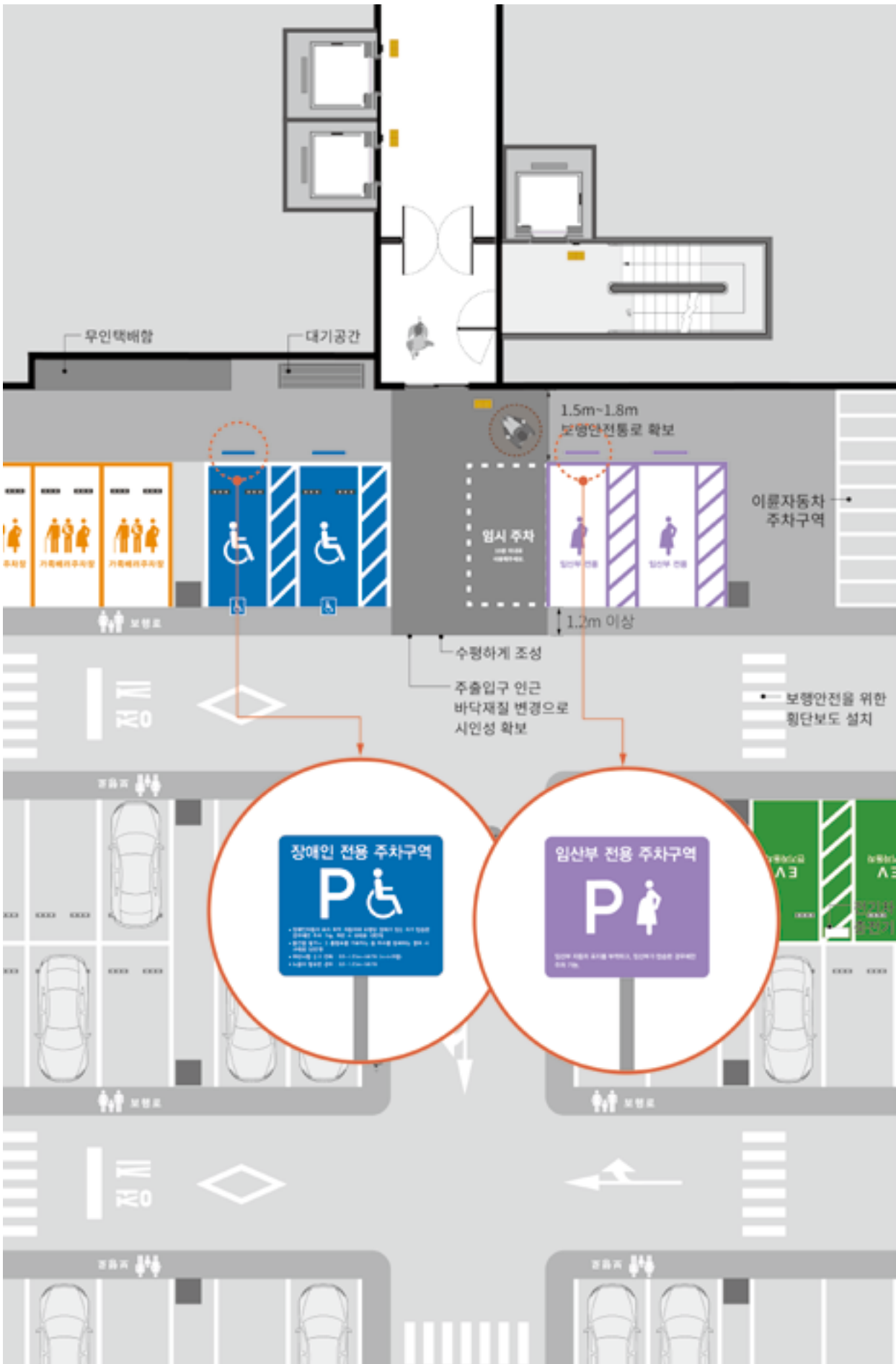
기본지침

- 주차장은 주야간 운전자가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간 및 시설 출입구별 또는 이와 연결된 보행안전공간에 인접하여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가족동반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구역과 장애인 탑승 차량의 승하차가 가능한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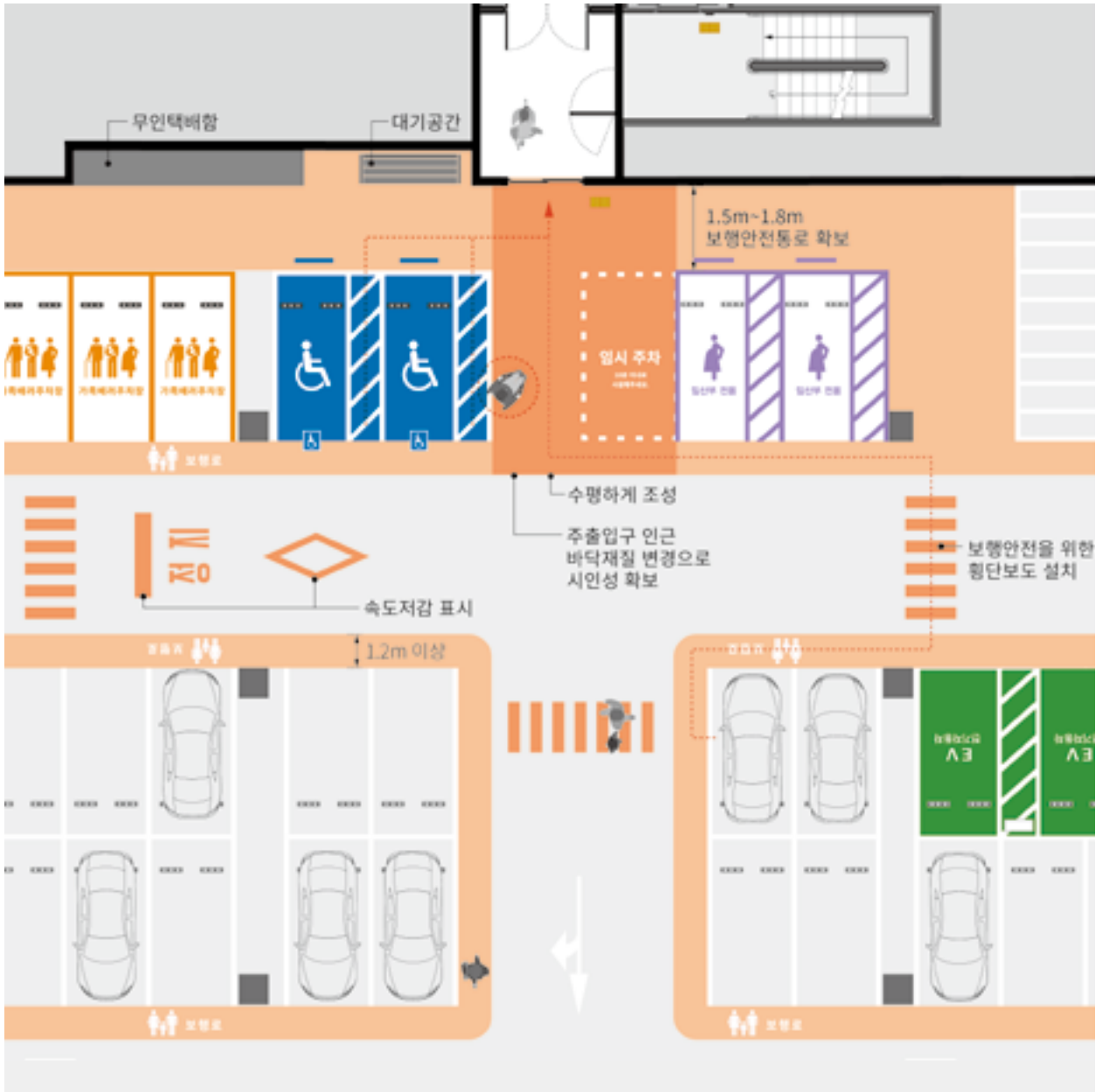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주동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1면 이상 설치한다.
 - 설치 기준: 폭 3.5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 가족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인접 배치하고, 주동 출입구 마다 1면 이상 설치한다.
 - 설치 기준: 폭 3.5m, 길이 5.0m 이상, 유아차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 주차구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동 출입구 인근에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 임시 승하차 공간은 장애인 콜택시 탑승, 택배 차량 상하차, 배달 오토바이의 임시정차, 거주민 등이 장본 짐 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 고려
 -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이동 동선 일부를 할애하여 배치
 - 임시 승하차 공간 인근에는 휴게 의자가 있는 대기 공간 및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 권장
 -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충전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충전기는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 설치 기준: 폭 3.0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유아차 활동공간 확보
 - 설치 위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타 시설물과 중첩되지 않은 곳에 설치
- ☐ 그 외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차량접근'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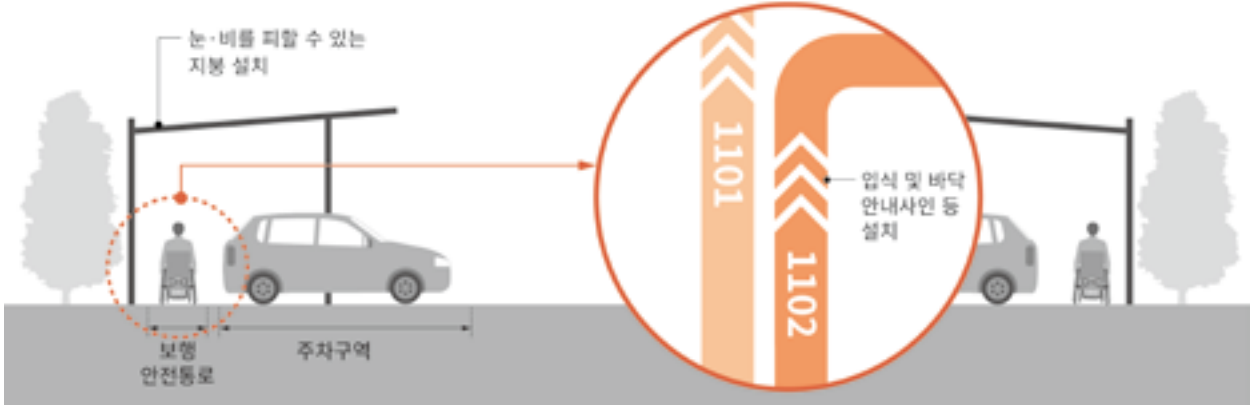
보행안전통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차량교행이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연속 설치를 고려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동 출입구가 인접하는 경우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2m 이상 확보
 - 색면,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
 -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외의 주차구역에서 하차 후 주동 출입구까지 연속된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보행안전통로폭 최소 1.2m 이상 확보
 - 색면, 빗금 처리 등의 차로와 구분되는 시인성 확보
 -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안전통로는 횡단보도 표시를 하며, 교행구간 전후에는 속도저감시설, 서행유도표시, 보행자주의 등의 안내표지의 설치를 고려한다.



옥외주차장 설치 기준

- 옥외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목, 캐노피 등을 배치하여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옥외 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구역, 하차 후 주동 및 시설에 대한 쉬운 길찾기가 가능하도록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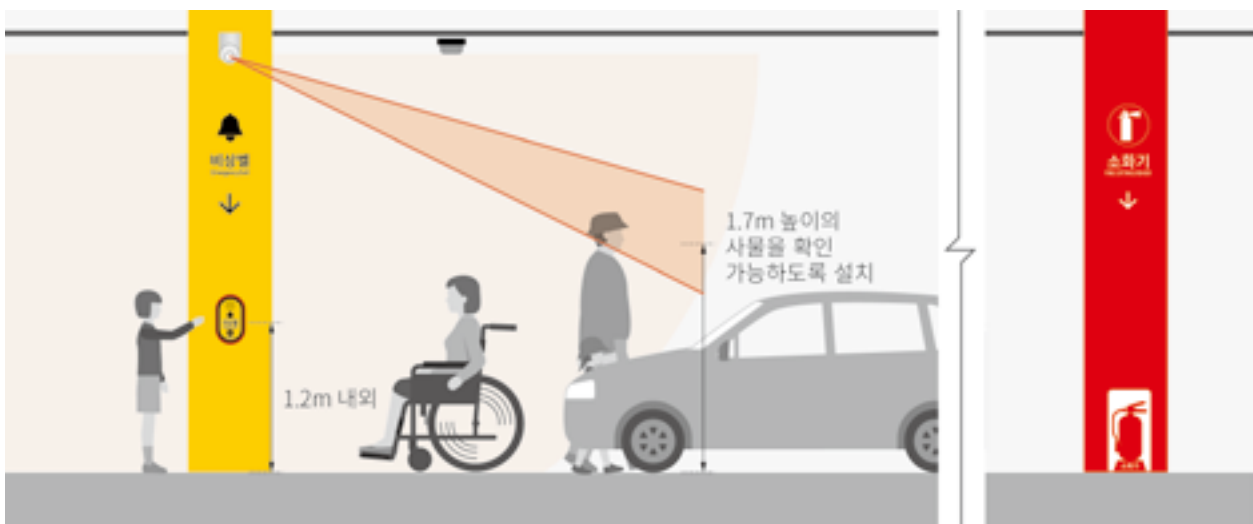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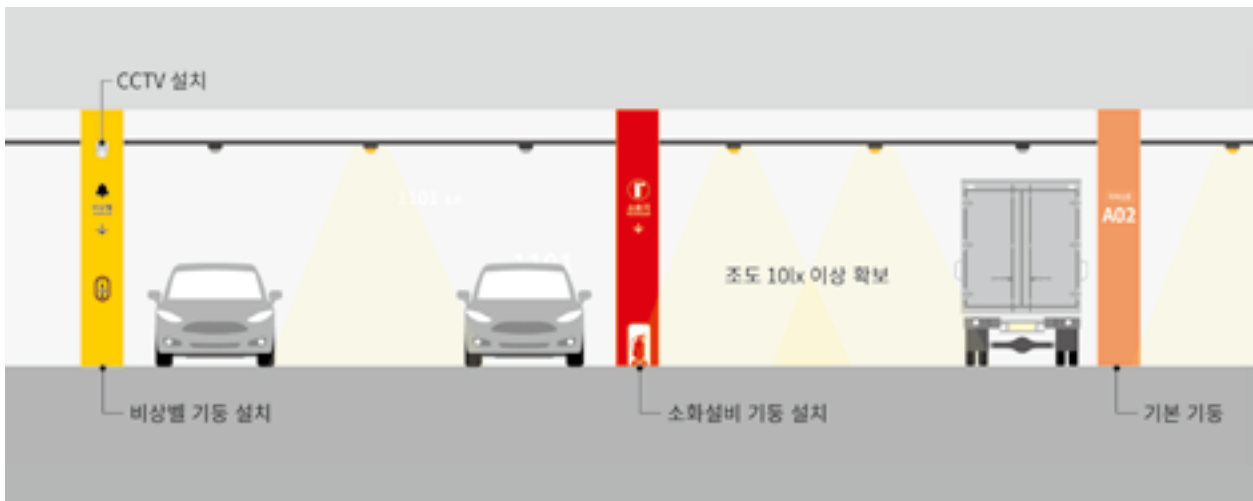
옥내주차장 설치 기준

- 택배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옥외와 연결되는 1개 층 이상은 2.7m 이상의 천장고를 확보한다.
- 빗물에 의한 보행 중 미끄럼사고 방지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물 고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출입구 배수시설 설치, 진입부 차수판(벽) 설치 권장 등
- 주차장은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구역, 동, 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수립한다.
- 주차 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안내 체계를 수립한다.
 - 주거동 출입구 전면 색상 구분
 - 주거동 출입구 앞 밝은 조명
 - 눈에 띄는 안내사인(큰 글자 정보, 바닥·천장·벽면·기둥 안내)
- 선큰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을 확보를 권장한다.
- 층별, 주차 구역별 주차구역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차대수 300대 이상 규모의 옥내 주차장에 적용 권장



주차장 안전시설

- 비상벨은 누구나 신속하게 찾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설치 간격: 25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 설치 높이: 바닥에서 1.2m 내외 조작버튼 위치
 - 비상벨은 상시 대응 및 확인을 위해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도록 설치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
- 비상벨,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기둥은 다른 기둥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비상벨 기둥(노란색 계열), 소화설비 기둥(빨간색 계열) 색상은 다른 유도 안내 색상과 쉽게 구분되도록 설치
- 주차구획, 보행통로 등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한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CCTV 제품 설치를 권장
 - 바닥 면으로부터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주차, 주차 후 이동,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은 주야간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10lx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300lx 이상, 최대 조도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50lx 이상, 최대 조도 없음



2

단지 내 차량동선

기본지침

- 차로와 비상 차량동선의 경계와 보행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규모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학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노인 데이케어센터 등의 통학·통근 차량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을 설치한다.

비상 차량동선

- 비상 차량의 진입로의 경사부는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에서 처리하며, 횡경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차량동선 진입구간과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차교행구간-차량진출입구'를 참고
- 비상 차량진입 구간 경계에는 불법 주정차 및 진입 방지용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할 때는 비상시 신속한 제거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한다.
 - 볼라드 등의 설치 간격: 1.5m 이상
 - 볼라드 등의 형태: 높이 0.8~1m, 지름 0.1~0.15m
 - 재질: 보행자 충돌 시 충격 완화가 가능한 재질
 - 인지성: 야간 식별성을 위한 반사띠 필수, 반사 도료/발광 재질/조명 내장 권장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 0.3m에 점형 점자블록 설치
 - 이삿짐 운반 등을 고려한 시간제 차량동선 이용 계획 수립 권장
- 소방차 진입구간 및 정차구간은 시인성 높은 바닥 및 입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 적치, 차량 주정차를 방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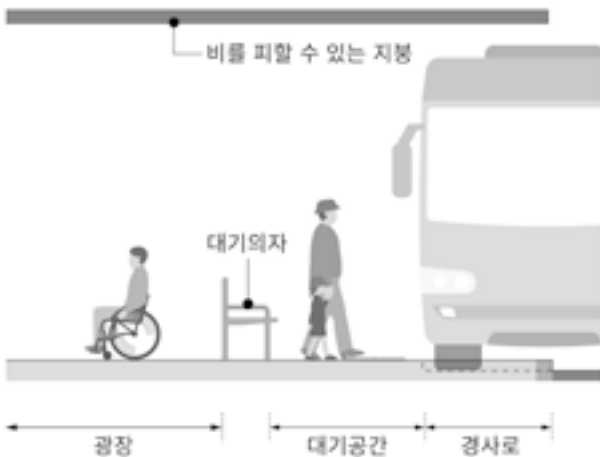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 승하차 구역은 단지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며,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할 경우 안전상 이동동선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 배치를 권장한다.
- 옥외 승하차 구역을 조성할 경우 탑승 대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되, 외기 환경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대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휴게 벤치, 외부 확인이 가능한 쾌적한 옥내형 공간 조성 등
- 관리사무소, 경비실 인근에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거나 CCTV 등을 설치하여 이동약자 등의 안전한 차량이용과 필요시 인적서비스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차량의 규모, 탑승 형태(측면, 후면)를 고려한 연결동선(보도 턱낮춤 또는 경사로 설치)과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 승하차 구역 이용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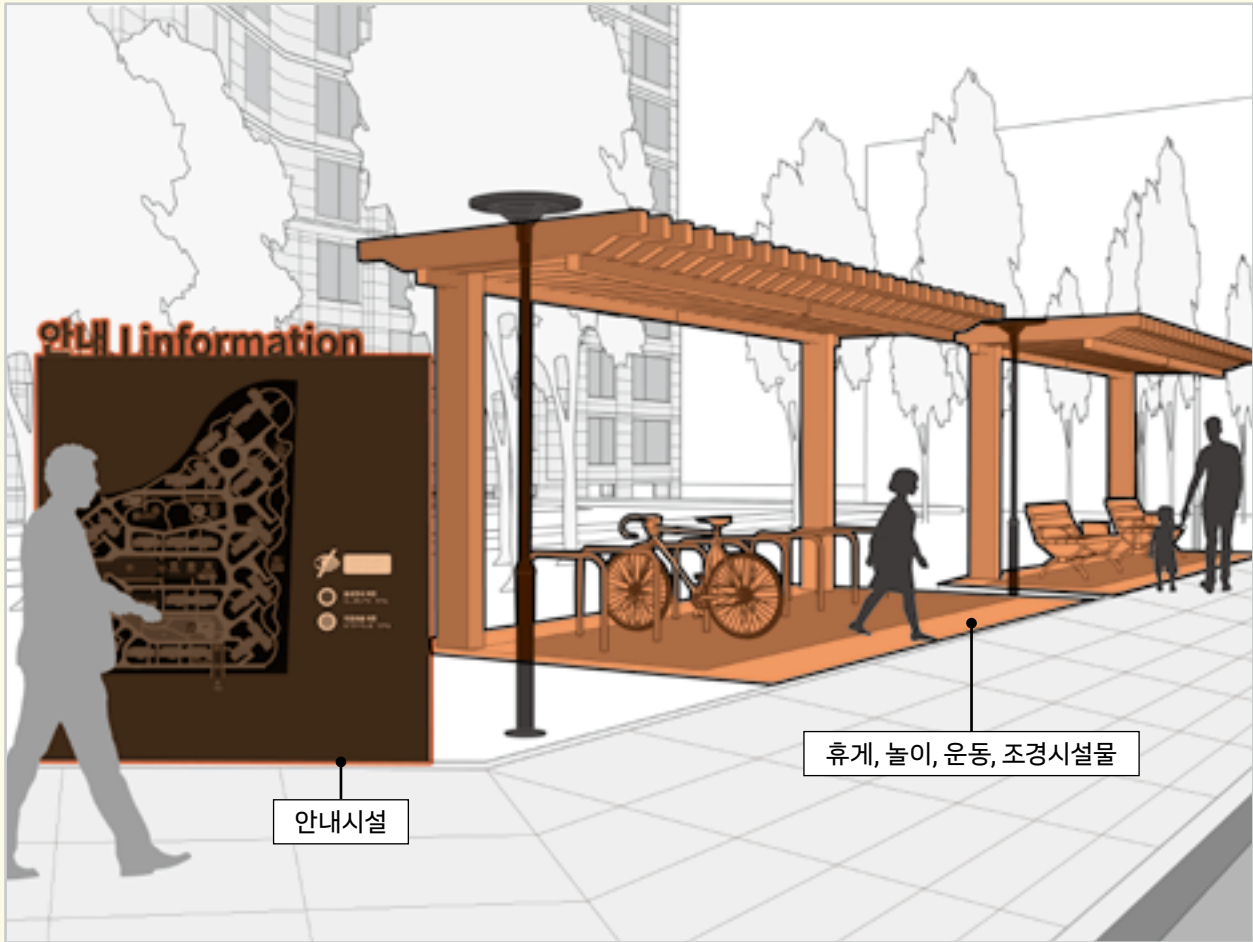
옥외형 승하차 공간



옥내형 승하차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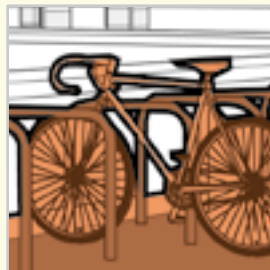


(4) 안내 및 기타공간



안내시설

휴게, 놀이, 운동, 조경시설물



계획원칙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쉬운 안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단지 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입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안내시설

기본지침

- 단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단지 내 공간과 시설의 위치, 방향과 목적 공간까지 이르는 동선을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단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요 공간과 시설 등의 목적 공간까지 연속적인 길 안내가 가능한 방향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안내시설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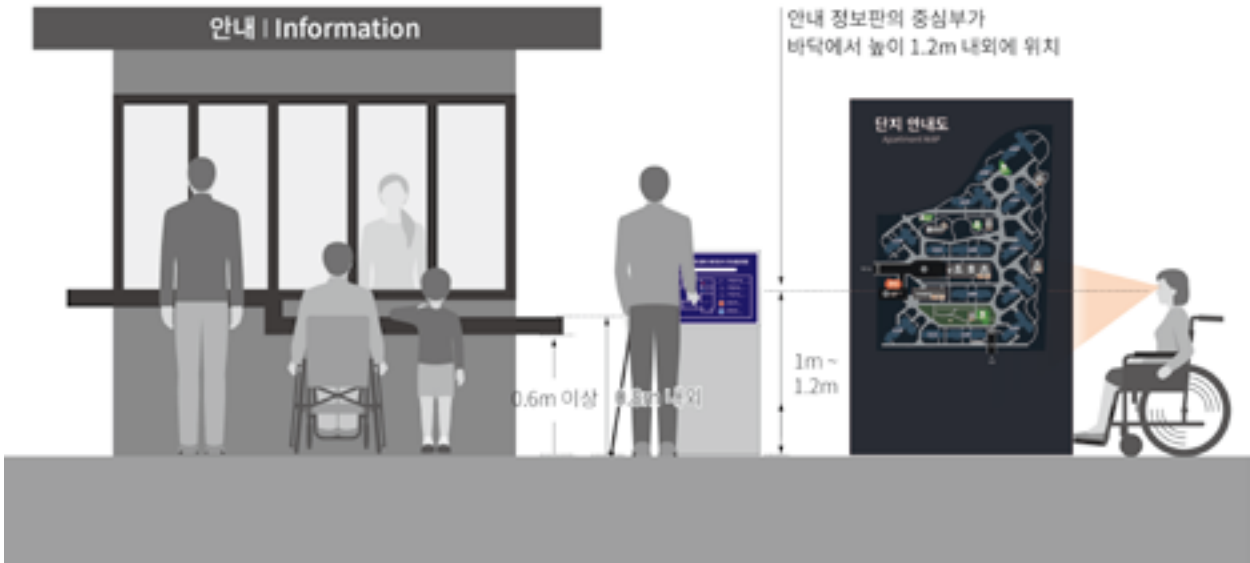
종합안내

- 단지 내 주요시설 및 위치와 방향이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 인적 안내가 가능한 공간 인근에 설치한다.
 - 안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색약자, 시력저하자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 및 명도 대비, 빛 반사 및 번짐이 최소화 되도록 재질과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내식성, 내열성 등 외기 환경에 따른 변형과 훼손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하며, 접촉식 안내판의 경우 금속 사용을 지양하며, 금속재질을 사용할 경우 표면 코팅, 차양 설치 등으로 표면 가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병행 또는 통합 설치한다.
- ▣ 그 외 종합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종합안내시설’과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H1 옥외공간 (4) 안내 및 기타공간





방향안내

- 주요 보도의 교차로와 주요 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목적 시설의 방향과 소요거리 등을 표기한다.
- ▣ 방향 안내와 관련된 사항은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방향 안내'와 '공공건축물-안내 및 기타 이용시설-안내시설'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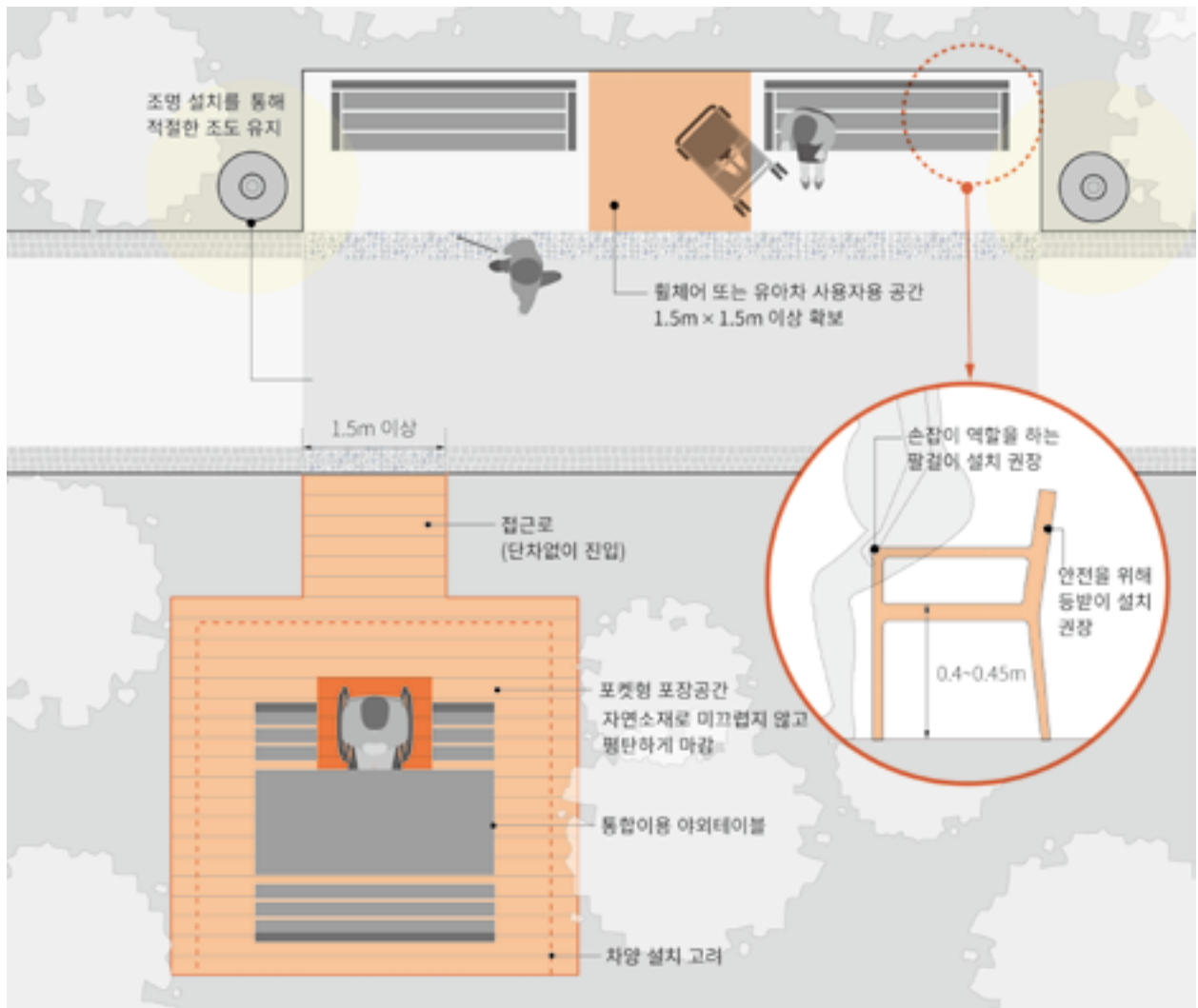
기본지침

- 단지 내 휴게공간, 놀이공간, 각종 생활 지원 공간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공간과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안전공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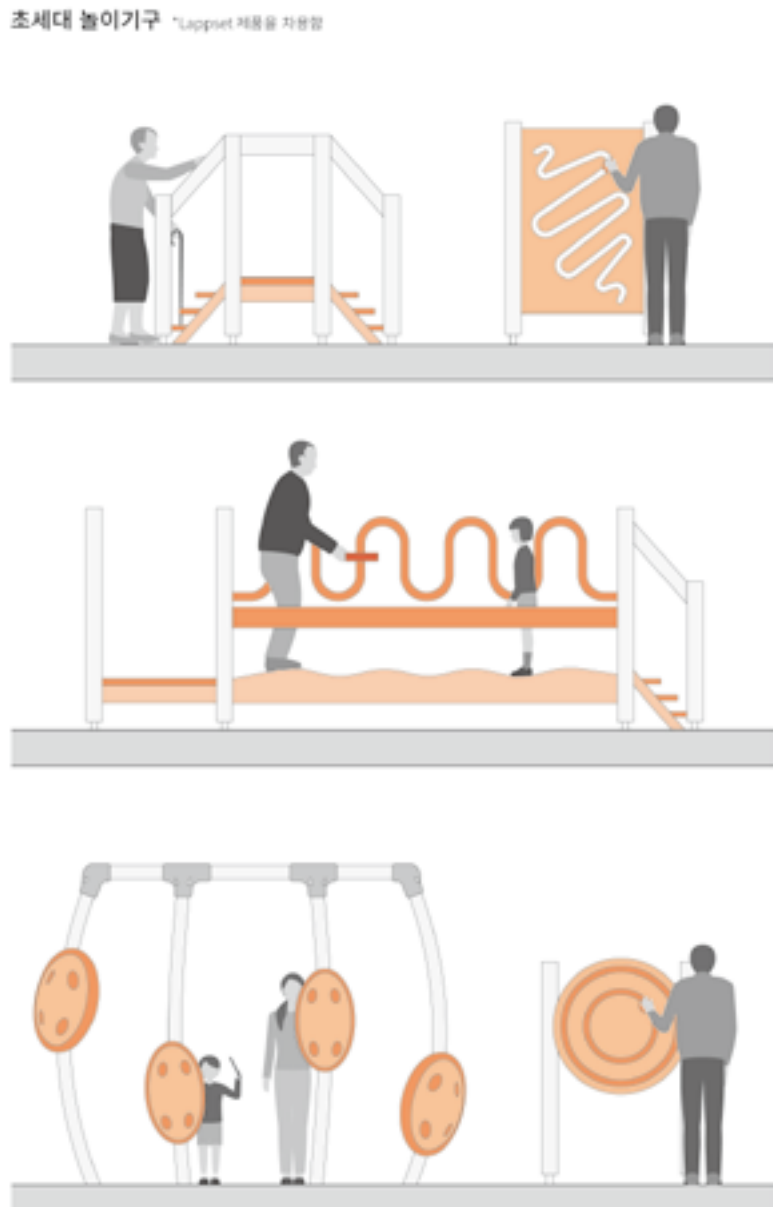
- 단지 내 산책로, 보행로, 놀이공간, 정원 등 이동통로와 주요 공간에는 대기, 휴식, 자연감시 등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로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알코브형으로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휴게공간 등의 세부 사항은 '공원-내부 이동 및 이용 공간-내부 이용 공간'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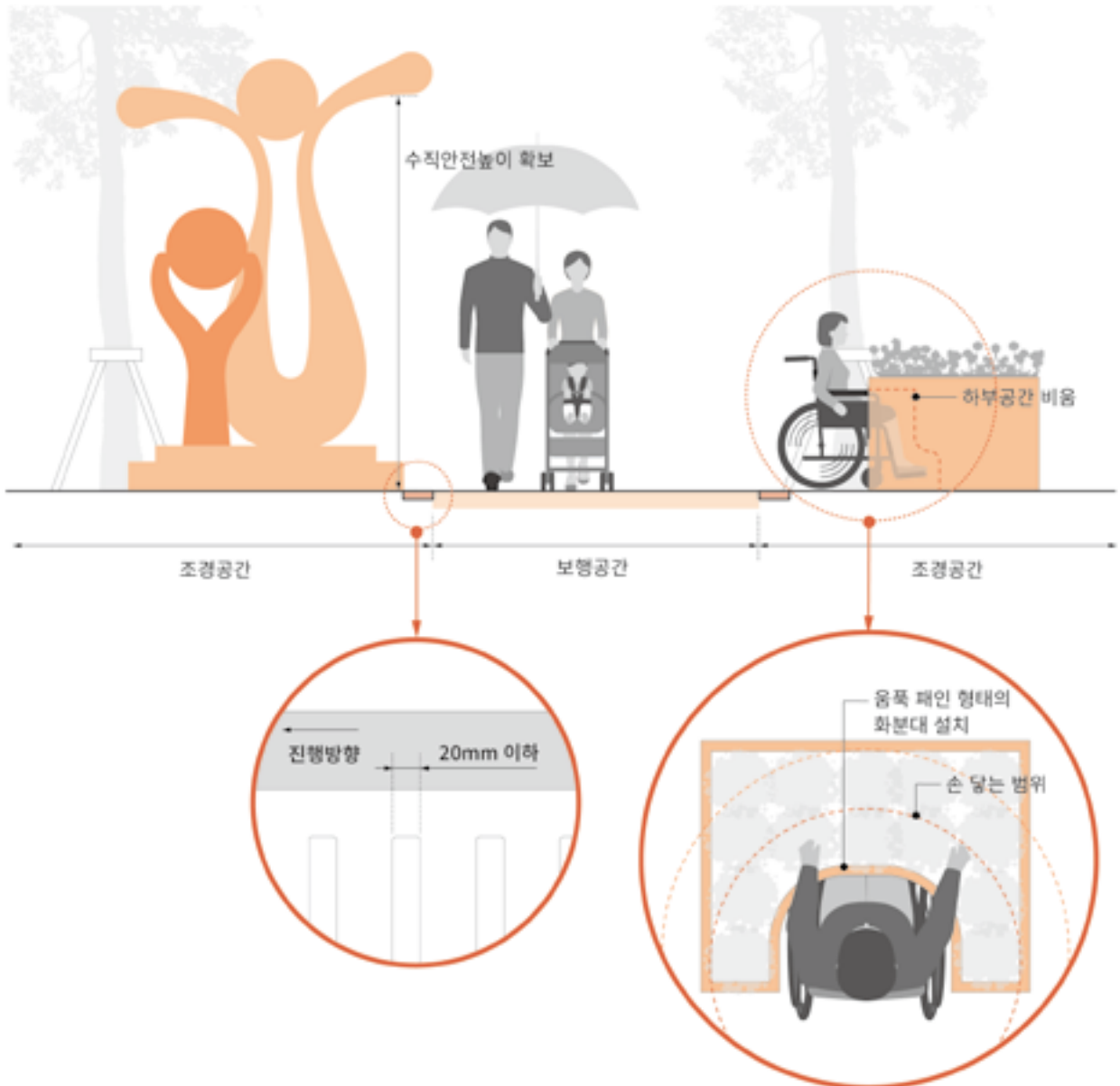
놀이 및 운동공간

- 소음,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및 차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주변에 안전을 위한 녹지대, 휴게공간 등 버퍼존을 설치한다.
 - 주동 및 차로에서 5m 이상 이격 설치 권장
- 안심 공간 조성을 위해 경비실, CCTV 등으로 감시 기능을 확보하고, 일부 세대 또는 보호자가 휴식하며 자연감시가 가능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한다.
-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은 외기 환경변화에도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실버 운동기구 등은 강한 일조,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필로티 하부 공간에 설치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 권장
- 입주자 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를 권장한다.
 - 무장애 놀이터, 통합형 놀이터(초세대 놀이터) 등 설치 권장
- 놀이 및 운동공간의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며, 평탄한 마감재로 설치하여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 바퀴 달린 탈것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견고한 재질로 설치한다.



조경시설물

-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 미술작품 등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우산 걸림이나 자전거 탑승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한다.
- 조각품 등 미술작품(미술장식, 미술품) 설치 시 보행공간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 고령자, 어린이 등의 정서 발달을 위해 단지 내 공동텃밭 계획을 고려하며, 휠체어 사용자들도 식물이나 작물을 만지고, 가꿀 수 있도록 책상형 화분대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텃밭 설치 시 보행로 내 오염,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 권장(배수시설을 보행로 내 설치 시 배수뎡개 틈새는 20mm 이내)
- 놀이 및 운동공간, 텃밭 등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수전/세족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 단지 내 수전/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안내 및 기타 편의시설-편의시설'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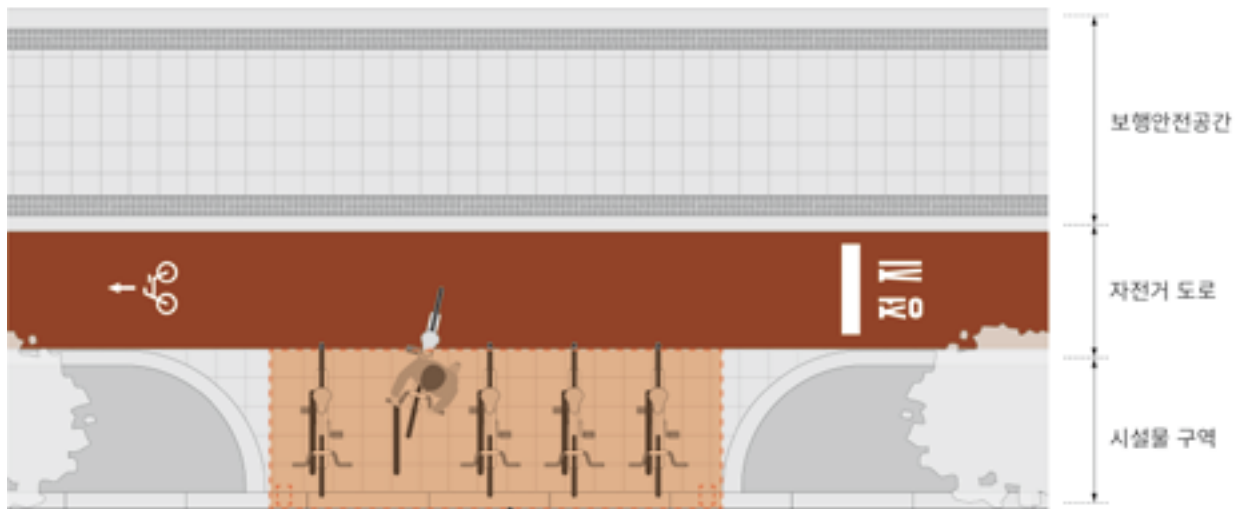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저층부 단위세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이상 수거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폭 4m 이상 도로와 인접 설치)
 - 지하 공간에 설치할 경우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
- 내부 통로 및 활동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하며, 바닥은 습윤 시 미끄럽지 않은 재질(정적마찰계수 0.5 이상)로 설치한다.
- 폐기물 용기는 투입구는 누구나 쉽게 그 용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높이 및 형태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투입구 권장 높이: 0.85m
 - 기물 용기별 용도 확인이 쉽도록 안내시설 설치
- 폐기물 세척, 손 세척, 청소 등을 위해 개수대와 트랜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개수대 수도꼭지는 레버형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 소방 안전 등을 위해 불꽃감지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소화 설비를 인근에 배치한다.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로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고령자, 어린이 등이 쉽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외기의 환경 변화에도 보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한다.
 -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거치형 제품, 접근과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거치대 사이가 충분히 이격된 제품 설치를 권장
 - 자전거 에어펌프 등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
 - 구조물 하부(필로티 등) 외 천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 녹음 방지 등을 위해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체형 제품으로 설치 권장
- 자전거 보관대 인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 설치를 검토한다.



환기구/환풍구

- 환기구는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세대의 시야 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급기와 배기를 이격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환기구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하며, 안전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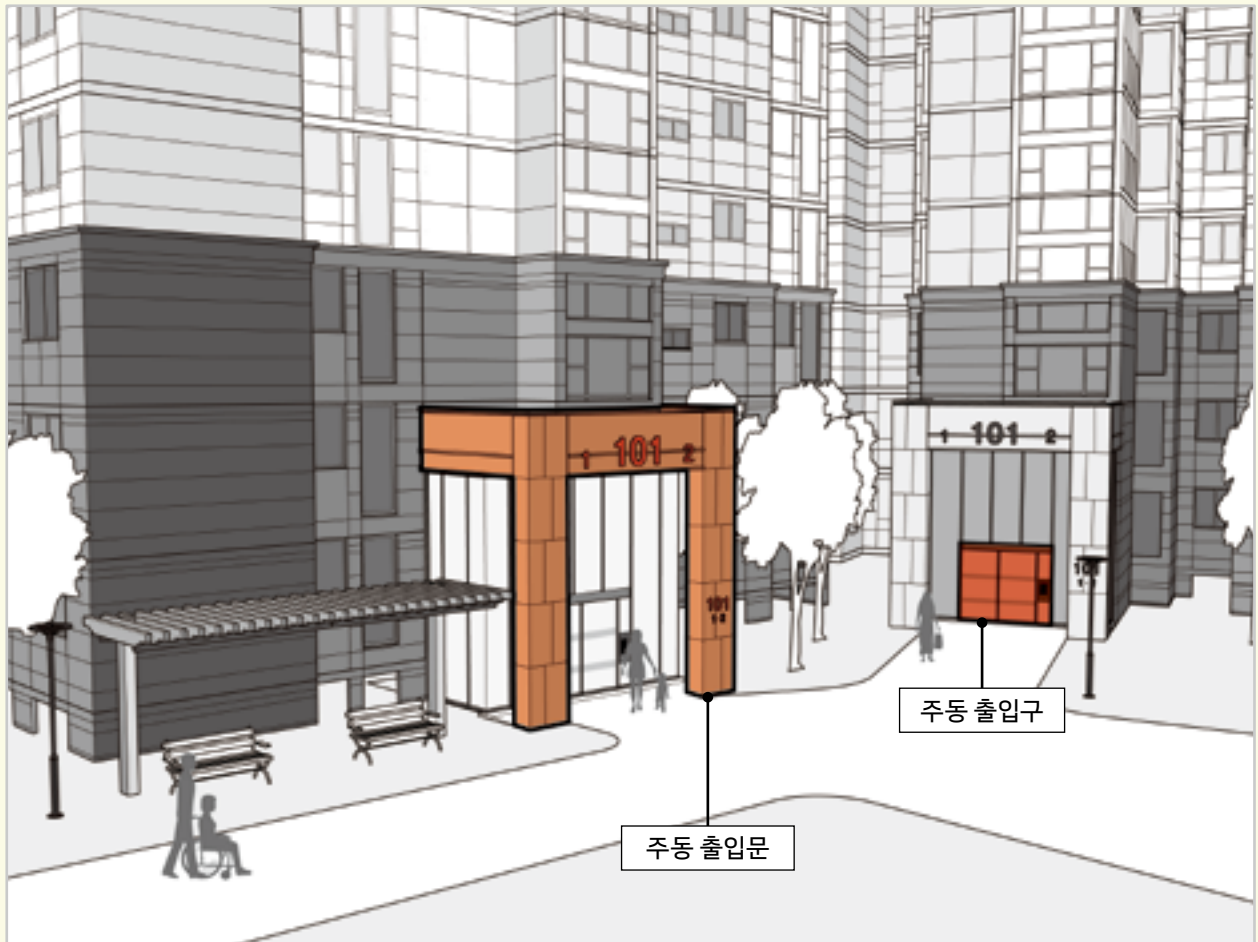
주거동



(1) 공용출입구	49
(2) 공용홀 및 복도	54



(1) 공용출입구



계획원칙

- 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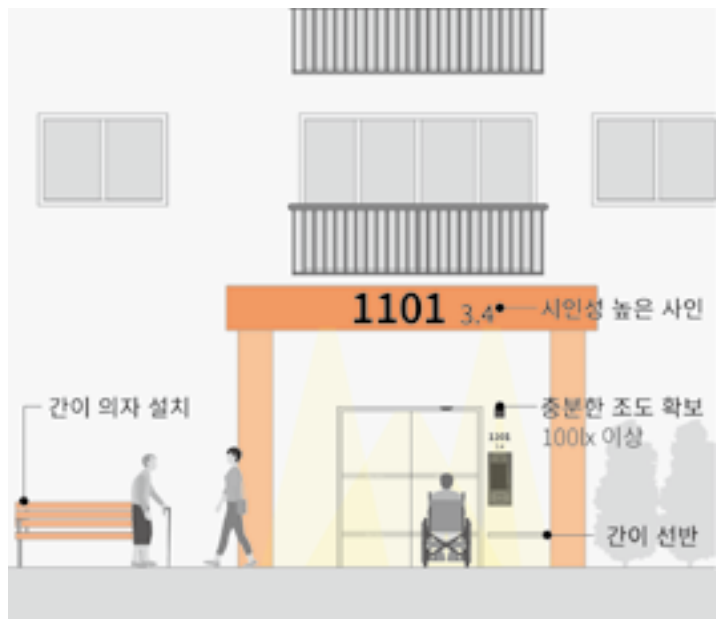
주동 출입구

기본지침

-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
-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구성을 권장한다.
- 출입구 전면,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건축물 돌출 차양 및 캐노피 길이 1m 이상, 너비 1.5m 이상
 - 길이 1.5m 이상 확보 권장(주동 로비공간, 필로티 하부 공간 등을 활용)
- 모든 출입구 전후면에는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 활동공간: 1.5m × 1.5m 이상(문 개폐 소요공간 제외)
 - 석재 잔다듬 이상 성능 확보
-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문 인근에 노인,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및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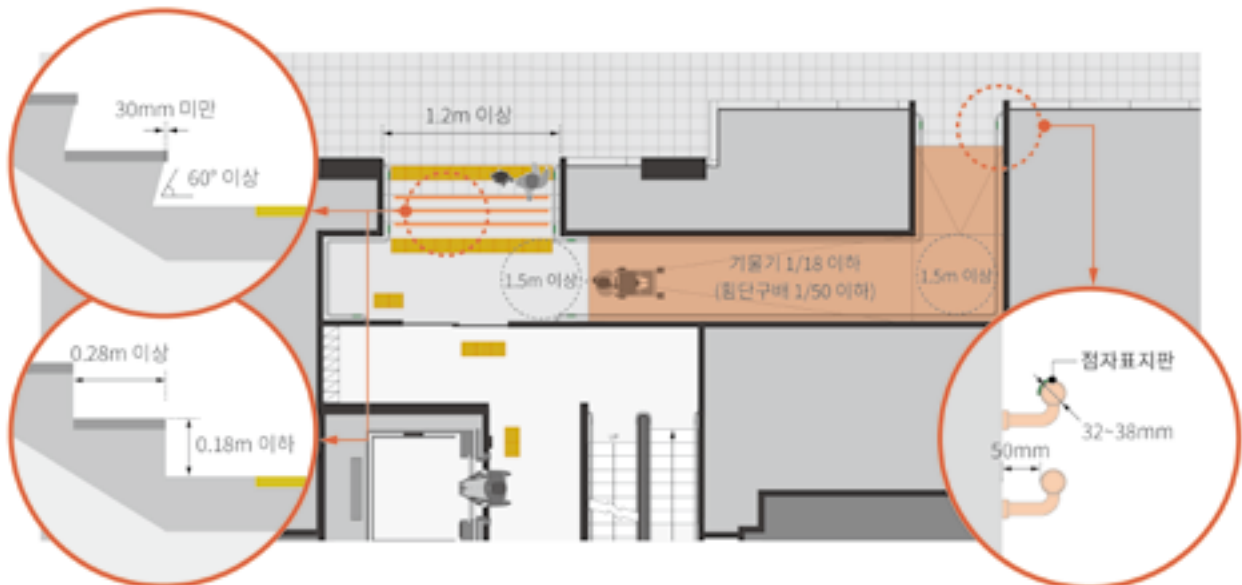
필로티형 출입구

- 단차 없는 출입구 구성을 위해 필로티형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 이때 필로티 하부와 주동 출입구는 단차없이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천 시 배수를 위한 배수 구배를 적용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필로티 하부 보행공간: 종/횡 경사도 1/50 이하로 단차 없이 평탄한 마감 적용
 - 필로티 하부 벽면 선홍통 등은 보행공간 외에 설치 권장하며, 배수뚝개 연결 시 뚝개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
 - 트렌치, 배수 뚝개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틈새 간격 1cm 이하 설치 권장



계단+경사로형 출입구

- 지형적인 이유 등 불가피하게 출입구 높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및 경사로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유효폭: 1.2m 이상(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한 충분한 폭)
 - 휴식참: 1.5m 이상
 -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철평 높이 0.18m 이하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횡단구배 1/50 이하)
 - 전·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5×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손잡이: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감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 그 외 계단과 경사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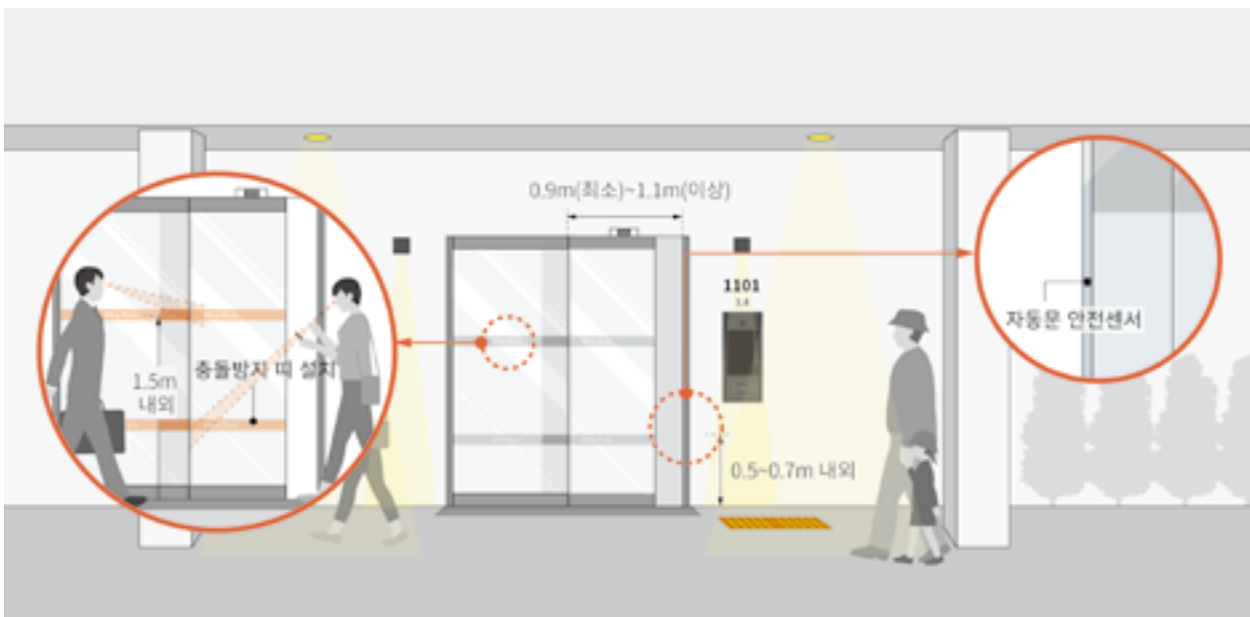
주동 출입문

기본지침

- 주동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및 통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문과 주동현관통제기 등의 시설은 비상 상황을 포함하여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디지털 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및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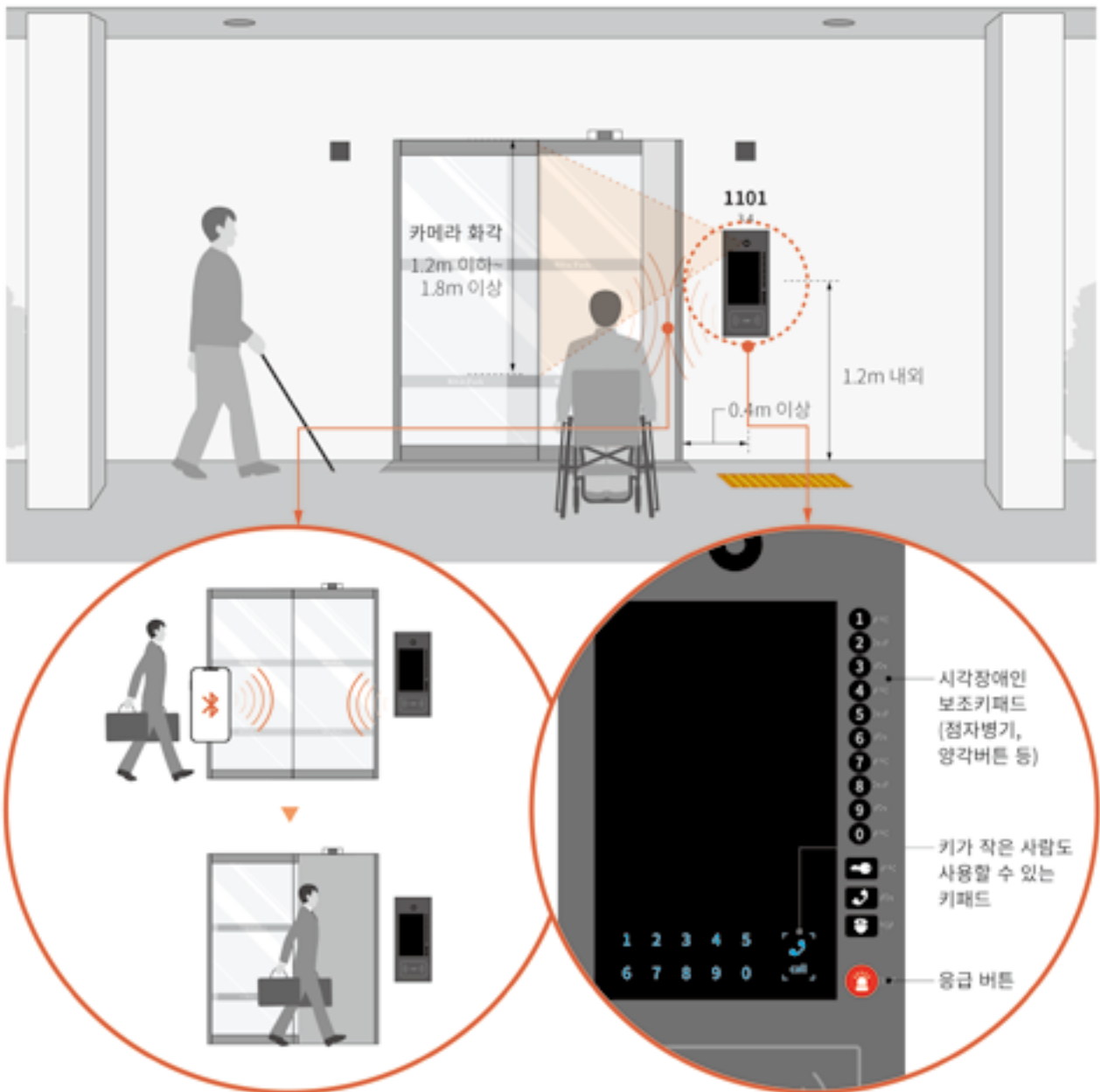
출입구(문)

- 이삿짐, 쌍둥이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과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원활한 통과 유효폭 1.1m 이상 확보 권장
-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여닫이나 미닫이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자동문의 경우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를 설치한다.
 - 안전센서 감지 범위: 바닥에서 높이 0.5~0.7m 내외
- ▣ 그 외 출입구(문)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접근 공간-주출입구(문)'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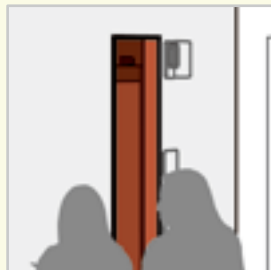


주동 현관통제기 등

- 주동 현관통제기는 비상 상황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설치 높이: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 권장 모서리 이격거리: 0.4m 이상
-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권장 화각 범위: 하단 1.2m 이하, 상단 1.8m 이상
- 조작버튼은 색약자,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점자병기, 음성안내, 양각 버튼형, 카드키 터치 위치와 경비실 호출 버튼 등 색상 강조 및 점자표기 권장
 - 비콘/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식 출입시스템 적용 권장



(2) 공용홀 및 복도



계획원칙

- 주동 진입층의 공용홀과 층별 복도는 출입문 통과 후 수직이동시설과 세대별 현관 입구까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쉬운 길찾기와 신속한 피난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공용홀과 로비 등은 주거동 내외부의 매개 공간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잠시 머무름과 입주민의 교류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되, 설치되는 공간과 시설 등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로비, 복도

기본지침

- 공용홀과 복도는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입주민 누구나 주야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이용 가능하고,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용홀과 복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등 누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마감재, 조명과 색상 등을 활용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한다.

로비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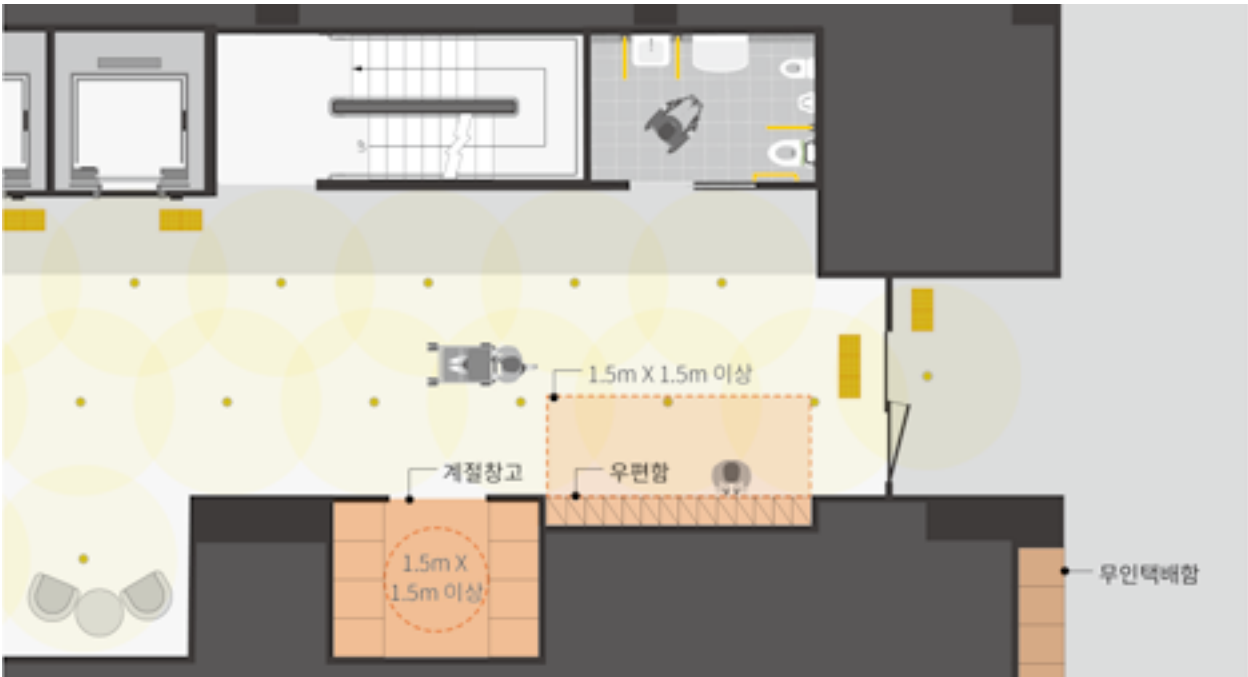
- 주동 출입구 통과 후 승강기(또는 계단실)까지의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 등을 위해 사공간 및 꺾임을 최소화 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로비층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휴식을 위한 교류공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로비 내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방향 안내표지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조도를 확보한다.
 - 100lx 이상 조도 확보
- 출입구 위치, 세대 호수 라인, 수직이동시설 위치 등은 누구나 쉽게 인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그 외 로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로비와 홀'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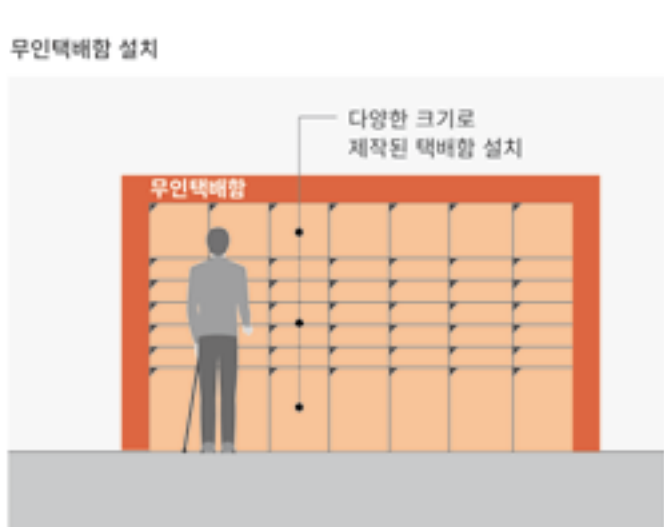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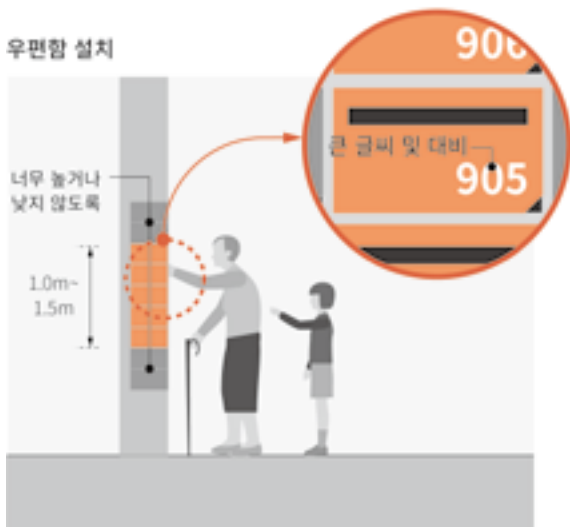


우편함, 무인택배함, 계절창고

- 우편함 등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접근,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설치 위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또는 벽부 매립형 등
 - 보관공간 높이: 바닥에서 0.6~1.2m 내외 위치
- 우편함 등의 전면은 보관공간 이용 및 방향 전환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전면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 단위세대의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과 택배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별도의 수납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필로티 하부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되, 다양한 택배 형태를 고려하여 보관공간의 크기를 달리하는 제품으로 설치
 - 세대 별도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계절 창고, 한칸더 수납장 등 설치 검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공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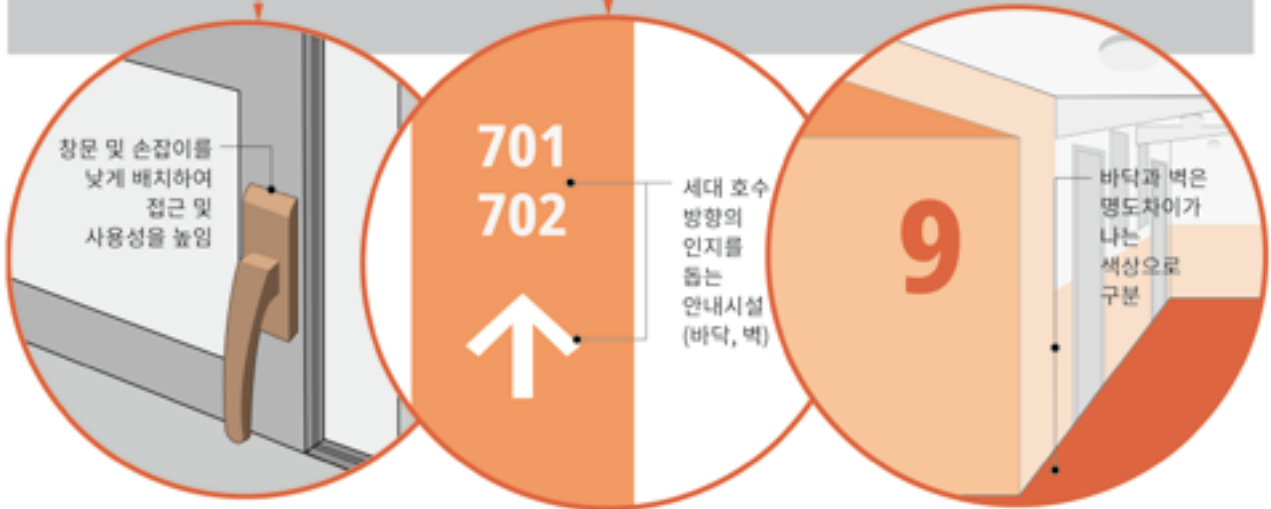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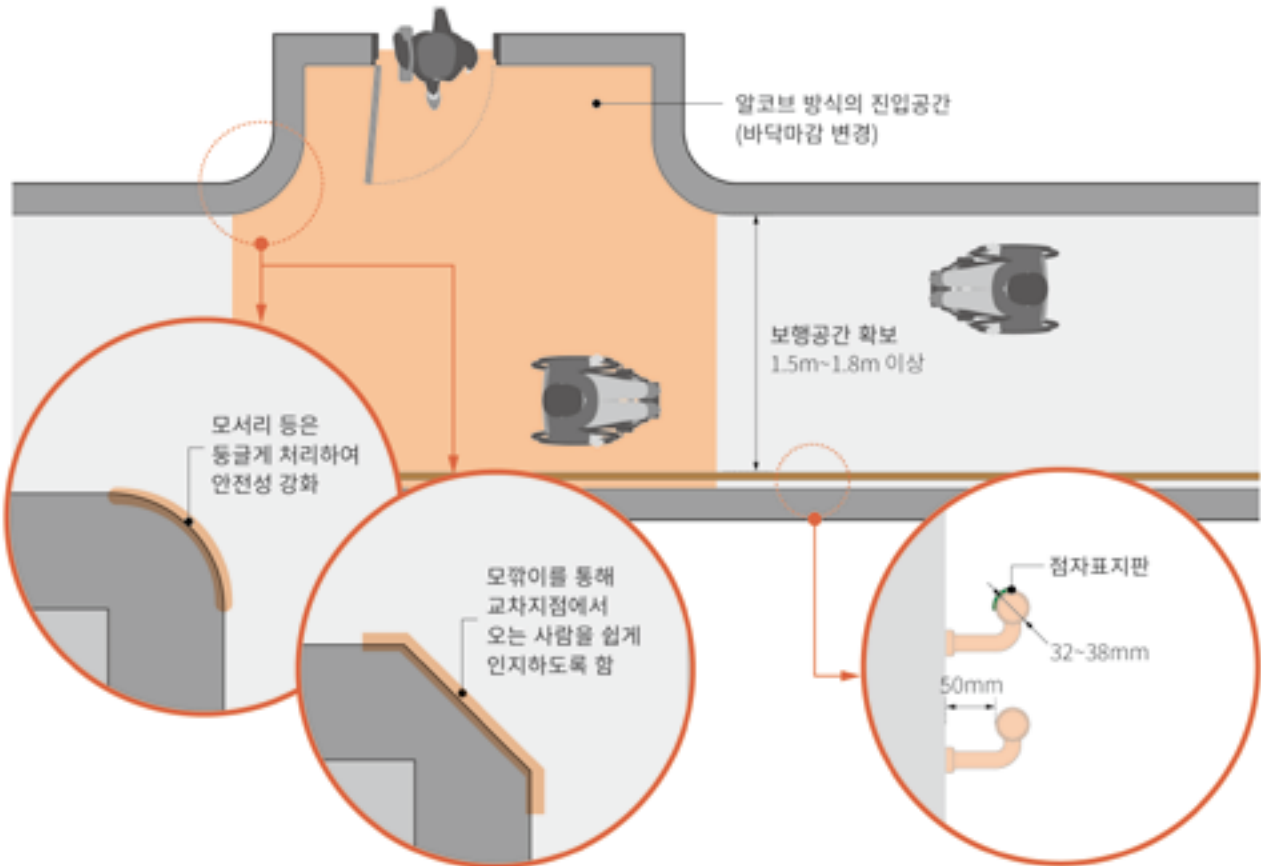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 PUBLIC HOUSING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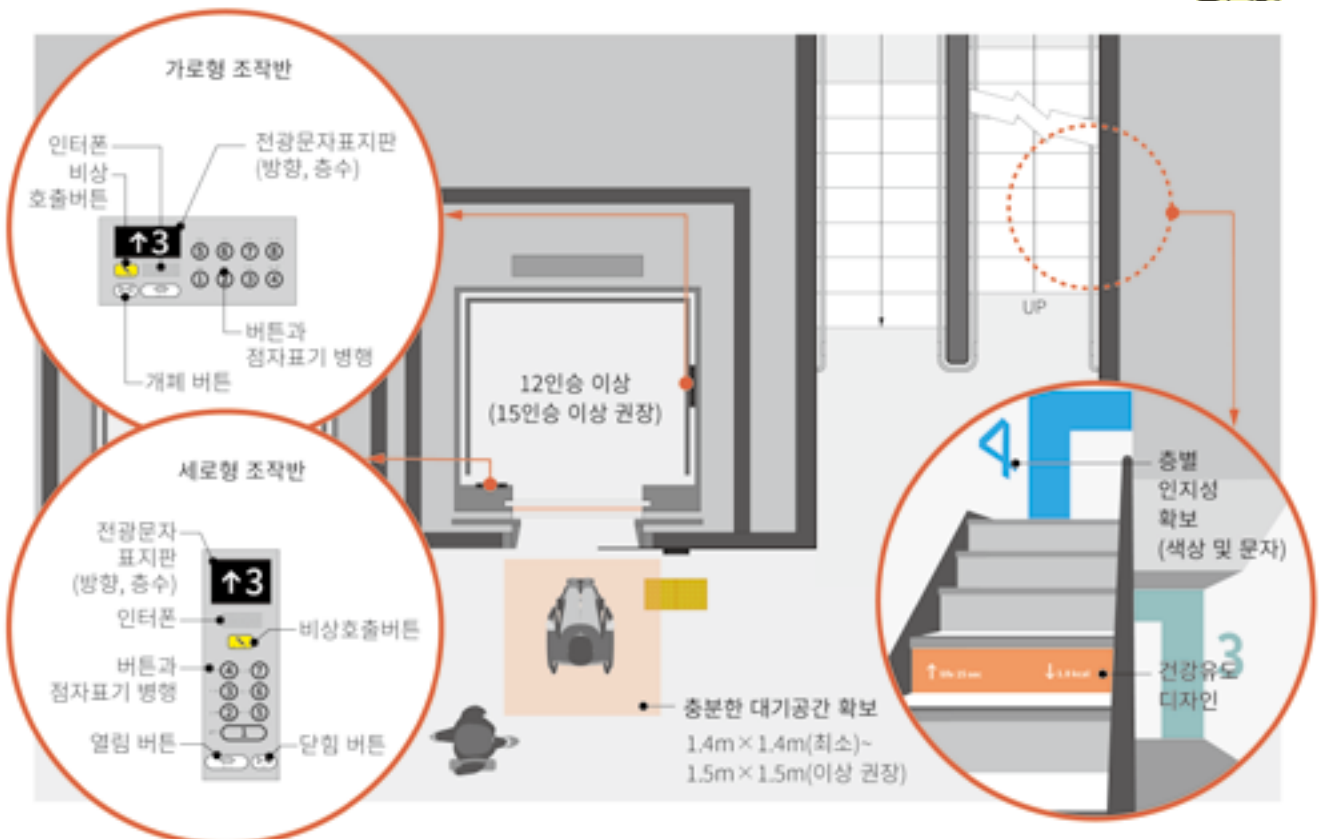
- 복도의 구조는 알코브 형태로 계획하여 세대 출입문과 복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모서리 둥글게 처리 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 세대 출입구 전면 알코브, 복도 진입부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 처리하거나 0.3m 이상의 사면 처리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충돌 시 충격이 완화되도록 설치 권장
 - 복도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 1.5m 이상 확보(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교행 가능)
 - 유효폭 1.8m 이상 확보 권장(휠체어 2대 교행 가능)
 - 감각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약시자의 공간인지 등을 고려하여 벽과 바닥은 명도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마감하고, 복잡한 패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색상: 안전색채(빨강, 초록, 노랑 등)를 제외한 중명도 계열의 색상을 배색
 - 안내 및 유도 등의 배색기준: 명도 차이 3 이상 권장
 -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경로 확인과 소화 관련 설비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소화전, AED, 피난 경로 등은 안전색채, 표준픽토그램 등을 적용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설치
 - 안전색상: 소화관련(빨강 계열), 응급시설 및 대피 관련(초록 계열)
 - 복도에는 세대 호수 방향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주야간 안전한 이동과 안내시설 이용 및 쉬운 길 찾기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조도: 100lx 이상 권장
 - 에너지 절감,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권장
 -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은 보행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벤치 등을 설치하며, 비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에도 설치를 고려한다.
 - 복도에 설치하는 창문은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개폐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 제품 등을 설치한다.
- ▣ 그 외 복도는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평이동공간'의 복도 기준을 참고한다.





기본지침

- 주거동의 수직이동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과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원활한 대기와 회전을 위한 충분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최소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 휠체어 회전을 위한 원활한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권장
- 승강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겸용 승강기 법적 기준 이상의 충분한 규모를 가진 승강기를 설치한다.
 - 12인승 이상(15인승 이상 권장)
-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는 색약자, 약시자 등을 고려하여 크기, 색상, 형태 등을 활용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 지상층, 비상통화장치와 층수 버튼의 시인성 확보(글자 크기, 색상, 그림문자, 도형 등을 활용)
- 건강증진을 고려 1~3층까지 계단 이용 유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계단실은 색상, 문자 등을 활용하여 층별 인지성을 확보한다.
- ▣ 수직이동은 '공공건축물-내부이동공간-수직이동공간'을 참고한다.
- ▣ 수직이동시설에서의 피난 및 대피에 관한 규정은 '공공건축물-피난 및 대피-피난 및 대피 시설'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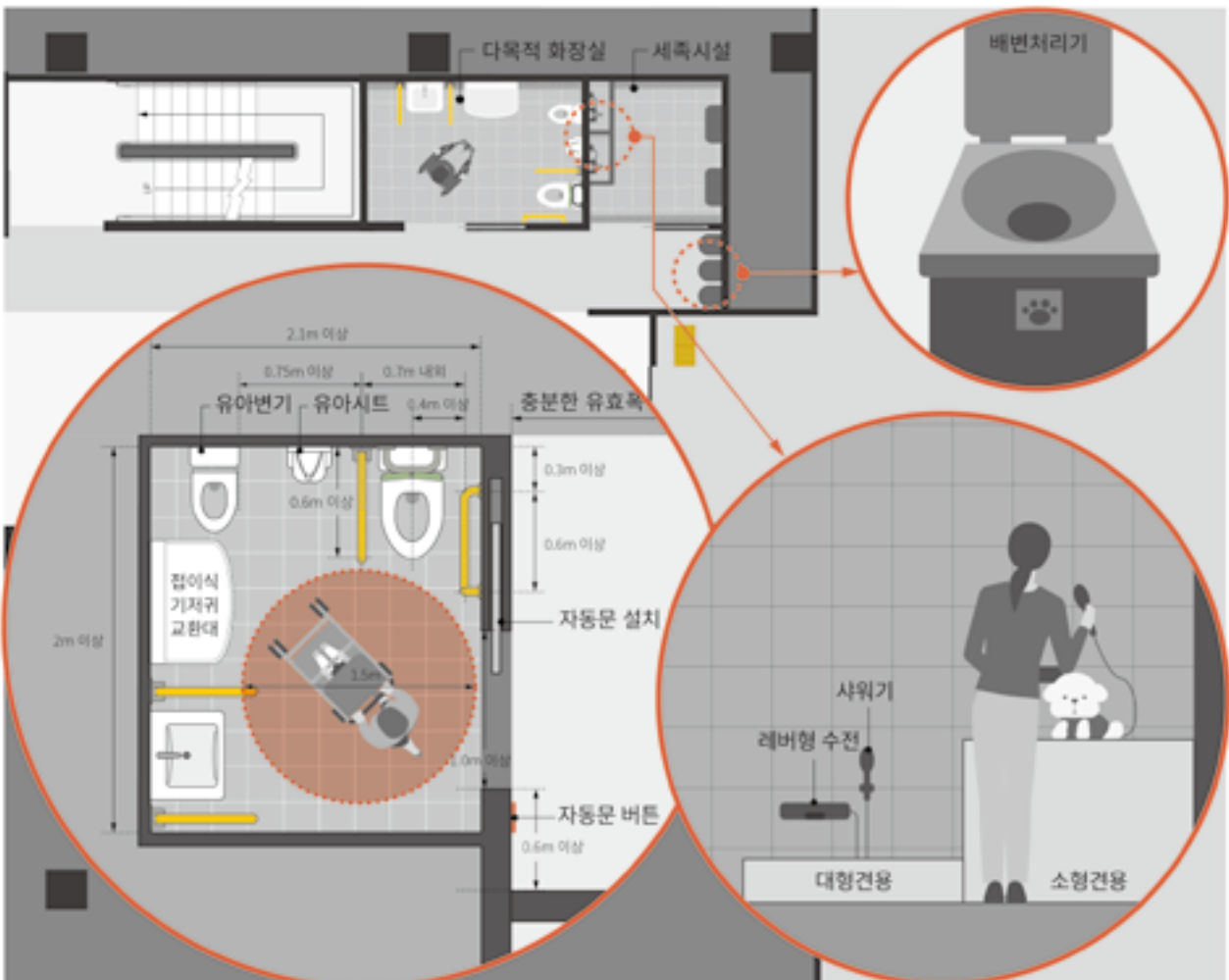


3

공용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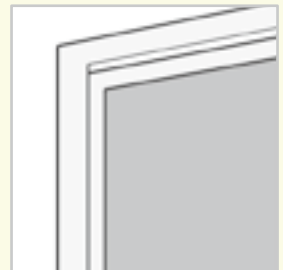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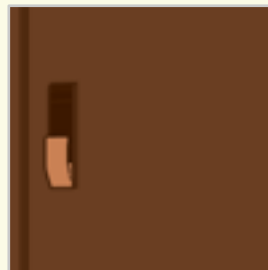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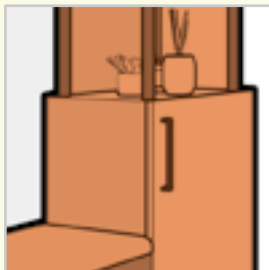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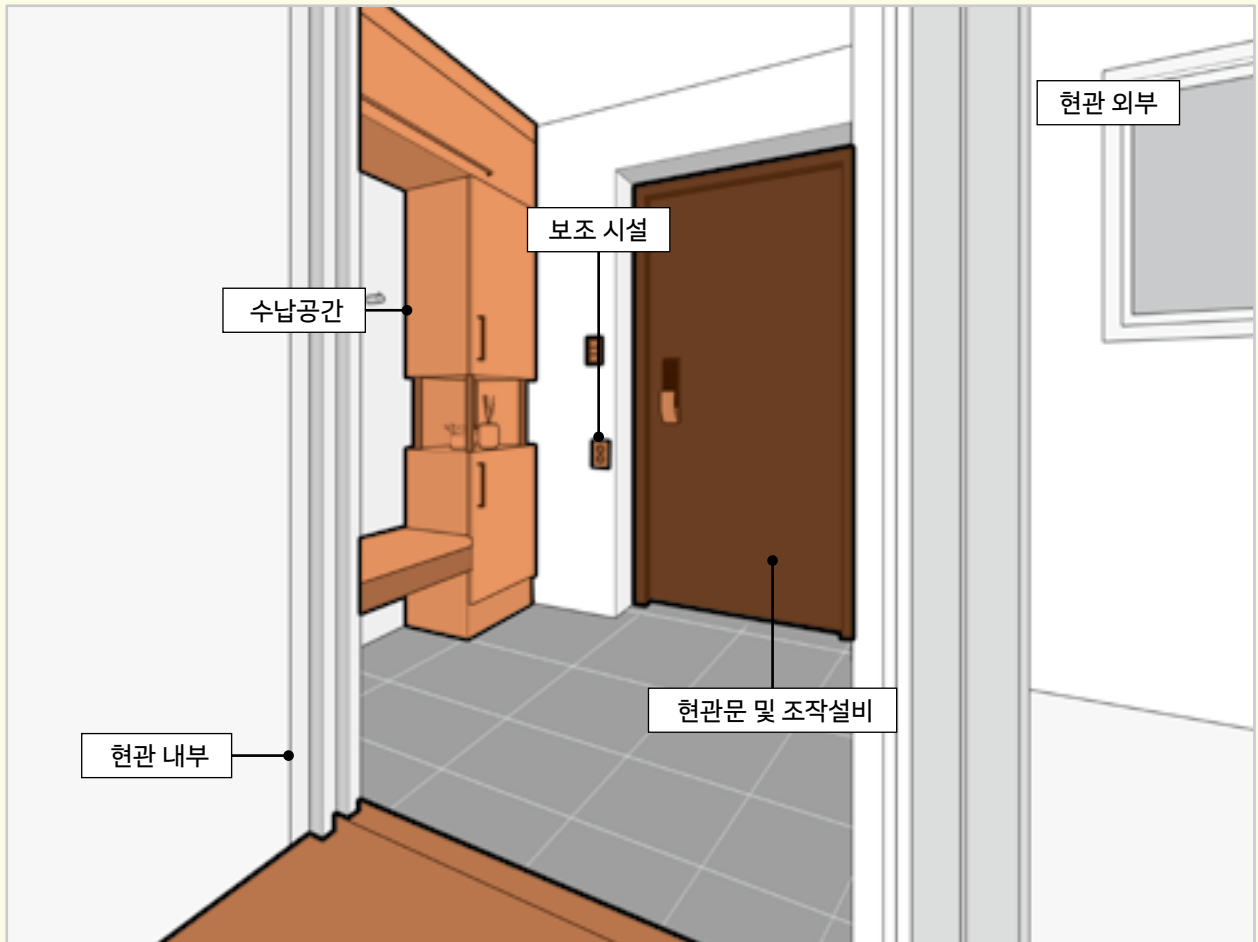
- 주거동 진입층 등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자, 외부활동 중 위생공간 이용이 필요한 입주민 등을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층에 공용화장실 및 클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공용화장실은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이 사용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 ▣ 다목적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건축물-위생공간-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참고한다.
- 반려동물 산책 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편의시설 : 반려동물 세족시설, 배변처리기 등



(1) 출입문 및 현관	63
(2) 거실 및 통로	71
(3) 주방	77
(4) 위생공간	82
(5) 방	90
(6) 다용도실 및 발코니	93



(1) 출입문 및 현관



계획원칙

- 현관은 다양한 보행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짐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 저시력자 등 거주자 누구나 출입문과 세대호출시설을 편리하게 조작, 이용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현관 내부는 누구나 편안하게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 등 세대 내부로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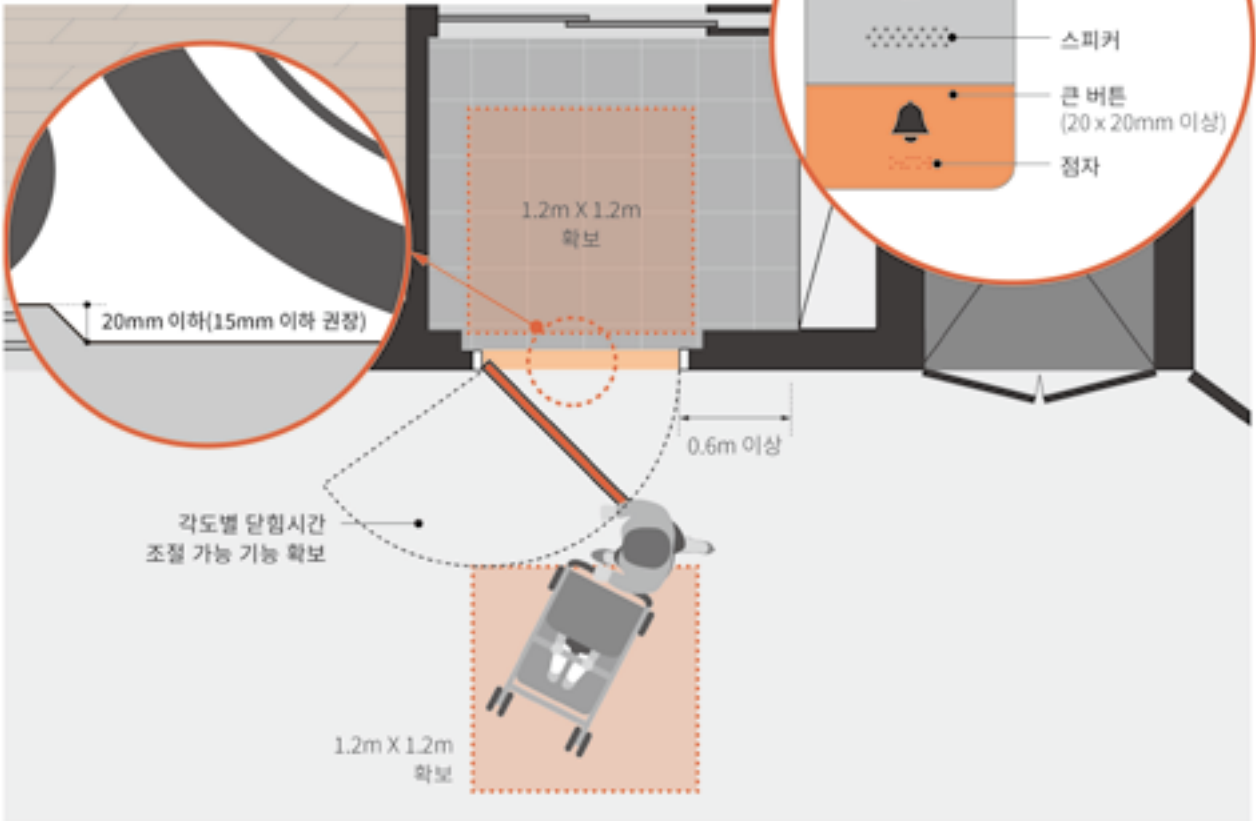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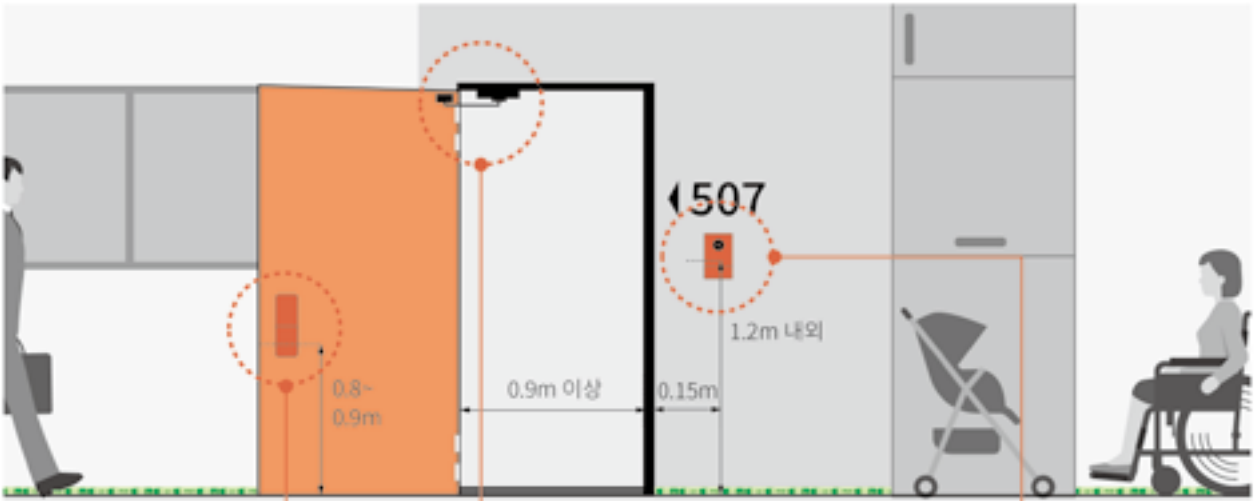
- 주거동 내부의 수직이동시설, 통로 등의 공용공간에서부터 세대 현관문까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관문 전면 영역에 대한 인지성 확보와 더불어 출입문 조작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현관 전면, 벽부/천장/바닥의 재질 및 색상 등을 달리하여 세대 출입공간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문틀, 문, 손잡이, 주변 벽체, 현관 도어 카메라는 명도차가 있는 배색 등 시인성 확보하도록 한다.
- 벽부, 바닥 등에는 암전, 자욱한 연기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피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현관 출입문 외부에는 공간 이용 안전성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을 설치한다.
- 사생활 보호, 환기 성능 확보 및 갑작스런 문 열림으로 인해 복도에서 이동하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알코브 형태로 계획을 권장한다. 단, 알코브 형태로 계획할 시에는 문 앞에 사람이 은폐되지 않도록 사면 처리 등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 알코브 영역 : 너비 1.5m 이상, 깊이 0.9m 이상 확보



기본지침

- 현관문과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와 저시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현관문은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 및 조작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유효폭 : 0.9m 이상
 - 출입문으로부터 모서리벽까지 여유폭 : 0.6m 이상
 - 출입문 문틀 하부는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단차로 설치한다.
 - 단차: 20mm 이하(15mm 이하 권장)
 - 현관문 조작설비(손잡이, 도어락 등)는 누구나 사용이 쉬운 높이에 쉽고 단순하게 조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형태: 레버식, 푸쉬풀 형 등
 - 현관문을 열고 세대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열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와 90도 이상 개방 시 고정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 예시: 통과 열림시간 5초 이상 확보
 - 각도별 닫힘시간 조절 가능 기능 확보
 - 문 고정장치: 누구나 조작 가능한 형태(정지형 도어클로저 등)
 - 적은 힘으로도 여닫을 수 있는 손쉬운 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 현관 도어 카메라는 출입문 손잡이 방향 벽면에 설치한다.
 - 어린이, 저신장 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하고 방문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 높이, 출입문에서 0.15m 이격
 - 손가락 끝이 뭉툭한 사람, 손끝 감각이 둔한 사람, 짐을 든 방문객, 시각장애인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버튼 크기: 가로세로 각 20mm 이상 권장
 - 내용: 점자 병기와 그림문자/글자 등은 양각 표기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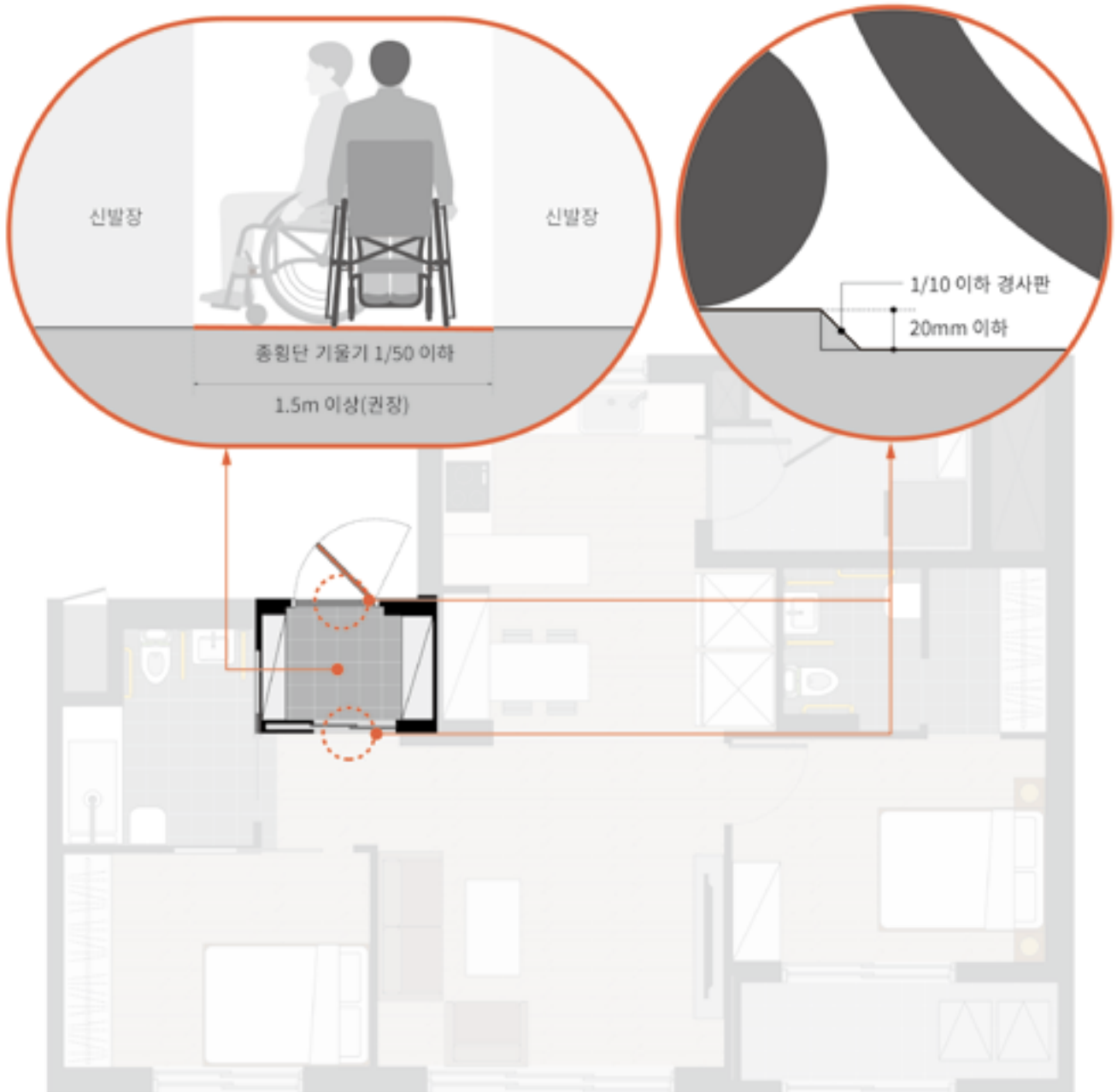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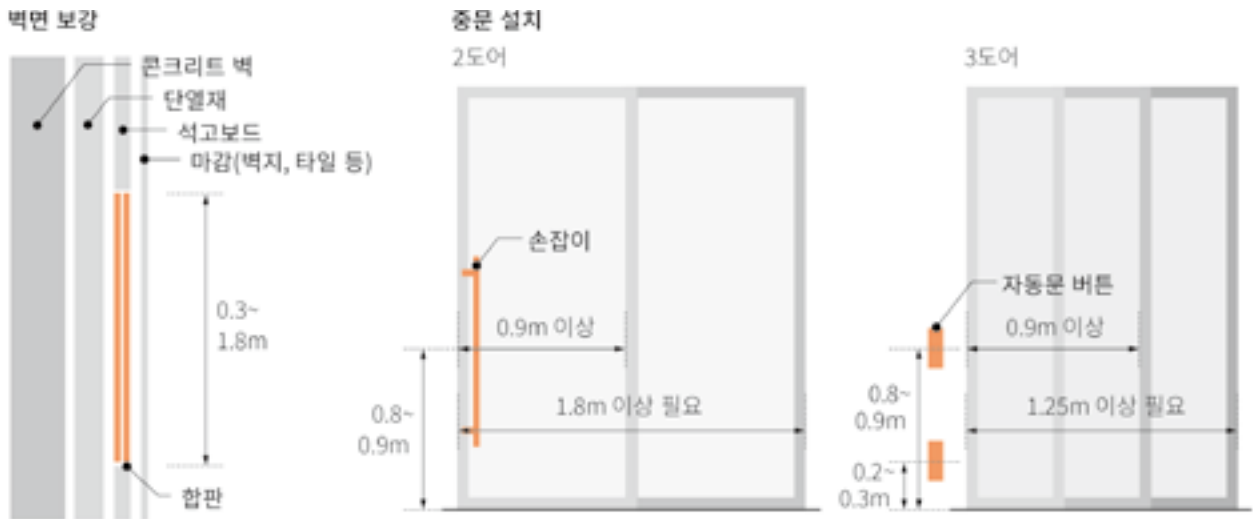


기본지침

- 현관의 내부는 휠체어 사용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현관 출입과 거실로의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닥 재질, 단차제거, 이동보조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보조기 이용, 캐리어/장바구니 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현관 내부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 가로 1.5m 이상
- 현관 바닥은 평탄하게 마감한다.
 - 기울기: 종단 및 횡단 1/50 이하
- 현관 내부와 거실 사이는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를 확보하며, 필요에 따라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판을 설치한다.
 - 단차: 최대 20mm
 - 경사판: 1/10 이하, 석재잔다듬 이상의 미끄럼 방지 성능
- 향후 입주자 상황에 따라 손잡이/보조의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벽면을 보강한다.
 - 보강 구역: 바닥에서 0.3~1.8m 높이 범위
 - 보강 기준: 양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 필요시 방풍, 방충,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한 적은 힘으로 조작이 가능한 중문을 설치한다.
 - 유효폭: 0.9m 이상 확보 권장(휠체어 사용 세대)
 - 형태: 미닫이문 또는 버튼형 자동문(휠체어 세대 적용 권장)
 - 손잡이: 세로바 형태로 문틀과 대비되는 색상 적용 권장(손잡이 중심이 바닥에서 0.85~0.9m 사이에 위치)
 - 자동문 조작버튼: 바닥에서 0.8~0.9m 내외 높이, 안쪽 모서리에서 0.25m 이상 이격(바닥에서 0.2~0.3m 내외 높이 추가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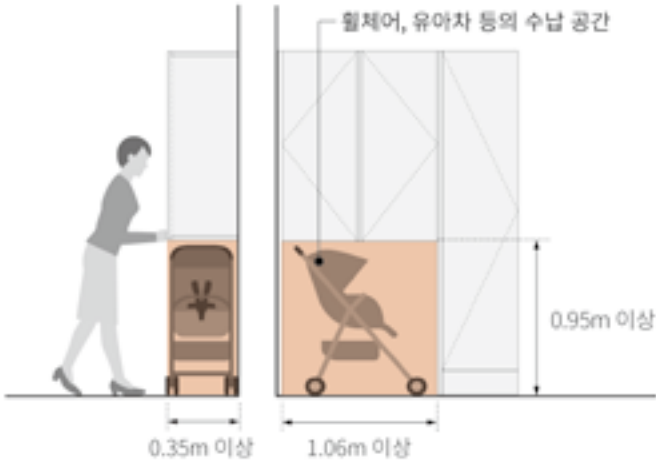


4 수납공간

기본지침

- 현관 내부의 수납공간은 거주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보행보조수단 이용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수납장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되,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 유아차 등의 보관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고려한다.
 - 손잡이: 잡기 쉬운 바 형태
 -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의 수납이 가능한 공간 확보 권장(바닥에서 0.4m 이상의 하부공간)
 - 휠체어, 유아차 등의 수납이 가능한 하부수납장 혹은 팬트리 권장 (최소깊이 0.35m, 폭 1.06m, 높이 0.95m 이상)
-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선반 설치 높이: 바닥에서 0.9m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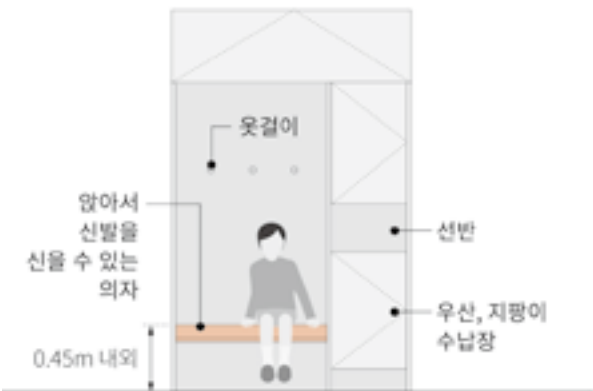
휠체어, 유아차 등의 보관이 가능한 수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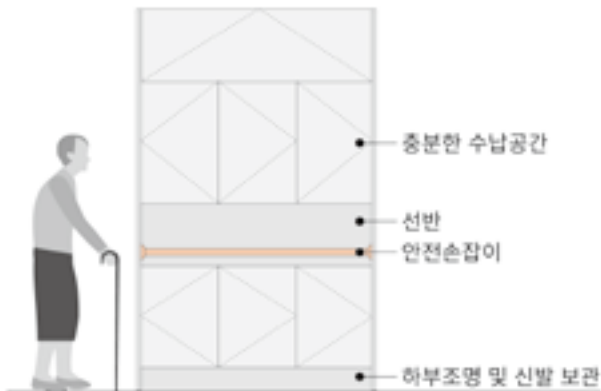
편한 외출을 위한 선반이 있는 수납장



의자가 있는 수납장



안전손잡이가 있는 수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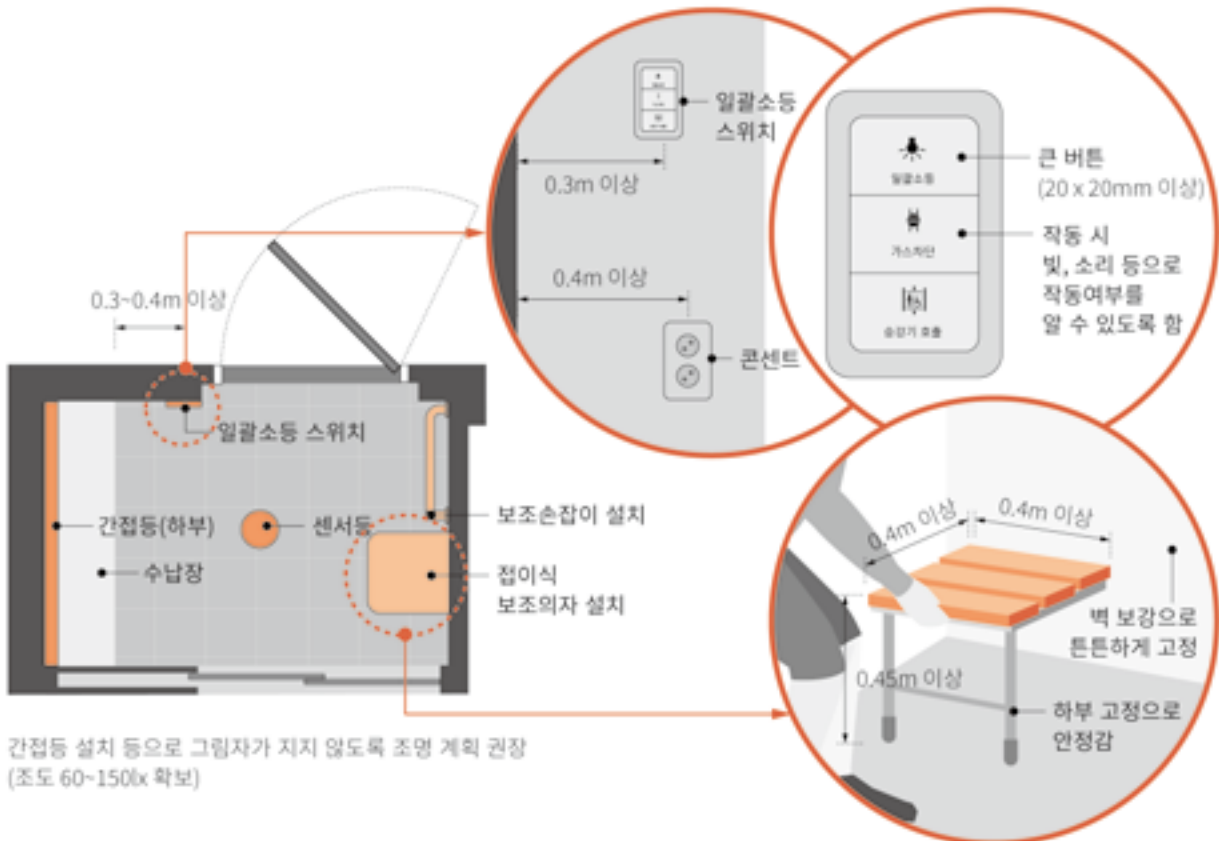
5

보조 시설

기본지침

- 현관 내부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전이 공간이 되도록 외출 전후 신발을 갈아 신는 행위, 용모 확인 등을 위한 보조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 전기, 가스 등이 차단될 수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쪽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신발을 갈아신고, 정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조도 기준: 60~150lx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조의자를 설치한다.
 - 설치 형태: 수납장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너비 0.4m 이상, 깊이 0.4m 이상 확보
 - 설치 높이: 높이 0.45m 내외
- 현관내부, 보조의자 측면 등에 잡기 쉬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재질 기준: 잡기 쉽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제품 설치 권장
- 공간 개방감, 용모 확인을 위해 벽면, 수납가구 문 등을 활용하여 전신거울을 설치한다.
- 현관 내부에는 전동휠체어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한다.



(2) 거실 및 통로



계획원칙

- 거실 및 통로는 안전한 이동과 함께 내부 창호의 조작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각종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 등 거주자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거실 및 통로 등에는 시청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주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한 방문자 확인 및 위급상황 인지가 가능하도록 세대 단말기, 비상 설비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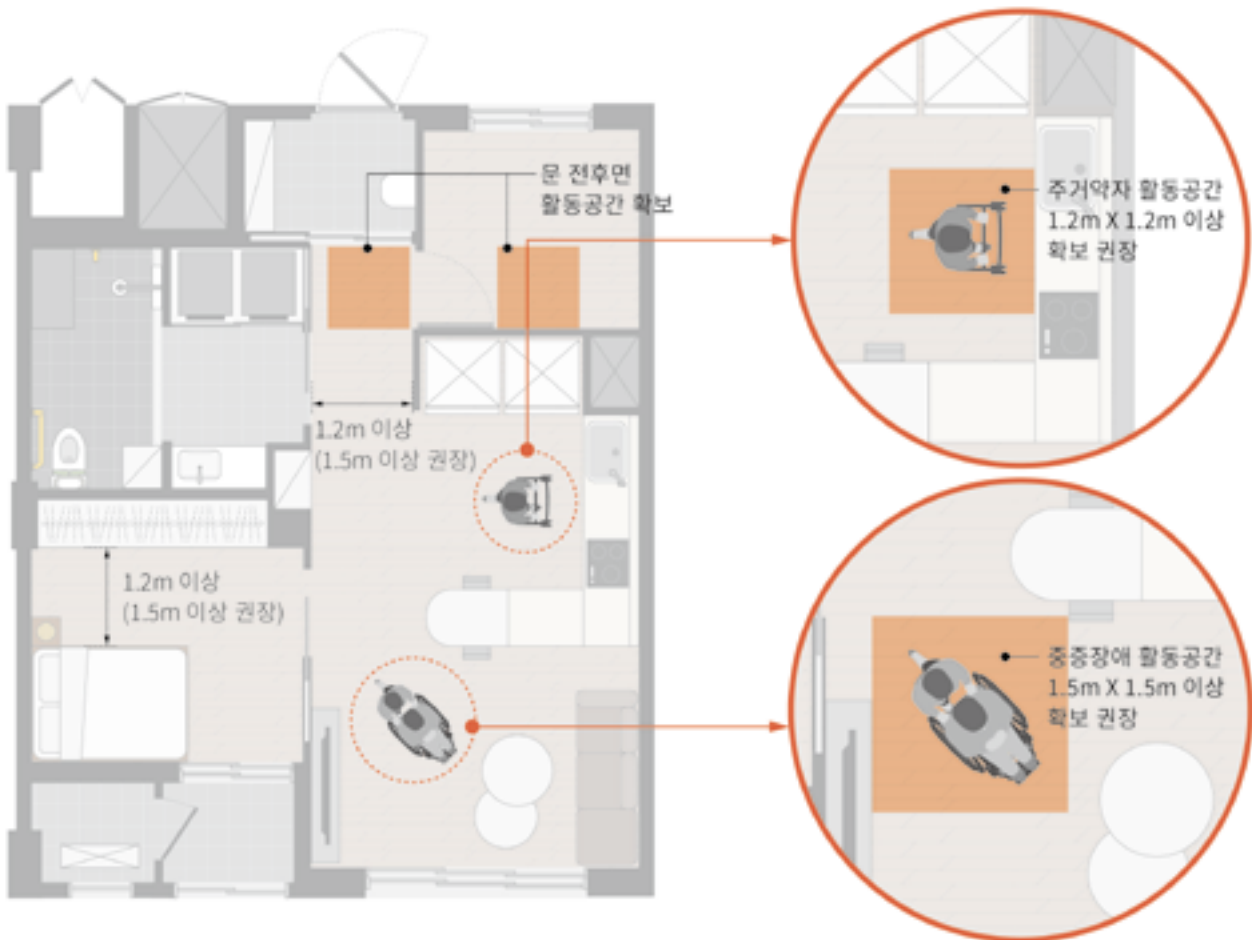


1

통로 및 활동공간

기본지침

- 거실과 통로에는 보행보조기 이용자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방향 전환, 창호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활동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 각 실을 연결하는 통로는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통로 유효폭: 1.5m 이상 권장(최소 1.2m 이상 확보)
- 출입문 전·후면과 창호 등의 전면에는 보행보조기, 목발 사용자 등의 편안한 활동과 설비 조작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 (주거약자) 활동공간: 1.2m × 1.2m 확보
 - (중증장애) 활동공간: 1.5m × 1.5m 확보 권장
 - (주거약자) 여담이문 담강방향에서는 문 개폐 소요 공간 외의 후면 활동공간을 1.2m 이상 확보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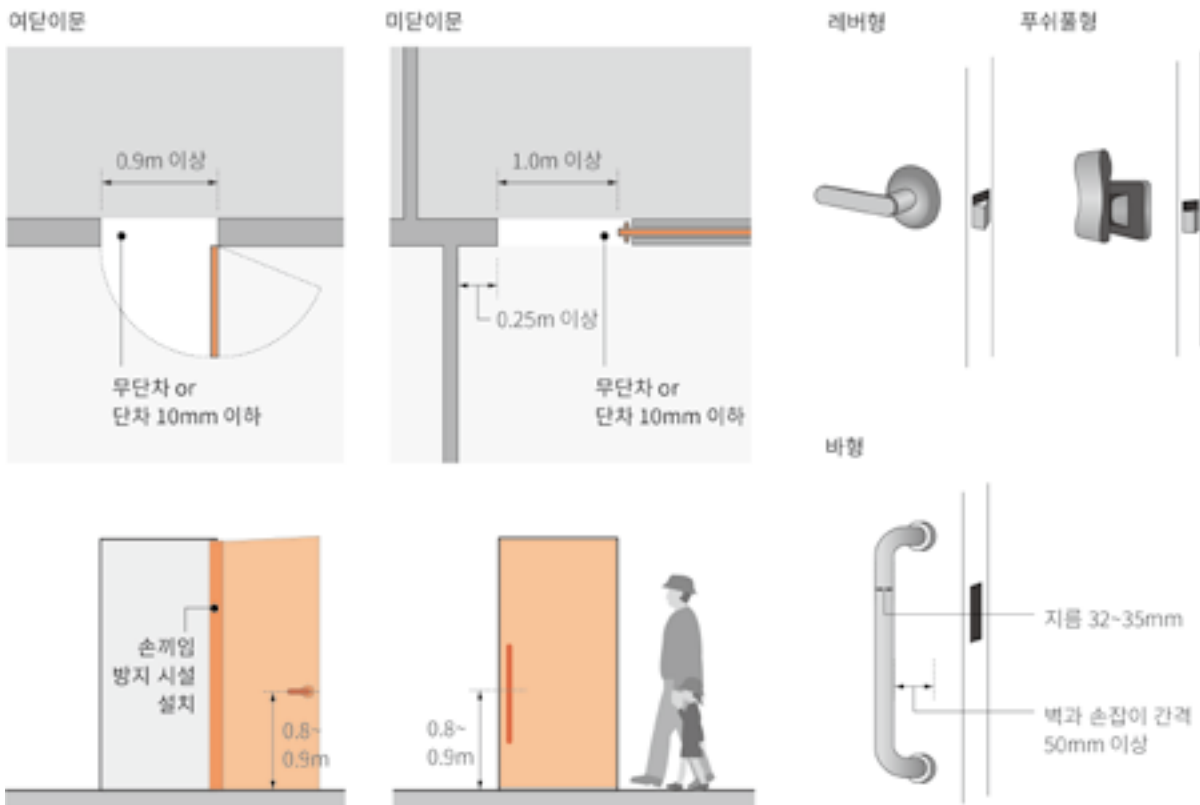


2

실내 출입문

기본지침

- 단위세대 내부 출입문은 보행보조기 이용자, 손이 불편한 거주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한 조작과 통과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출입문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으로 설치한다.
 - 여닫이문 유효폭: 0.9m 이상
 - 미닫이문 유효폭: 1.0m 이상
 - 손잡이 방향 측면에는 손잡이 조작을 위한 날개벽을 확보한다.
 - 날개벽: 0.25m 이상
 -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문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끼임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문틀 하부단차는 10mm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무단차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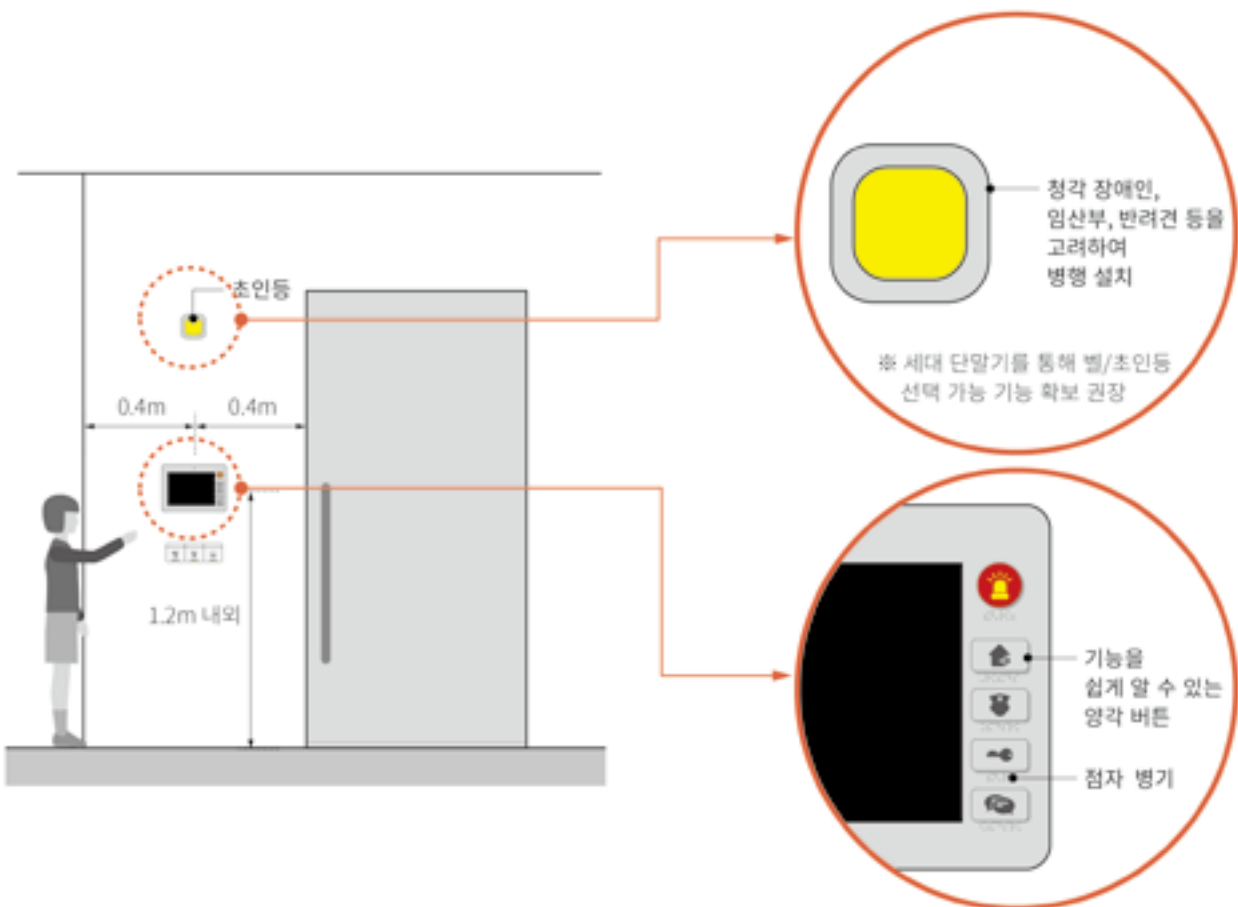


3

세대 단말기

기본지침

- 세대 단말기는 저시력자, 청각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작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세대 단말기는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바닥에서 기기중심까지 1.2m 내외 높이, 모서리 등에서 0.4m 이격하여 설치 권장
 - 누구나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면은 저반사 재질로 적용하고, 디지털 약자, 약시자, 시스템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화, 문열림 등의 주요 기능은 양각/점자 등이 병기된 버튼을 고려한다.
 - 청각 장애인, 임신부, 반려견 등을 고려하여 벨과 초인등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 벨/초인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조명, 냉·난방 on-off 등 휴대 조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 제품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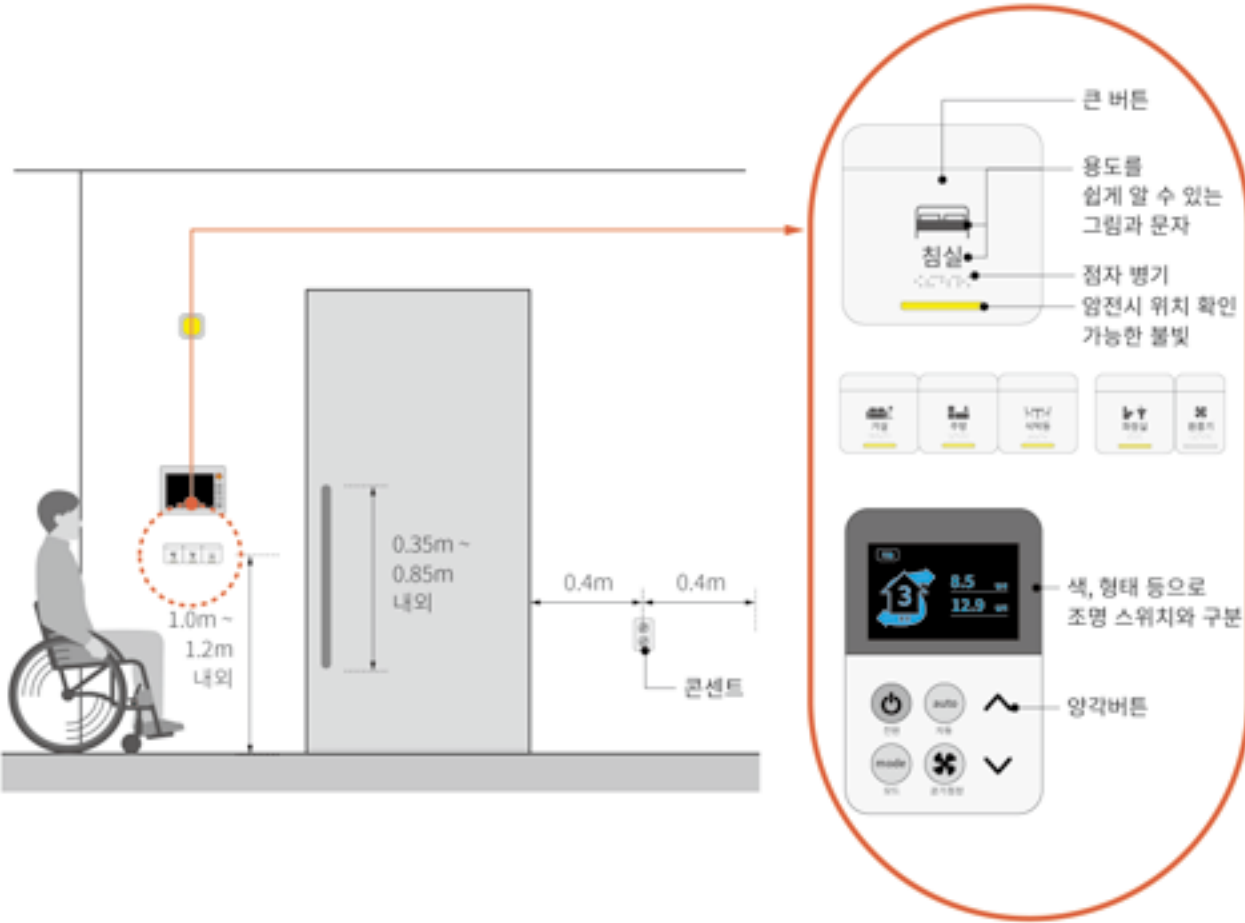


4 조작 설비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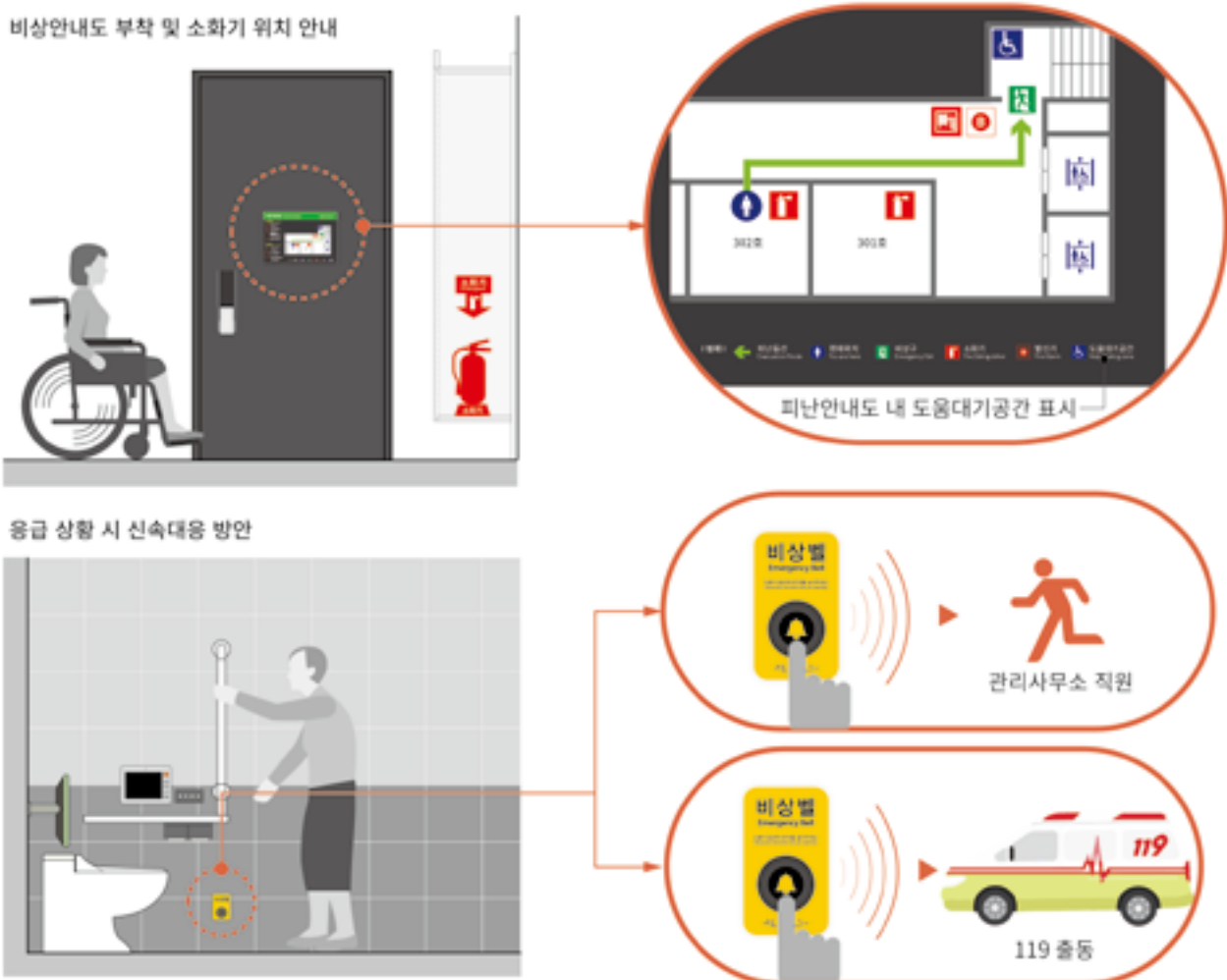
▪ 세대 내 각종 조작 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주야간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조작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전등 스위치는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중심이 바닥에서 1.0~1.2m 내외의 높이에 세대 단말기 등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권장
- 스위치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림 또는 문자로 실명이 표기되고 암전 시에도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설치를 권장한다.
- 환기조절장치 등 기타 설비도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전등 스위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색, 형태 등을 통해 구분되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조작이 간편하도록 작동 시 음성 안내가 되는 제품으로 고려한다.
 - 중심이 바닥에서 1.0~1.2m 내외의 높이에 설치 권장
- 전기 콘센트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 설치 높이: 중심이 바닥에서 0.35~0.85m 내외의 높이 권장
 - 예상되는 기능에 따라 적절히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
 - 안쪽 모서리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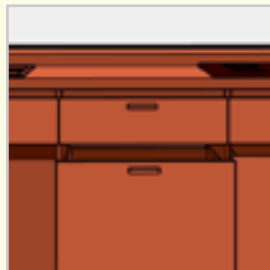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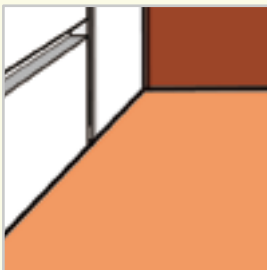


기본지침

- 세대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빠르게 인지 및 이용이 가능한 시각 및 청각 경보, 비상호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시에도 쉽게 인지 및 이해 가능한 피난 및 대피 동선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비상 시 대피 경로를 알 수 있는 안내도를 세대별로 부착하고, 비상대피안내도에는 비상탈출구, 소화기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비상경보기, 비상연락장치는 입주자 요청 시 거실, 욕실, 침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시각경보기는 거실에만 설치(입주자 요청시 욕실, 침실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추가 설치 가능)
 - 비상연락장치 수신반은 단지 내 상시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실에 설치를 권장하며, 상시 감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녀, 119 등과 연결을 고려한다.
 - 비상연락장치는 거실, 욕실, 침실 등에서 관리사무소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설치 권장(세대 단말기 포함)



(3) 주방



계획원칙

- 주방은 세대 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구성되고, 다양한 주방 가구 및 안전 관련 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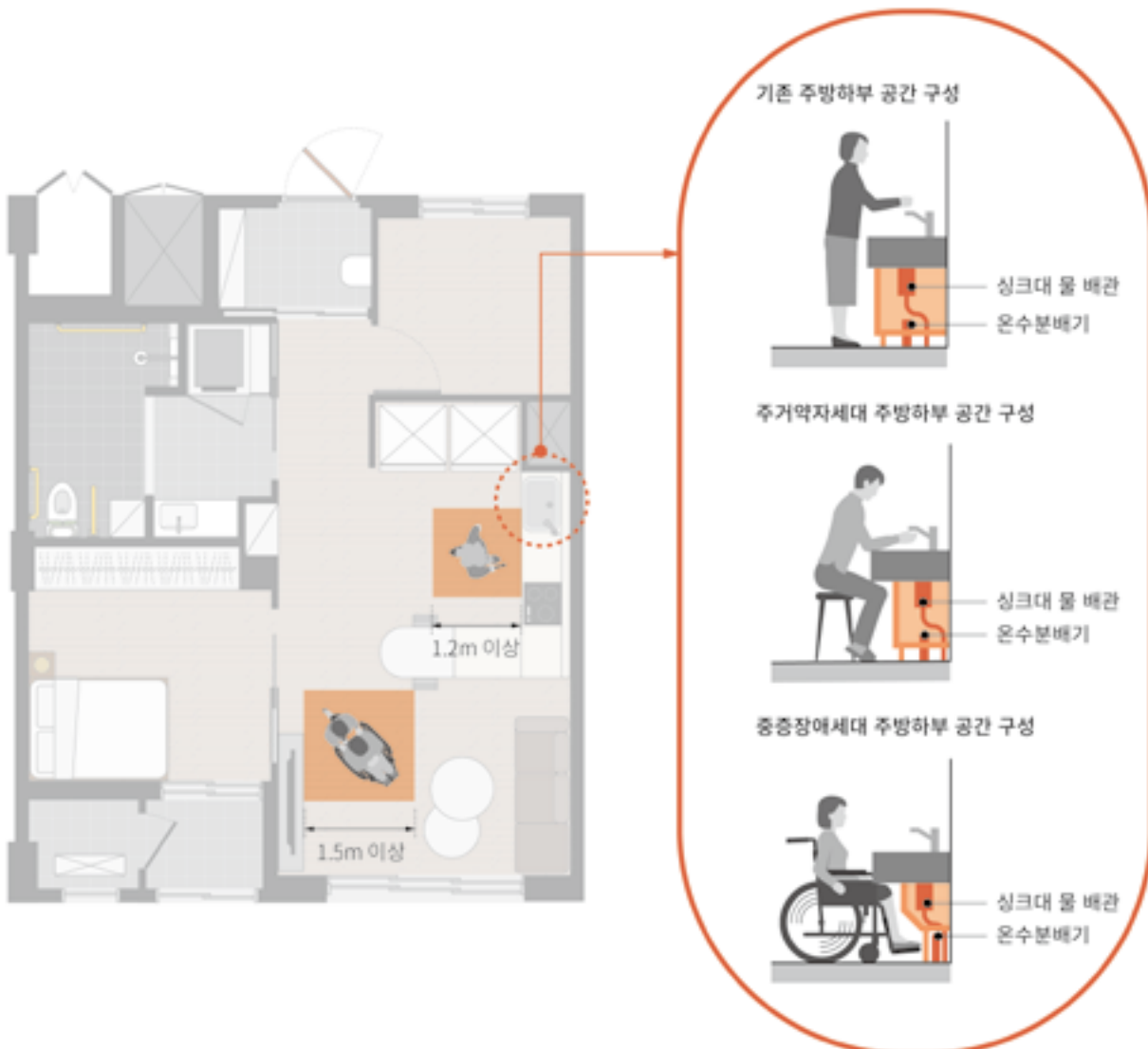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기본지침

- 주방가구, 작업대 등의 전면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 세대 내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가구, 테이블 등의 사이는 이동을 위한 충분한 통로폭을 확보하고, 수납, 조리공간 전면은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주거약자) 작업, 음식 옮기기, 보행보조기 이용 등에 어려움 없는 유효 활동공간: 1.2m × 1.2m 이상
 - (중증장애) 휠체어 사용자 등의 작업, 이동, 회전 등에 어려움 없는 유효 활동공간: 1.5m × 1.5m 이상 권장
- 주방 하부공간의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및 휠체어 무릎공간 확보를 위해 온수 분배기는 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권장한다.



기본지침

- 주방가구 등은 세대 내 거주자의 신체특성, 보행보조기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거주자 스스로 수납공간 이용, 조리 및 세척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작업대는 사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높이로 설치하되, 세대의 요청 등에 따라 입식 또는 좌식 형태로 설치한다.
 - 평균 높이 : 개수대 상단 높이 0.85m 내외, 깊이는 0.6~0.7m 내외
 - 세대의 요청 시 입식 또는 좌식 형태로 설치를 고려한다.
 - 상부장은 오픈 형태, 여닫이 형태, 드롭다운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작업대 시야 확보, 머리 부딪힘 등을 고려하여 높이 및 깊이를 계획한다.
 - 상부장의 선반은 투명 재질 등 시야 확보가 쉬운 재질로 설치할 수 있다.
 - 하부장은 사용이 편리한 서랍식 구조로 설치를 권장하며, 하부공간 확보 또는 수납장 분리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 상하부장 손잡이는 설치 시 명도 대비 등으로 인해 시인성이 확보된 잡기 쉬운 바 형태로 설치한다.
 - 하부장은 작업대보다 후퇴시켜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 가열대는 무거운 그릇을 들어 옮기기 쉽도록 수평이동이 쉬운 인덕션 등으로 설치하고, 가열대는 조작 여부 확인 및 사용하기 편리한 다이얼 방식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가열대 상부에는 안전을 위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 작업대에서 이용이 편리한 콘센트를 설치한다.
 -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기본적인 가전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설치 공간을 마련한다.



주방 작업대 설치

ㄱ자형 주방 작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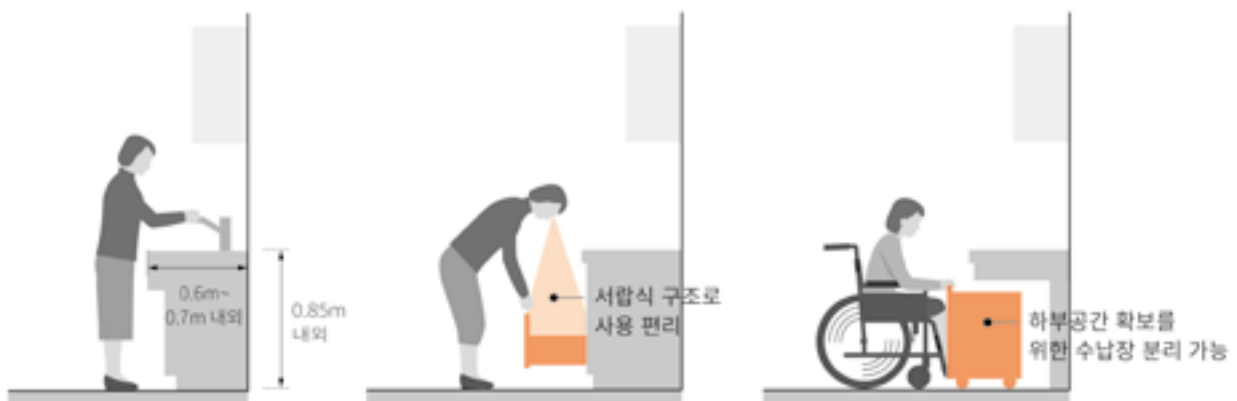
ㄷ자형 주방 작업대



상부장의 다양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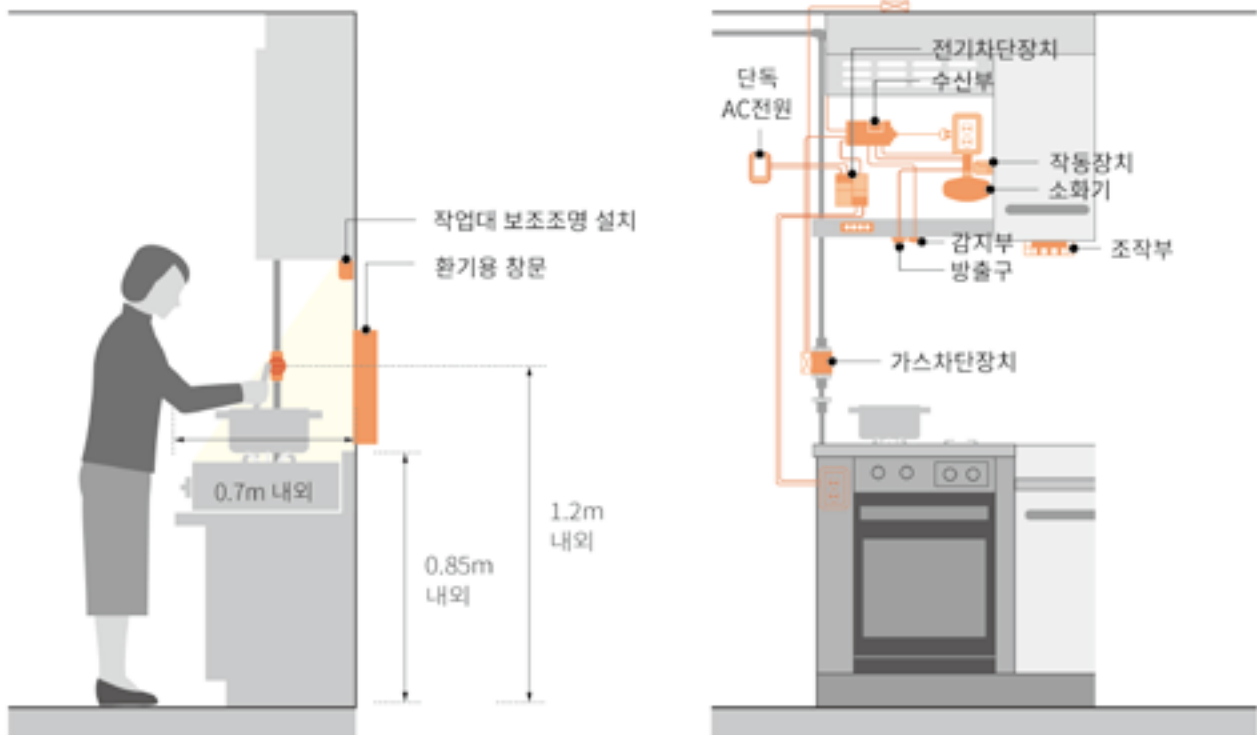


하부장의 다양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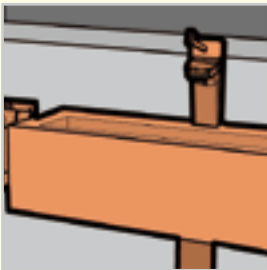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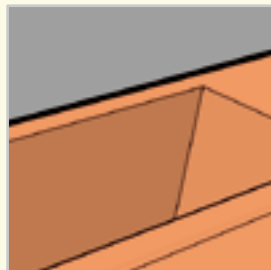


기본지침

- 세대 내 화재, 가스누출 등의 위험 상황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한 조도와 환기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재료 확인 및 손질 등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면 조도를 확보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계획하고, 보조조명 설치를 고려한다.
 - 전반적인 조도 기준: 100~150lx
 - (주거약자) 청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조도: 300lx 이상 권장
 -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 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 설치 시 시청각 동시 경보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 가스 밸브는 조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1.2m 내외의 높이에 설치하며,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를 고려한다.
 - 환기용 창문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를 고려한다.
 - 환기창 설치 위치: 높이 0.85m 내외, 깊이 0.95m 이하 권장



(4) 위생공간



계획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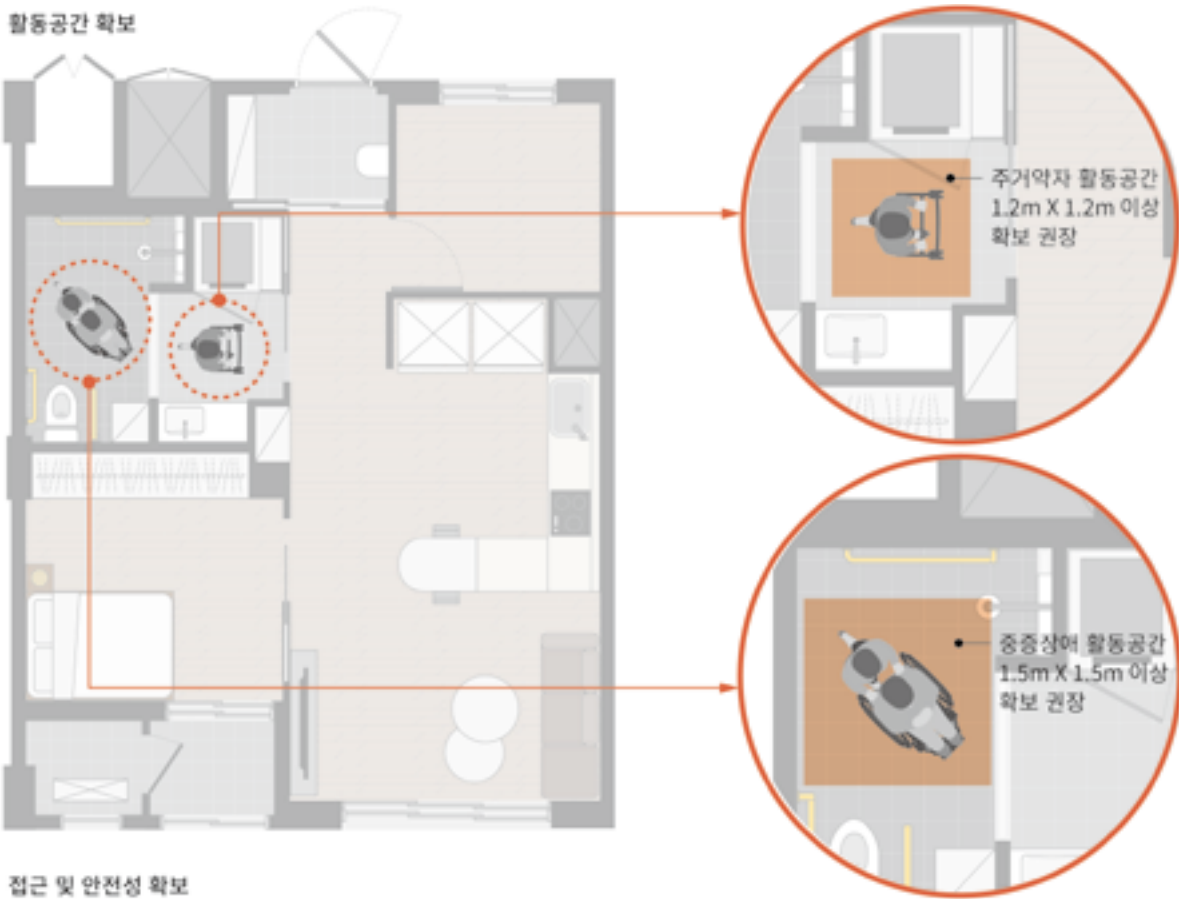
- 위생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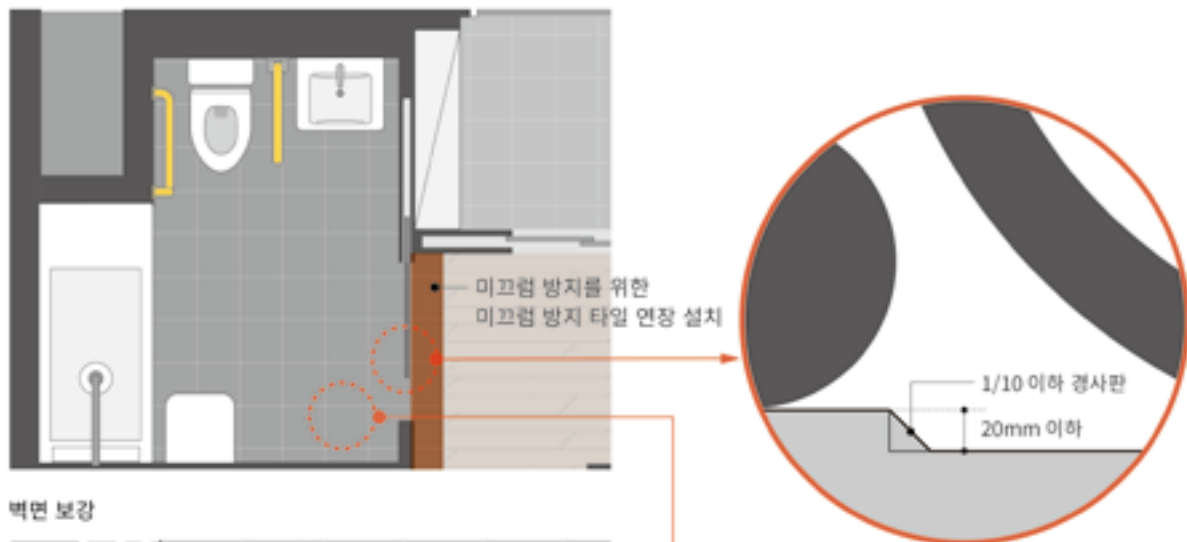
- 위생공간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 휠체어 사용자의 자립 이용과 보조인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 등 거주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변적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 위생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보행보조기 사용자,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규모로 계획 한다.
 - 보행보조기 사용자 활동공간: 1.2m × 1.2m
 - 휠체어 사용자 활동공간: 1.5m × 1.5m
 - 출입문 하부 단차는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의 출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물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를 고려한다.
 - 단차: 20mm 이하
 - 바닥재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습윤 시 정적마찰계수 0.6 이상)를 사용한다.
 - 예시: 출입구 전면 일부 구역(발매트 설치 구역)에도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바닥에 난방을 적용한다.
 - 향후 입주자 상황에 따라 손잡이/보조의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벽면을 보강할 수 있다.
 - 보강 구역: 바닥에서 0.3~1.8m 높이 범위
 - 보강 기준: 앙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 벽과 바닥은 위생도기와 대비되어 인지될 수 있도록 색상 및 명도를 고려하여 타일 색상을 선택한다.
 - 위생공간 내부에 세탁기 설치, 건식 세면공간 확보 등 가능한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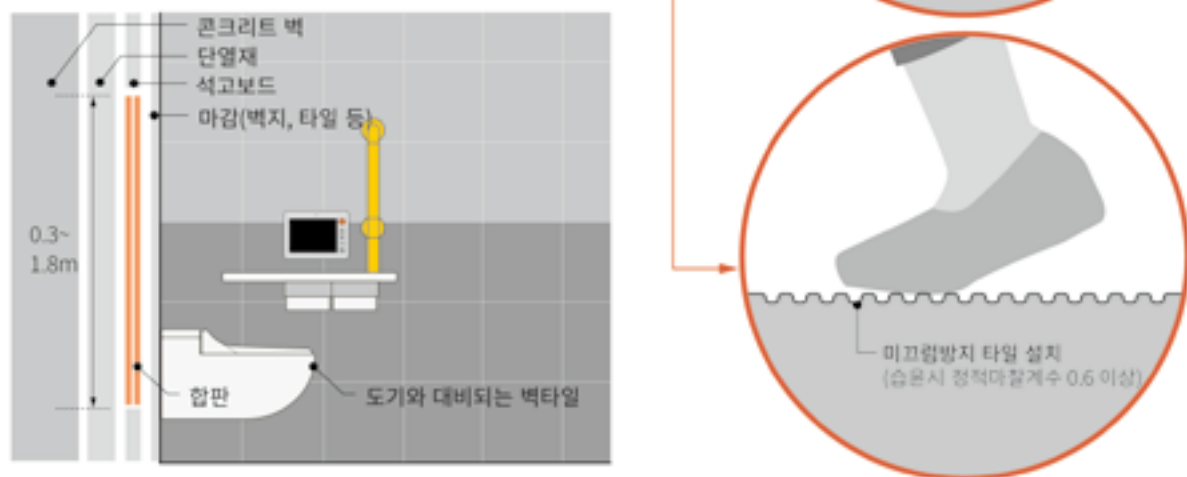
활동공간 확보



접근 및 안전성 확보



벽면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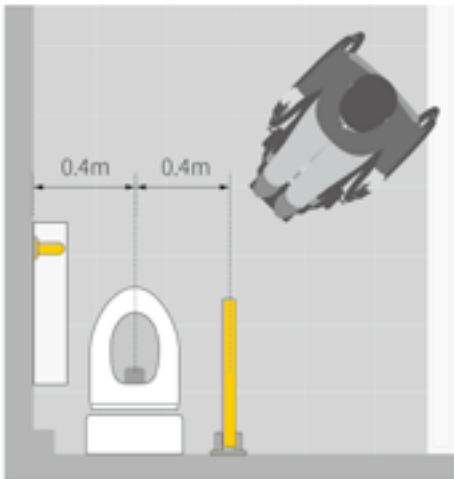


2 대변기

기본지침

▪ 대변기와 주변의 설비는 누구나 편안한 배변 활동과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대변기 좌우에는 세정장치의 조작, 점검, 안전손잡이 설치와 이용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m 내외
 - 안전손잡이 설치 시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5~0.5m 내외
- 대변기 좌대는 앉고 서기,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 편리한 높이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변기 설치 높이: 바닥에서 0.4m 내외
 - 대변기 좌대는 앉음, 등 기댐, 향후 등받이 설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깊이를 확보한다.
 - 대변기 좌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평, 수직 형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높이 0.6~0.7m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잡기 쉽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 당 120kg의 하중을 지지
- 물내림 방식은 레버형 외에 벽면 조작형, 압력 감지 센서형, 페달형 등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의 제품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물내림 방식
벽면 조작형



압력 감지 센서형



페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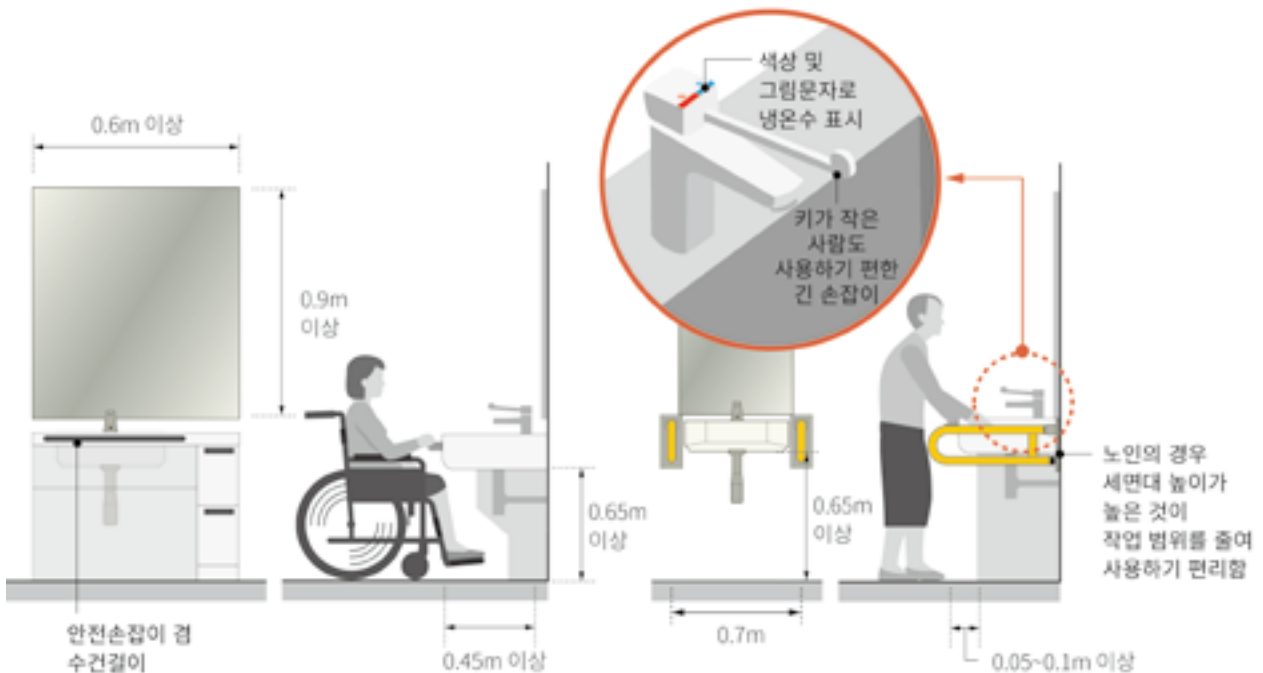
3

세면대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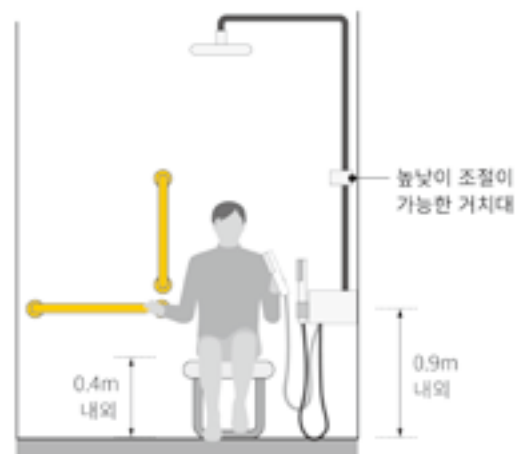
- 세면대와 주변의 설비는 세대 내 거주자의 신체 특성, 보행보조기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거주자 누구나 스스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세면대는 누구나 손을 씻거나 세면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 이용자의 특성, 세대의 요청 등에 따라 세면대 높이를 다르게 조정 할 수 있다.
 - 세면대 하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위해 하부공간이 비어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고려하고,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 사용자 필요 하부공간: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권장
 - 서서 이용하는 사람 필요 무릎공간: 세면대 전면부가 하부장보다 5~10cm 내외 돌출 권장
 - 거울은 누구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너비로 설치 권장한다.
 - 신체 지지, 수건걸이 등으로 활용을 고려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설치 위치: 높이 0.8~0.9m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 당 120kg의 하중을 지지
- 수전은 on/off, 냉/온수 조작이 쉬운 제품으로 설치한다.



기본지침

- 샤워 공간과 주변의 설비는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목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샤워 부스는 누구나 몸을 닦는데 충분한 규모 확보를 권장한다.
 - (주거약자)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 이동식 샤워의자를 놓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권장 (예. 1.2m × 1.2m 이상)
 - (중증장애)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 활동 보조 고려 등 여유로운 공간 권장 (예. 1.5m × 1.5m 이상)
 - 샤워 부스에 출입문 설치 시 여닫기 쉬운 형태와 손잡이를 설치하며, 보행보조기, 샤워용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밖여닫이 혹은 미닫이
 - 휠체어 사용자 최소 통과 유효폭: 0.8m 이상
 - 수도꼭지는 누구나 서서 또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고 고정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바를 설치한다.
 - 수도꼭지 및 거치대 설치 높이: 0.9m 내외
 - 샴푸, 린스 등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은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한다.
 - 서 있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고정식, 접이식 의자 설치를 고려하며, 의자는 앉기 편한 높이에 설치한다.
 - 의자 높이: 바닥에서 0.45m 내외
 - 설치 위치: 수도꼭지 조작이 가능한 위치
 - 보조의자, 수도꼭지 주변에 안전한 이동 및 샤워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 설치 위치: 높이 0.8~0.9m
 - 설치 기준: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 이상
 - 소재: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120kg의 하중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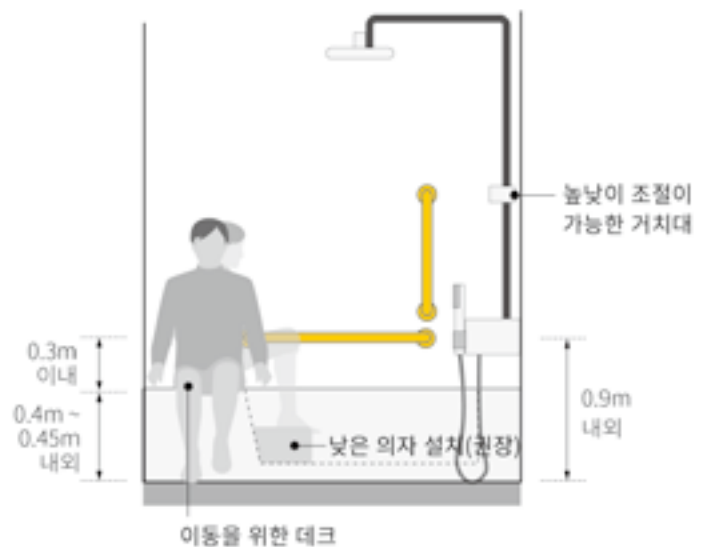


5

욕조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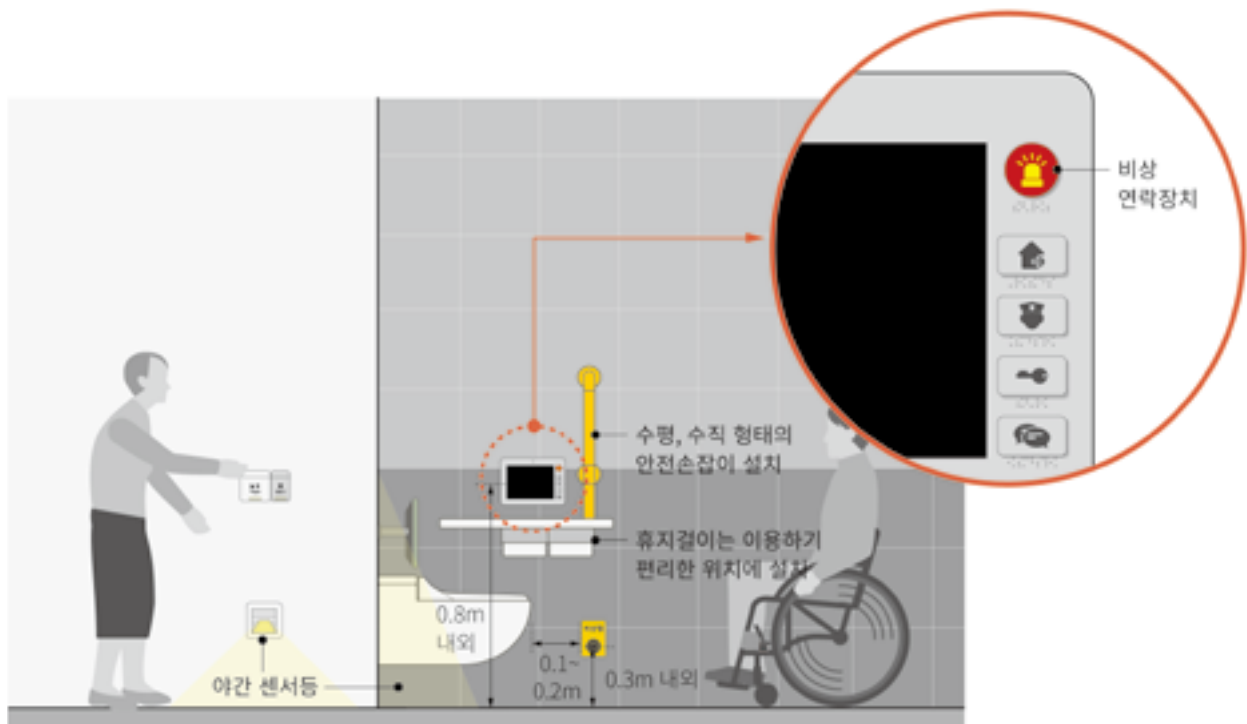
기본지침

- 욕조 설치 시 거주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되, 누구나 욕조 내부로의 안전한 이동과 편리한 설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편리한 돌봄 활동 지원이 되도록 활동공간과 보조 설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 욕조는 내외부로 이동이 편리한 적절한 높이로 설치하고 이동을 위한 데크가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 바닥면에서 0.4~0.45m 내외의 높이
 - 데크 폭 0.4m 내외 확보 권장
 - 욕조 내 목욕 편의, 자세 유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다.
 - 미끄럼방지 코팅이 된 낮은 의자 등
 - 욕조 내외부로 이동 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권장한다.
 -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욕조 상단에서 0.3m 이내 위치
 - 수직손잡이 설치 높이: 바닥에서 1.5m 내외 높이에서 이용 가능
 - 재질: 잡기 쉽고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 지지하중: 지점당 120kg의 하중을 지지
 - 수도꼭지는 내 외부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를 권장한다.
 - 욕조 외부에는 양육자, 장애/노인 활동보조인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욕조 전면, 측면 등: 0.7m × 1.2m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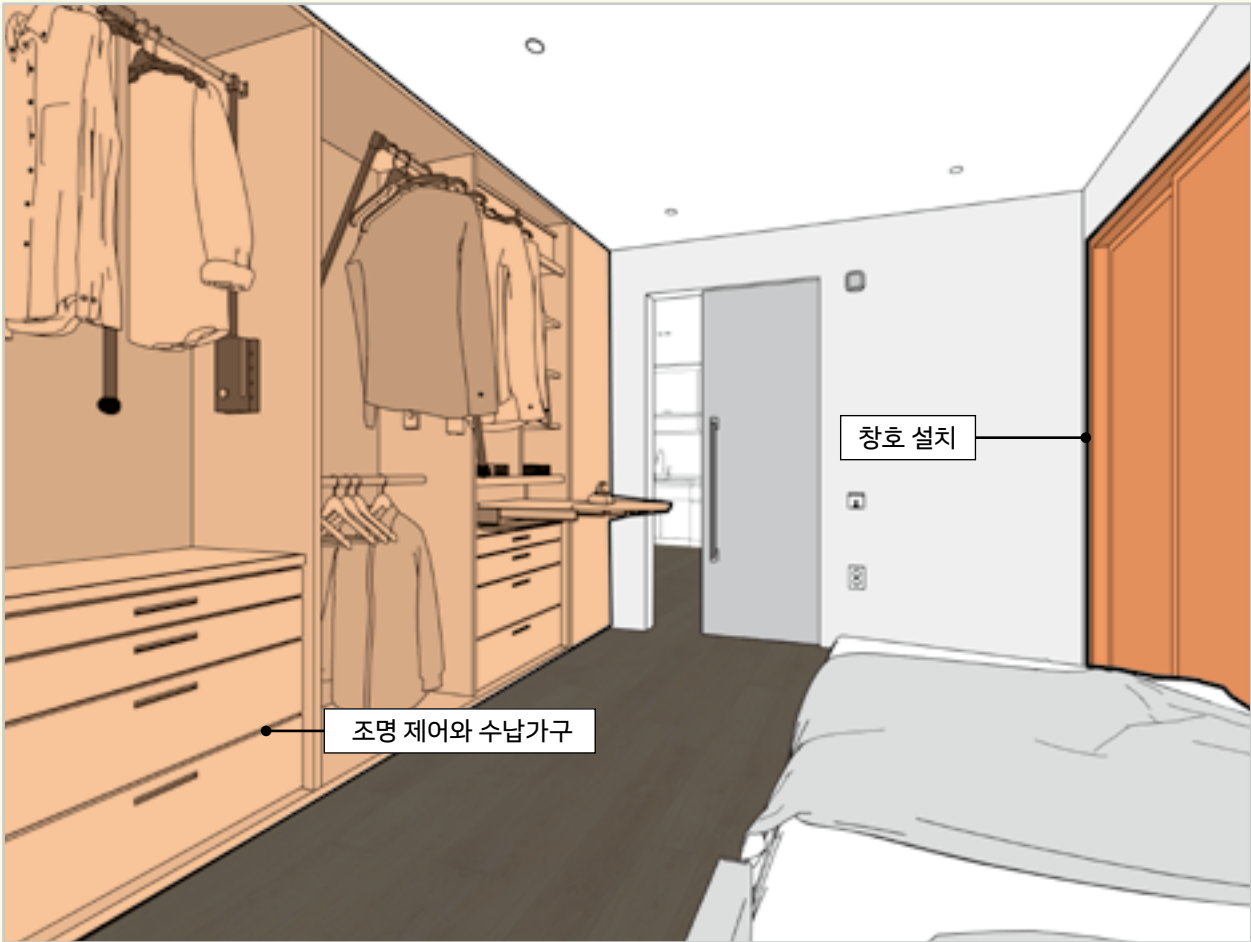


기본지침

- 위생공간 내에는 비상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지걸이, 신체지지 보조손잡이, 보조의자 등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비상연락 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바닥에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대에서 이용 가능 위치: 바닥면에서 0.8m 내외 높이, 변기 앞 끝에서 뒤쪽으로 0.1~0.2m 되는 지점에 설치
 - 바닥에서 이용 가능 위치: 바닥면 0.3m 내외에서도 조작 가능 형태
 - 휴지걸이는 대변기 좌대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욕실 내부 천장 또는 출입구 인근 벽체 하부에 야간 이동 시 점등되는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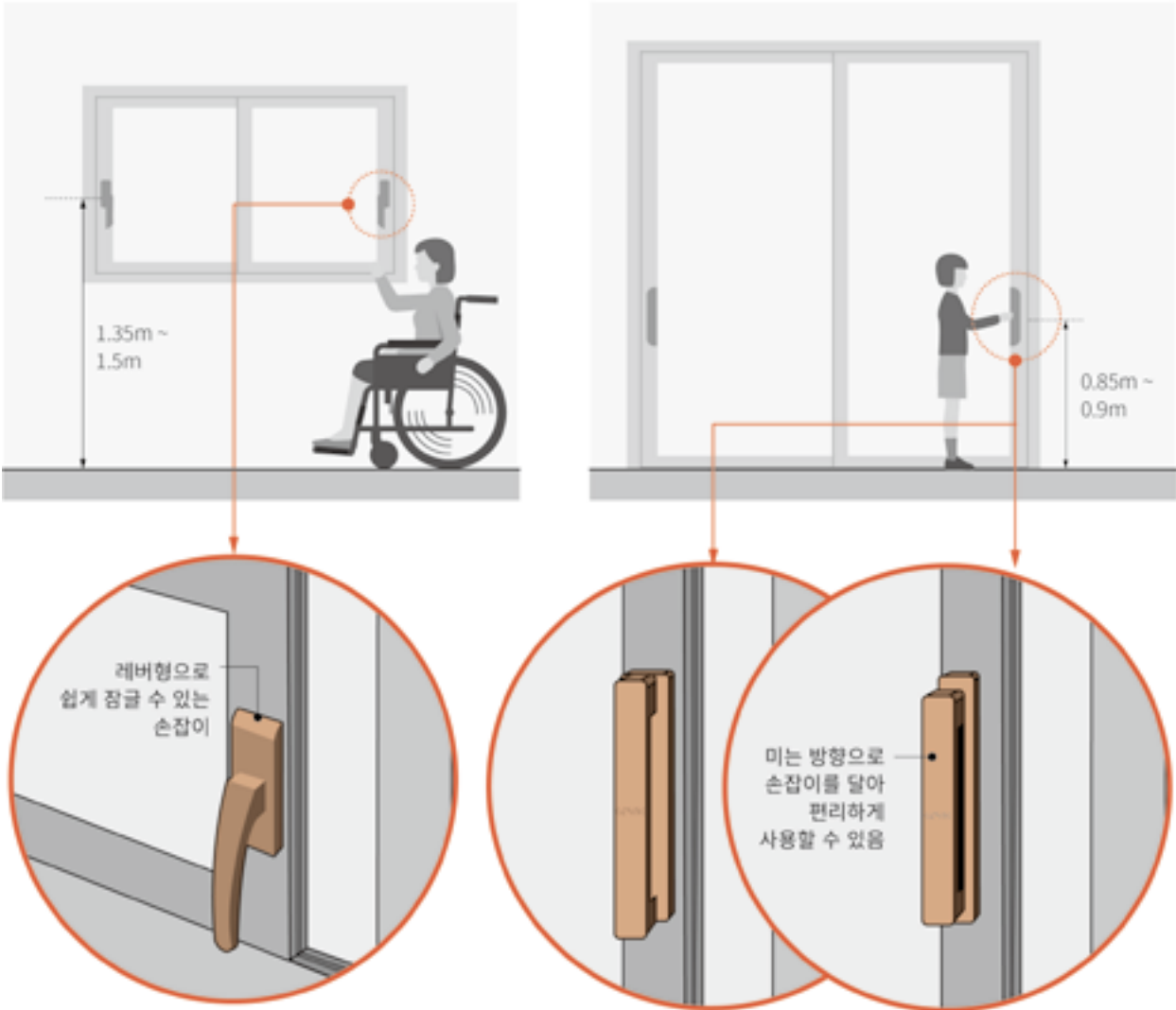
계획원칙

- 세대 내 방은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가구 및 창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이동통로와 활동공간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창호 설치

기본지침

- 창호와 창호의 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허약한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창호 손잡이는 누구나 조작이 쉽게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설치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 바형 등
 - 손잡이 설치 높이(전창): 0.85~0.9m
 - 손잡이 설치 높이(반창): 1.35~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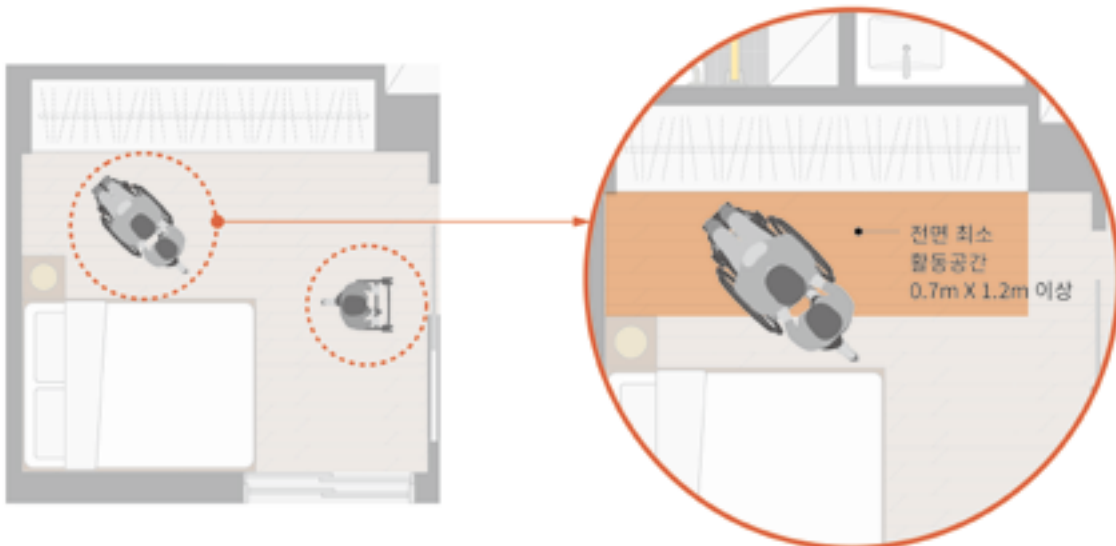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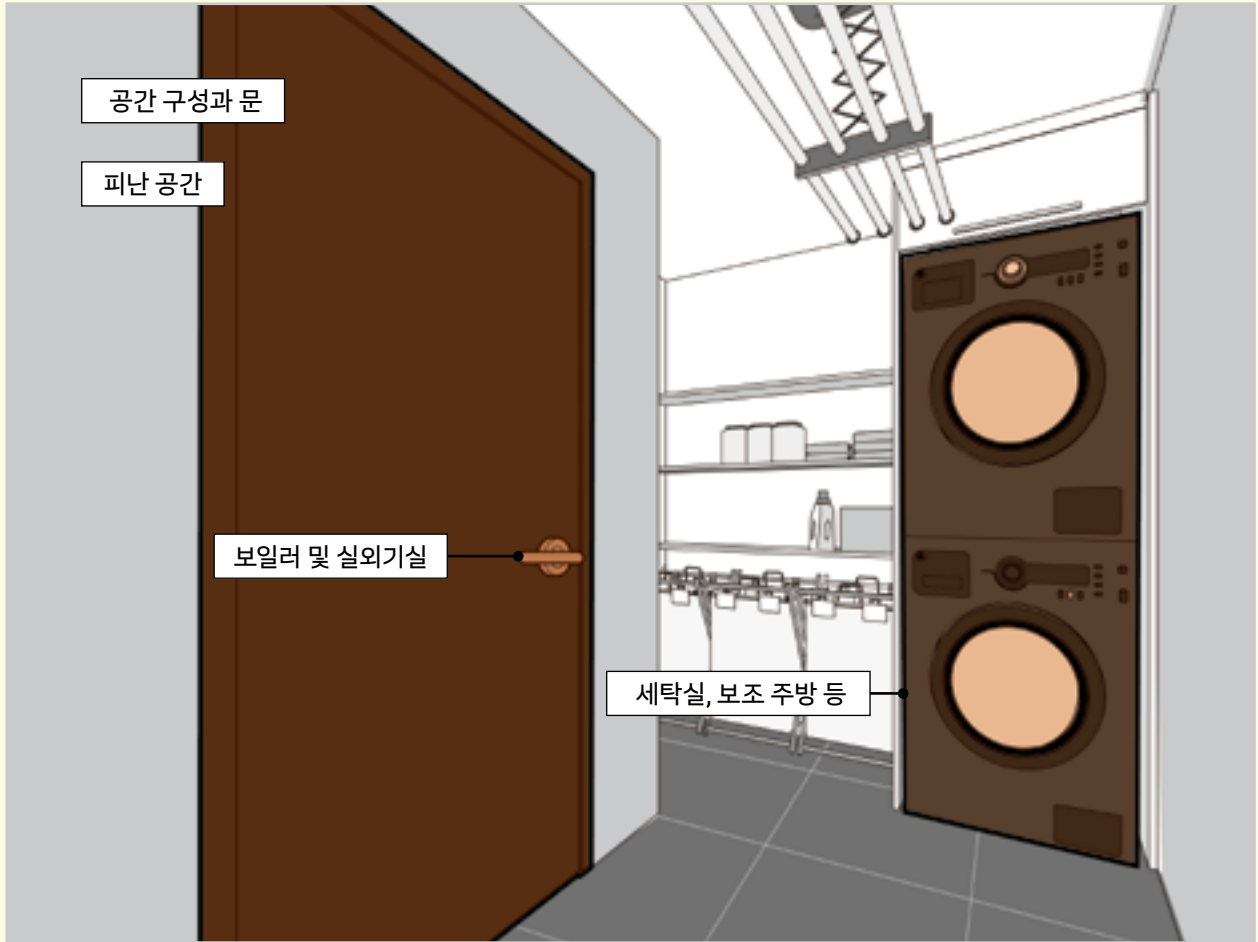
조명 제어와 수납가구

기본지침

- 취침 전 조명 조작, 수면 중 위생공간 이동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명 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 수납가구는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사람 등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이동이 어려운 거주자를 고려하여 누워서도 조명 조작이 가능한 장치나 서비스 제공을 권장한다.
 - 원격조작 장치: 조명 리모컨, 애플리케이션 연동 등
 - 붙박이장, 드레스룸, 수납장 등의 전면에는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의 조작과 작업을 위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전면 최소 활동공간: 0.7m × 1.2m
 - 키가 작은 거주자 등을 위해 옷걸이, 선반의 높이 조정이 가능한 수납장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 높이 1.2m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동형 상단봉, 시스템 옷장 등



(6) 다용도실 및 발코니 등



계획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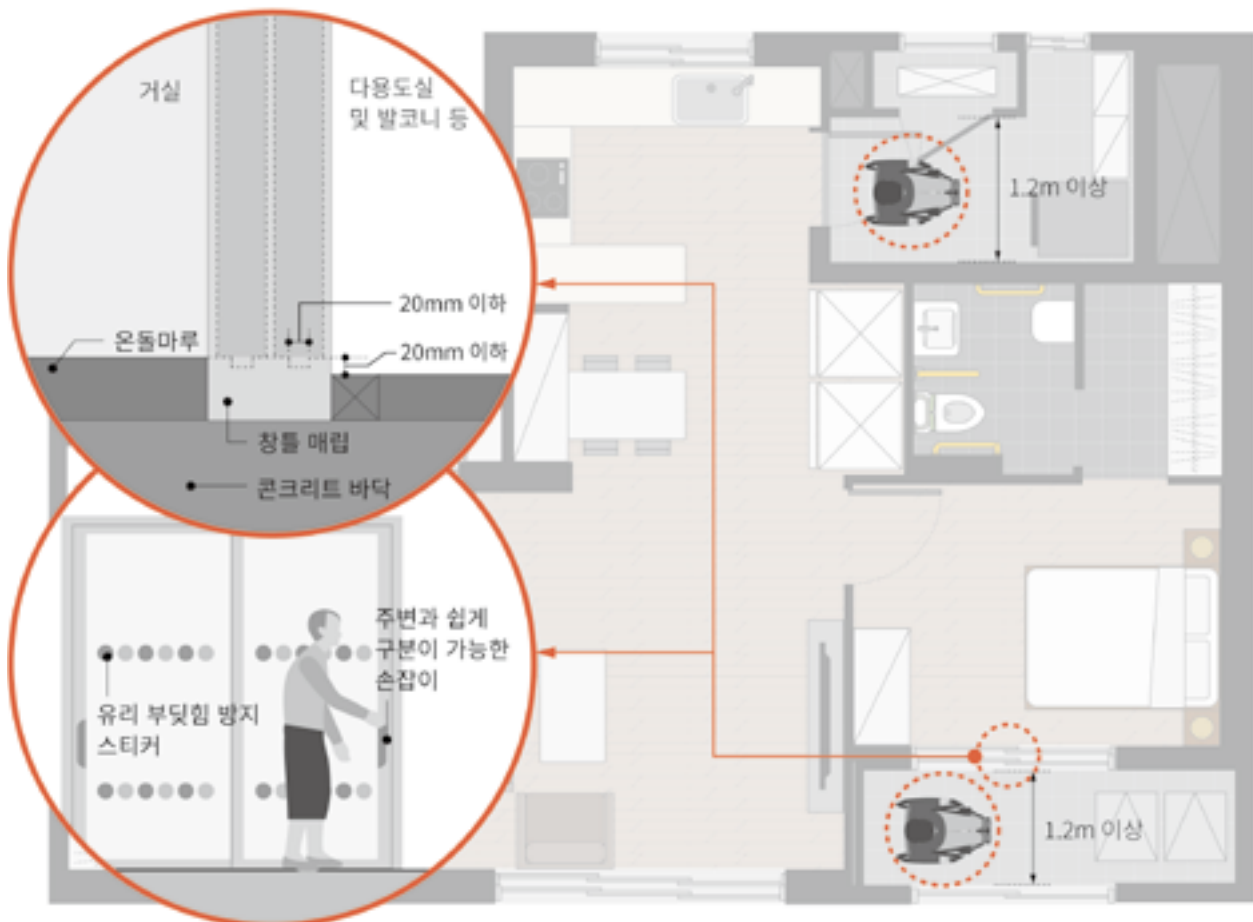
-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은 거주자의 외부 조망, 생활의 보조기능, 위급상황에서의 대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공간 구성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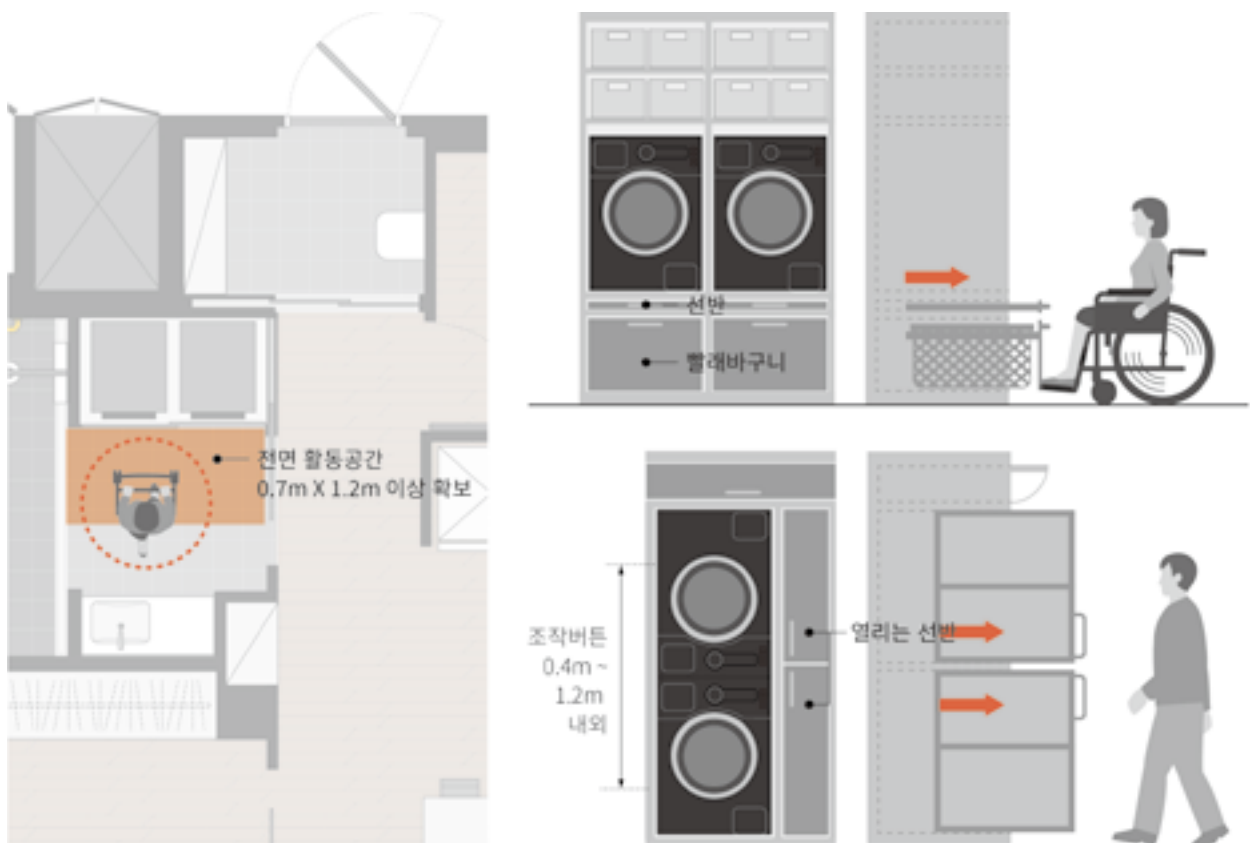
기본지침

-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의 창호와 내부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발코니 통로 폭은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보행보조기 이용자 활동공간: 1.2m 이상
-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를 고려한다.
 - 하부 단차: 20mm 이하
- 문 하부 레일 틈새는 지팡이, 수레바퀴 등이 빠지지 않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하부 틈새: 20mm 이하
- 창호는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으로 주변과 쉽게 구분 가능한 형태
 - 유리창호 부딪힘 방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세대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딪힘 방지 장치(시트부착 등)를 설치 권장



기본지침

- 세탁실과 보조 주방 등은 거주자 누구나 편리한 세탁, 건조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세탁기 조작과 세탁물 투입 등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을 위한 전면 활동공간: 0.7m × 1.2m 이상
 -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세탁물 투입구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세탁기 형태에 따라 바닥 높이 조절을 통한 투입구 적정 높이 확보 권장
 - 세탁물 투입 전후 임시 거치용 선반이나 수거함 등의 보조가구를 세탁기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보조가구 예시: 슬라이딩 선반, 세탁기 하부 서랍장 등
 - 건조대는 키가 작은 사람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상하 높이가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시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조작 가능하도록 높이 0.85m 내외의 설치 또는 휴대용 무선 조작설비 설치를 권장
- 수전과 스프레이건의 조작과 작동 시 적은 힘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지나치게 강한 수압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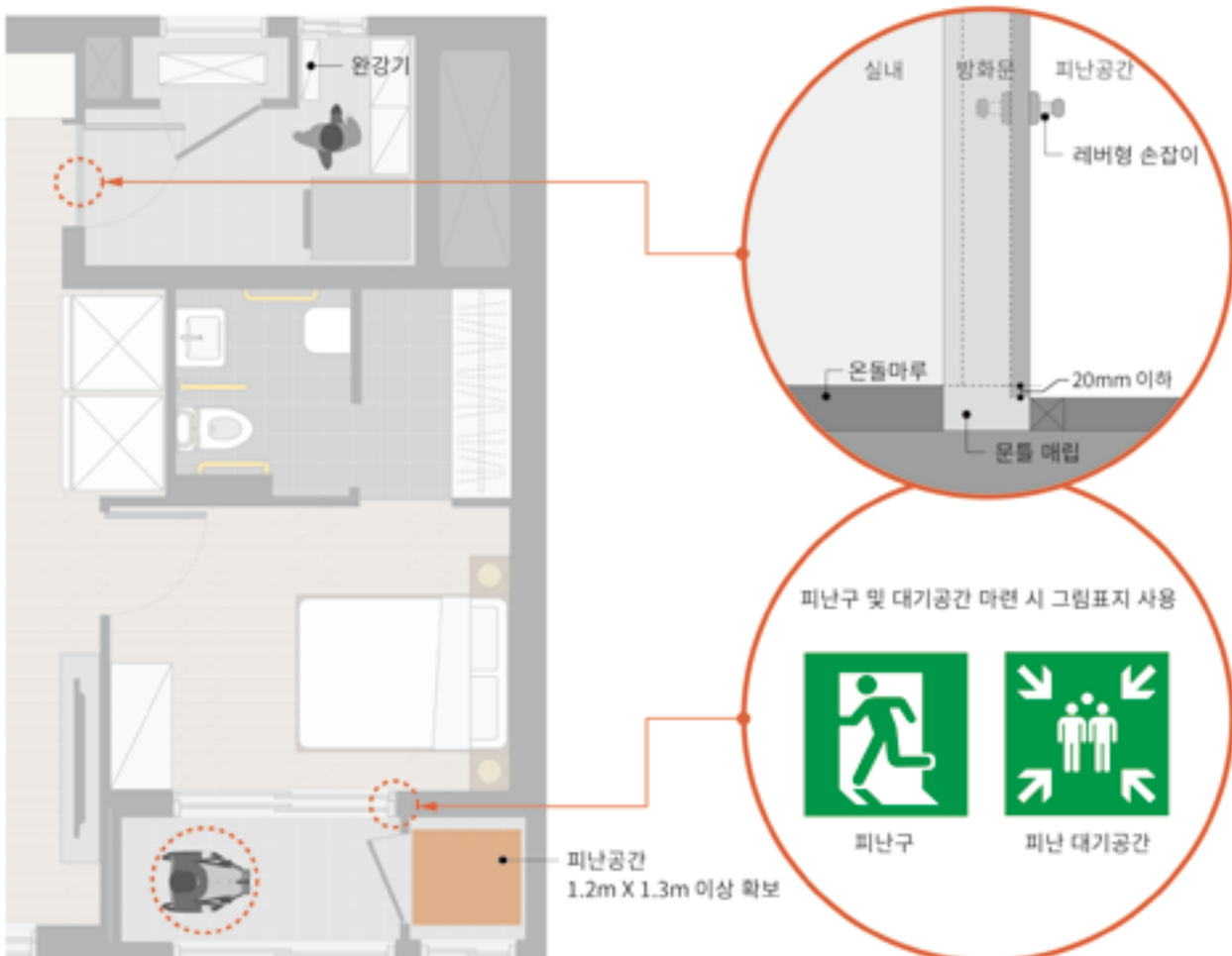


3

피난 공간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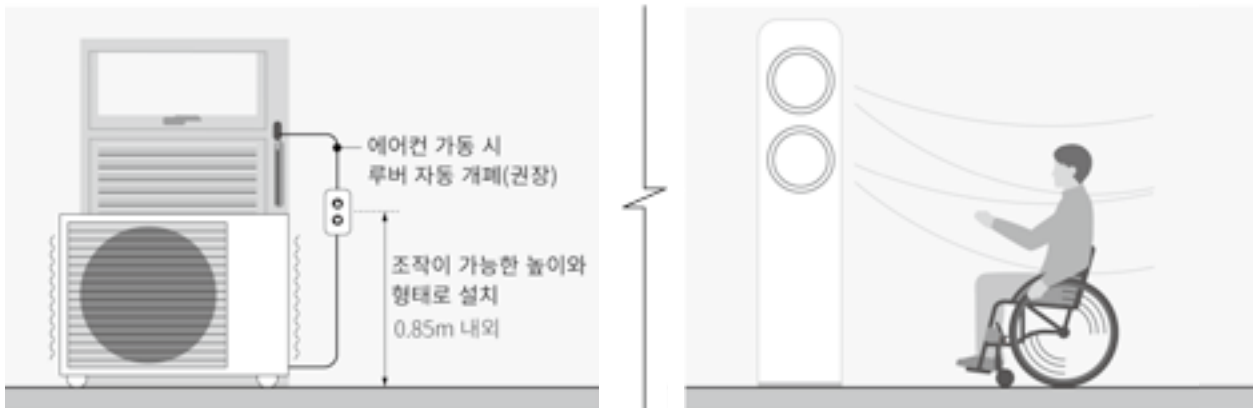
- 피난 공간 설치 시 내부 공간 등은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거주자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및 구호 대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피난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및 이용이 가능한 방화문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를 고려한다.
 - 단차 : 20mm 이하
- 악력이 약하거나,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의 설치를 권장한다.
 - 손잡이 형태: 레버형 등
- 피난 공간은 규모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를 권장한다.
 - 1.2m × 1.3m 이상
- 외국인, 문맹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으로 피난 통로를 표시하며, 암전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고려한다.



기본지침

- 보일러 및 실외기실의 각종 설비와 실외기실 외부 창은 거주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고려한다.
-
- 실외기실 창은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설치를 고려한다.
 - 가스 검침은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사람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원격식 계량기는 세대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형태로 설치, 직독식 계량기의 경우 높이 조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

실외기 창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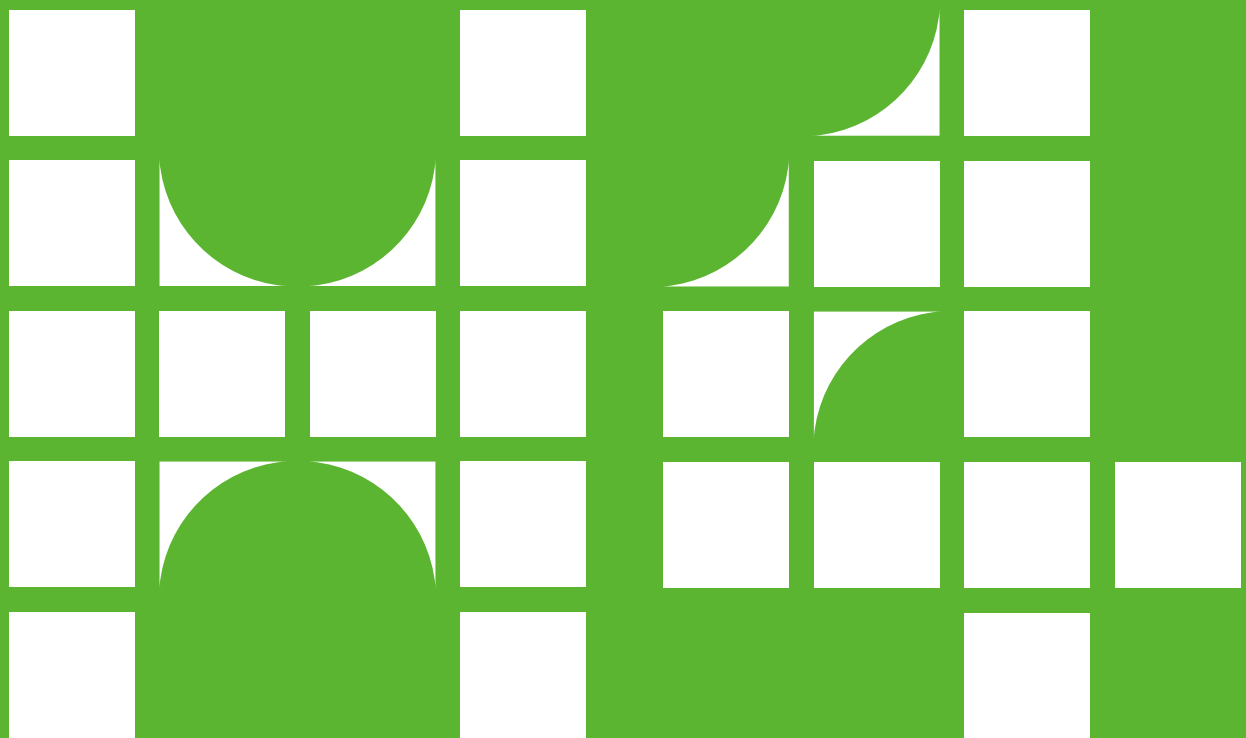


가스 검침





주거동 외 시설



(1) 공동체 지원시설	101
(2) 관리 지원시설	108



(1) 공동체 지원시설



계획원칙

- 주거동 외의 공간과 시설 등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시설 유형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각종 지원시설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배치, 규모, 동선과 공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입주민의 사생활 등이 보호되도록 적절한 관리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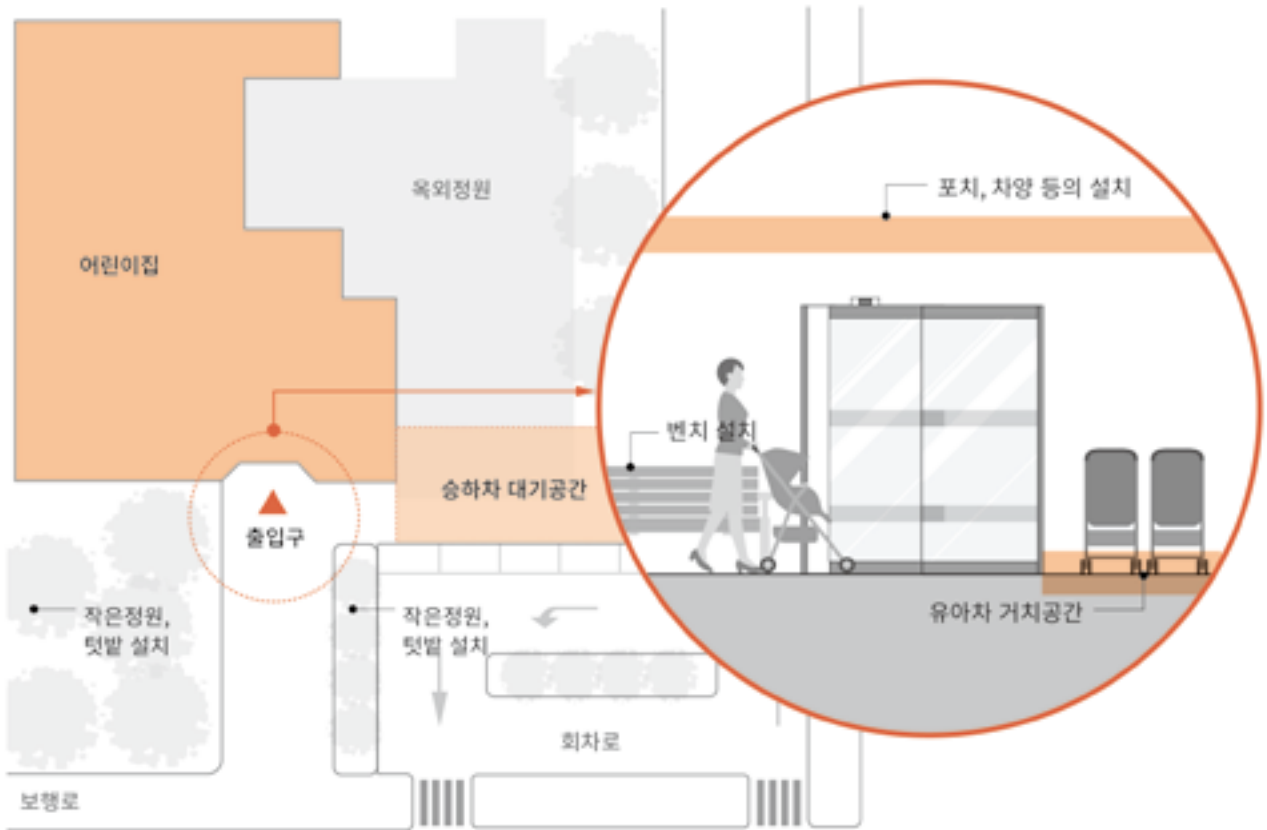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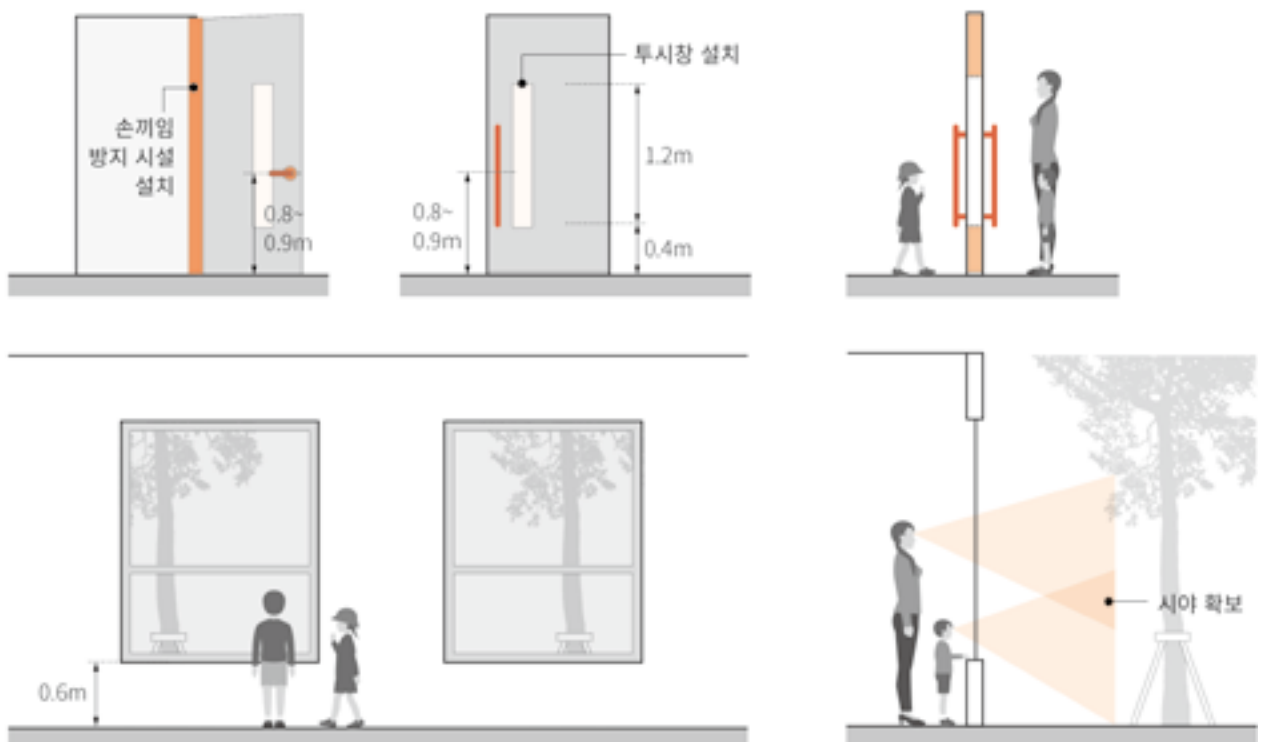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이를 위해 연령별 영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언어 발달과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보육교사 등의 보육지원이 원활하도록 공간과 설비를 계획한다.
-
- 어린이집의 출입구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차량과 이동동선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승하차 공간과 인접하여 배치를 권장한다.
 - 접근로는 유아차를 끌고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평탄하게 조성한다.
 - 출입구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유아차의 교행과 등하원시 보호자 대기를 고려한 여유로운 전면 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구 인근에는 영유아 정서 발달을 위한 작은 정원, 텃밭, 놀이공간 등 설치 권장
 - 출입구 전면 포치, 차양 등의 설치
 - 출입구 인근 유아차 거치공간 설치를 권장
 - 현관에는 영유아가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고, 외부활동 후 흙모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에어건과 손씻기를 위한 다양한 높이의 수전을 설치한다.
 - 현관은 보호자와 어린이가 동시 출입이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 사용
 - 영유아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출입문,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을 설치한다.
 - 아동의 시야 확보를 위해 문은 아래에서 위로 긴 투시창을 설치
 - 아동의 사용이 어렵지 않고 손끼임 방지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문 설치
 - 복도, 계단은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
 - 내부 이동공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며, 시야가 차단되지 않고 방향, 구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화장실은 위생관리가 쉬운 마감재와 설비를 구비
 - 교사의 원활한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저귀 교환공간, 수유공간 등을 설치하며, 영유아 화장실은 영유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교사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작업과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회의실, 상담실, 교사실, 교사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조리실, 세탁실, 근로자용 세면시설과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 ▣ 기타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형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어린이집’을 참고한다.



출입구의 구조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참고



출입문, 창문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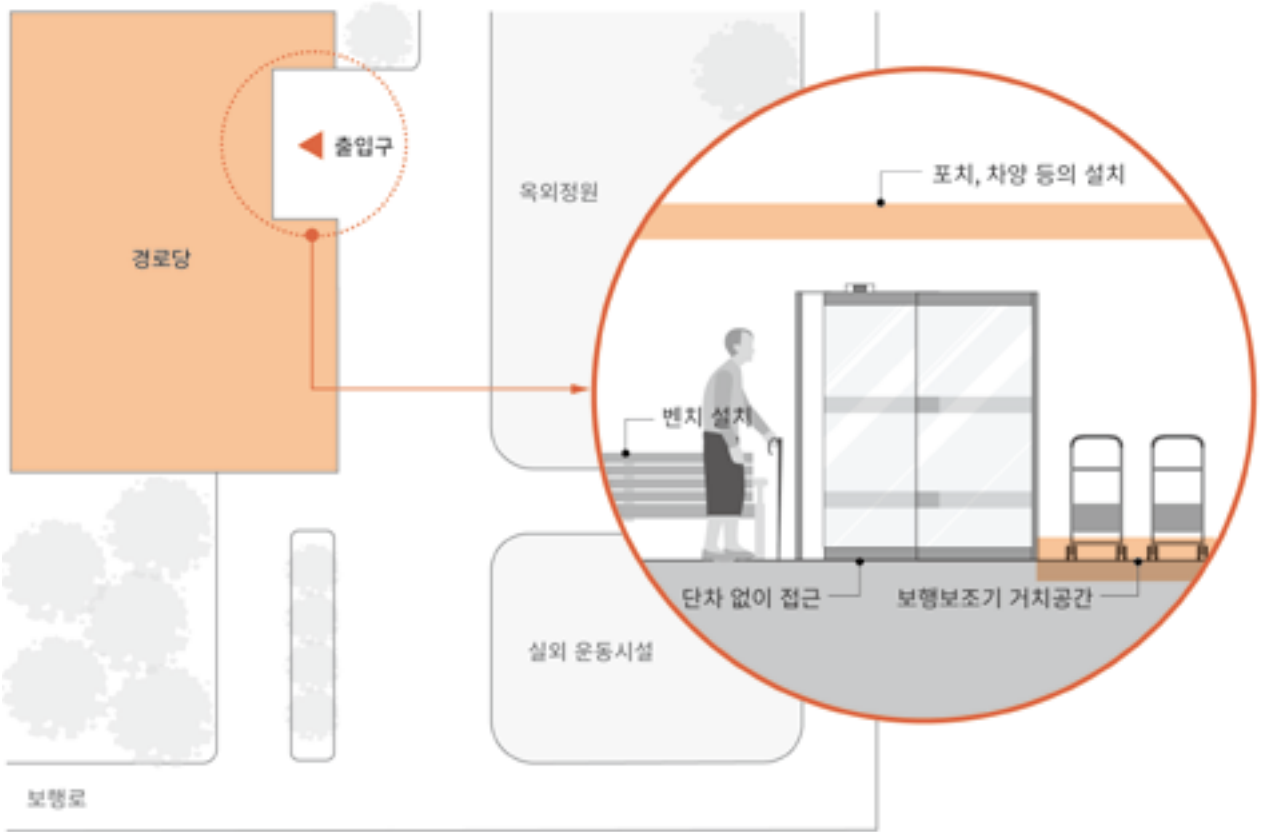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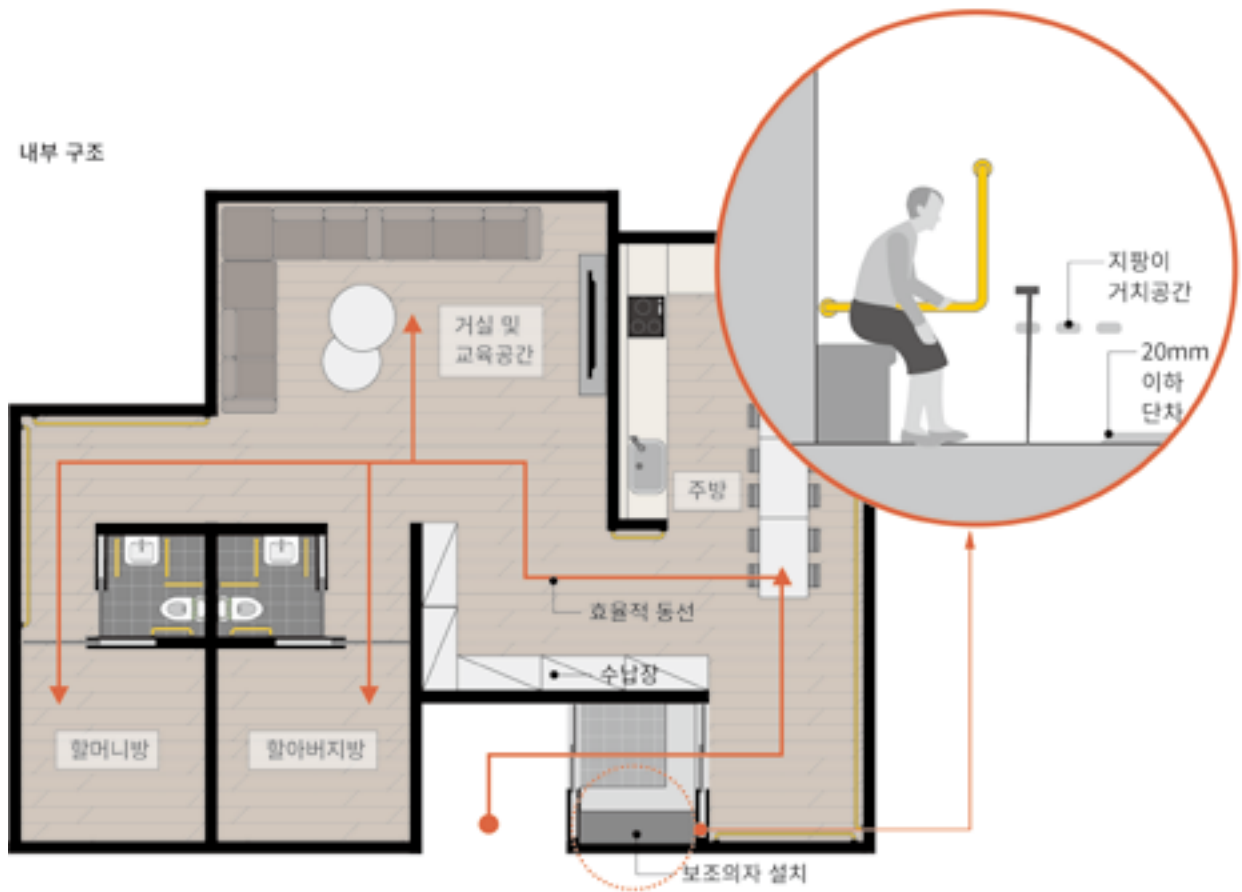
- 경로당은 노인들의 이동 및 인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과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아울러, 다함께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계획한다.
-
- 경로당은 커뮤니티 활성화와 옥외 활동이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어린이집, 광장, 실버운동구, 화단이나 텃밭 등과 인접하게 배치
 - 접근로는 지팡이 사용자, 보행기 사용자 등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평탄하게 조성한다.
 - 출입구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출입문 전후 여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한다.
 - 강한 햇빛, 우천 시 등을 대비하여 출입구 상부에는 포치, 차양 등을 설치
 - 출입구 인근 보행보조기 거치공간 마련
 - 주출입문은 투시문이나 자동문 설치
 - 현관에는 신발을 갈아신는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의자 등을 설치하고, 거실로의 진입에 어려움 없도록 내부 공간을 조성한다.
 - 내부 출입문과 복도 등은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형태, 유효폭, 바닥 재질, 보행장애물 제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내부 출입문 손잡이는 푸시풀형, 레버형 등 손에 힘이 없는 노인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 제품을 사용하고, 손끼임방지 설비를 설치
 - 통로, 복도 등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시인성 확보 및 충돌방지시설 설치
 - 내부 거실, 주방은 방문자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이용 동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 거실은 식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하되, 외부 공간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 장 본 짐 등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현관 인근에 주방 설치 권장
 - 편하게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조성하며, 프라이버시 등을 위해 방별로 개별 화장실을 설치한다.
 -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부 공간(색상, 조명 활용)으로 조성하며, 가구나 설비는 앉고 일어서기 어려운 고령자를 배려해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제품 등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 ▣ 기타 경로당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경로당'을 참고한다.



출입구의 구조



내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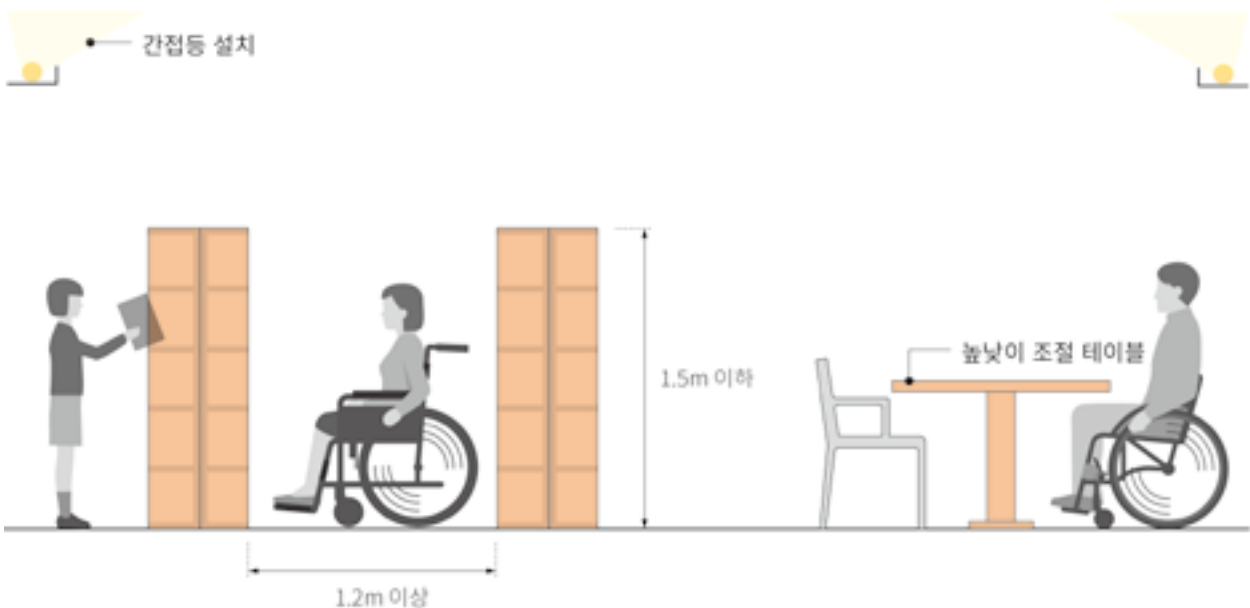


3

작은 도서관, 도서관

기본지침

- 작은 도서관 및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내부 이용 편의성을 확보한다.
 - 작은 도서관의 서가와 열람실 등은 키가 작은 사람,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통로 및 활동공간과 이용 가능한 책장으로 설치하며, 도서 및 자료의 편안하고 편리한 열람을 위한 조도, 음향, 책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 접근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평탄하게 조성한다.
 - 출입구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는 여유로운 전면 공간을 확보한다.
 - 강한 햇빛, 우천 시 등을 대비하여 출입구 상부에는 포치, 차양 등을 설치
 - 출입구 인근 유아차, 보행보조기 거치공간 마련
 - 서가 사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동 및 서가 이용에 어려움 없는 유효폭으로 확보하며, 책장 등은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이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통로 유효폭: 1.2m 이상
 - 책장 높이: 1.5m 이하
 - 다양한 형태의 의자 설치 권장(다양한 높이의 의자, 등받이 및 손잡이 등의 유무, 쿠션 재질 또는 딱딱한 재질 등)
 - 휠체어 사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책상 설치 권장(하부공간 확보된 형태, 높낮이 조절 책상 등)
 - 조명은 눈부심이나 심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간접등을 설치한다.
 - 바닥재는 흡음 성능이 좋고, 울림이 적은 재질 설치를 권장한다.
 - 돋보기 등 필요한 보조 설비를 구비한다.
 - ▣ 접근 및 내부 공간, 위생공간, 안내시설 등은 '공공건축물' 기준을 참고한다.



4

게스트 하우스

기본지침

- 게스트 하우스 설치 시 장애가 있는 방문자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고, 시설 이용을 위한 편리한 예약체계를 마련한다.

-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설치한다.

- 온라인,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주민에게 이용 안내 등을 제공한다.

- ▣ 접근 및 내부 공간, 위생공간, 안내시설 등은 '공공건축물' 기준과 단위세대 현관, 침실 및 욕실 기준을 참고한다.



5

그 외 공동체 지원시설

기본지침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다양한 공동체 지원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체 지원시설은 다수의 이용을 고려하되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치 위치, 접근 동선, 규모, 공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공간 및 시설 이용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고려한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지역돌봄시설(어린이, 노인 등), 공유시설(공유주방 등),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의 공동체 지원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 공동체 지원시설은 외부 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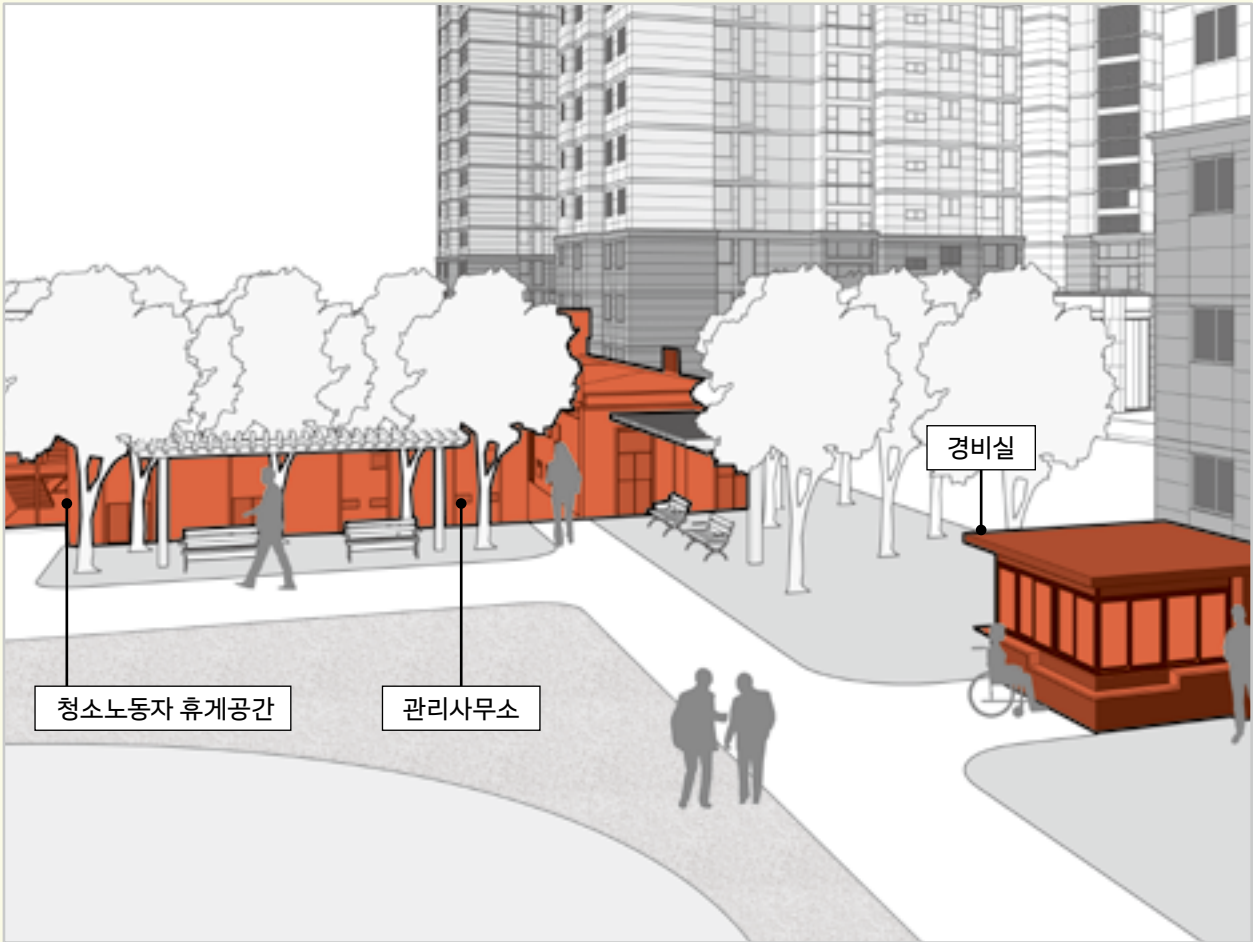
-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과 인접 배치하여 유지 관리 및 안내가 용이하도록 한다.

- 입주민 주차공간과 분리된 별도 주차공간과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사업지 규모를 고려해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차장 내 별도 지상 연결 및 수직이동시설 설치 등 주거동과 분리된 보행자 동선 확보 및 이용 안내시설을 설치를 고려한다.

- ▣ 접근 및 내부 공간, 위생공간, 안내시설 등은 '공공건축물' 기준을 참고한다.



(2) 관리 지원시설



계획원칙

- 관리 지원시설은 단지 내 공간 및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공간 이용을 위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 자연감시, CCTV 등을 활용하여 단지 내외부 경계와 주요 출입구, 각 주동 및 공유시설 출입구 등의 감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시설 규모, 형태와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본지침

- 입주민의 방문, 안내 및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내부 공간 이용성을 확보하며, 단지 내 근로자의 편리한 업무 및 쾌적한 휴식을 위한 업무, 창고 등의 공간과 휴식 및 위생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 인적서비스 등의 지원이 쉽도록 공동체 지원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규모, 형태, 설비를 계획하되, 입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접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 대기공간 등을 설치한다.
 - 접수창구, 주민상담실 등 공동주택 내 민원 접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공간을 조성
 - 접수창구는 앉아서 대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내부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
 - 숙직실, 탕비실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한다.
 - 통신실, 종합방재실, 방범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한다.
 - 비상 구급약 비치,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호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을 고려한다.
 - ▣ 접근 및 내부공간, 위생공간, 안내시설 등은 '공공건축물' 기준을 참고한다.



2

경비실

기본지침

- 단지 내외부 주요 출입구, 단지 내부 주요 시설의 자연감시와 적절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경비실의 설치를 고려한다.
 - 경비실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야 확보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입주민 및 방문자와의 편리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창호 개구부를 계획한다.
-
- 단지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경비실은 단지 내외부 자연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불가피하게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 최소 2면 이상의 외부 창호 등 자연 감시 기능 확보
 - 3면 이상의 외부 창호 설치 등 자연 감시 기능 확보 권장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고려한 적정 높이의 창구를 설치한다.
 - 경비실 내부에는 근로자를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충분한 규모의 휴게실과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화장실을 설치한다.



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기본지침

- 수레, 각종 짐 등을 들고 이용하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환경 내 이동동선을 확보한다.
-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고려한 휴식 및 위생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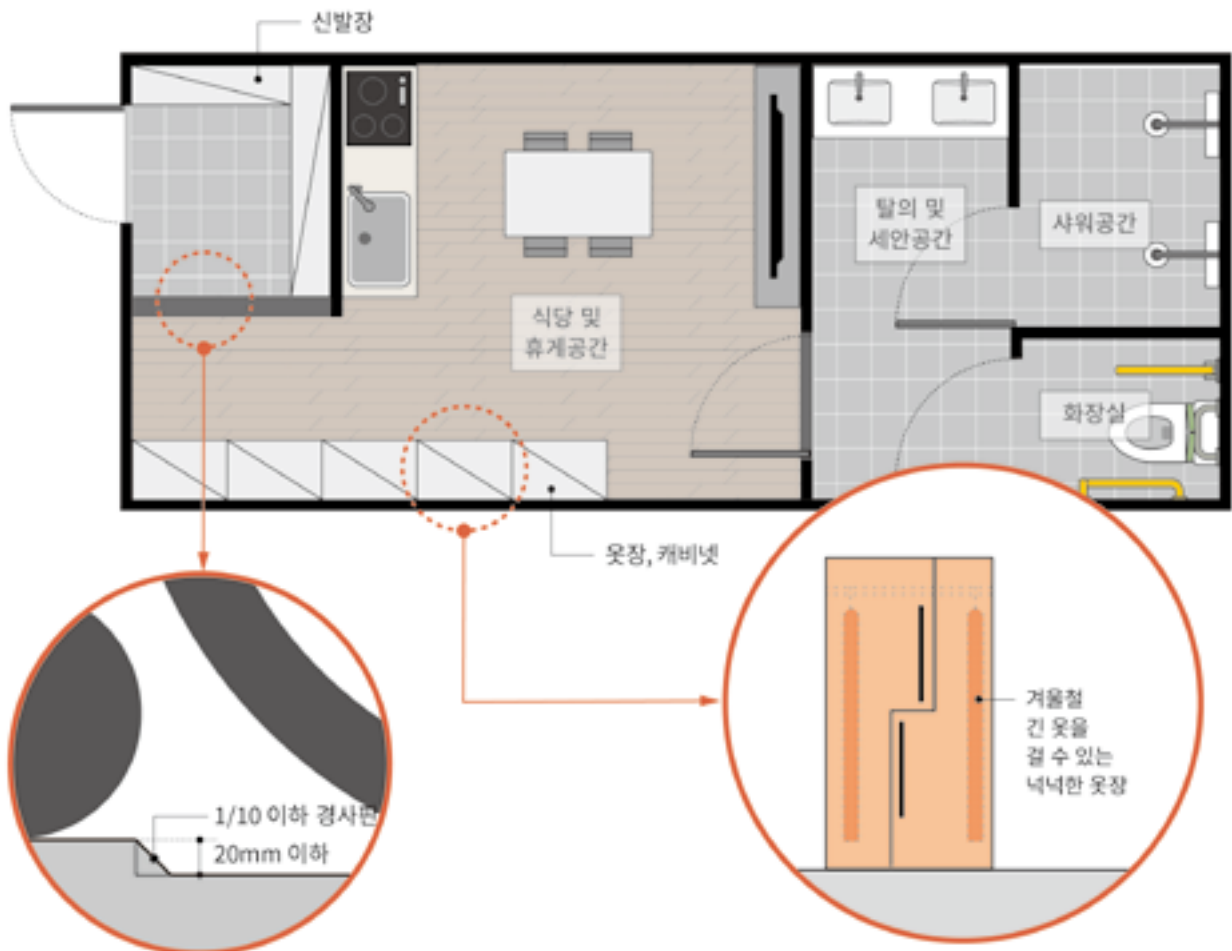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청소노동자를 위해 휴게공간, 샤워/탈의 공간, 식사공간 등을 마련하여 배려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관리사무소 등과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휴게가 가능하도록 권장

- ▣ 근로자 배려공간(휴게공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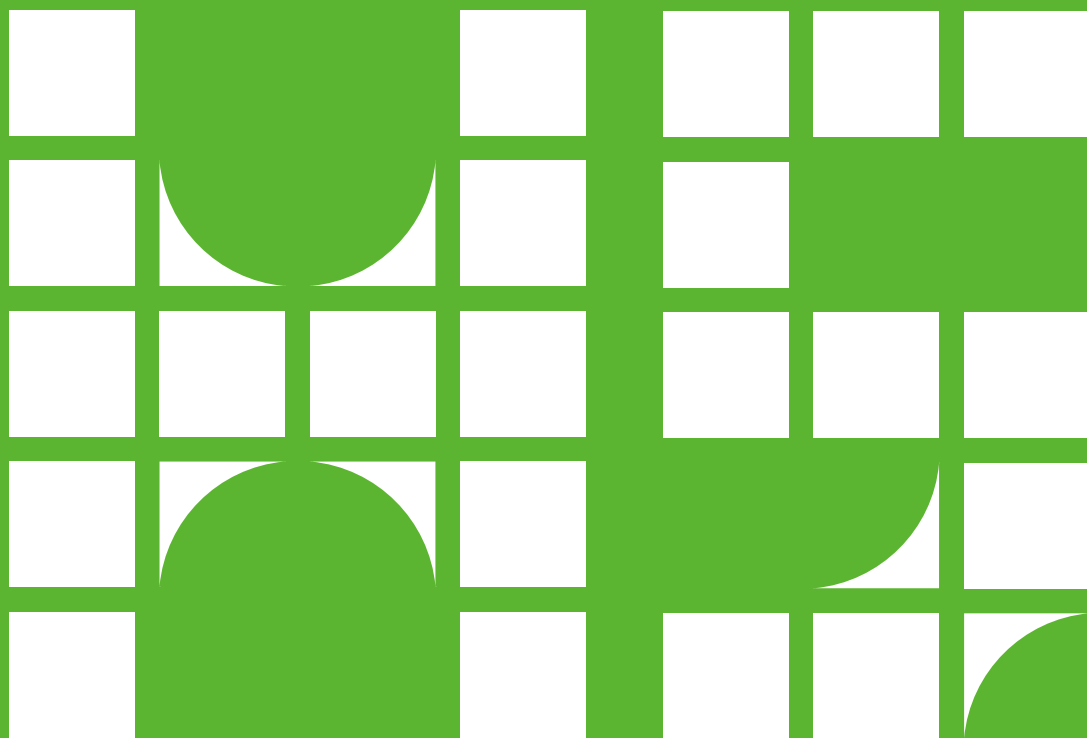


5인 기준 휴게공간 예시 "사업장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표준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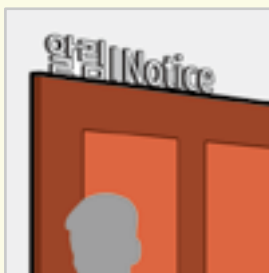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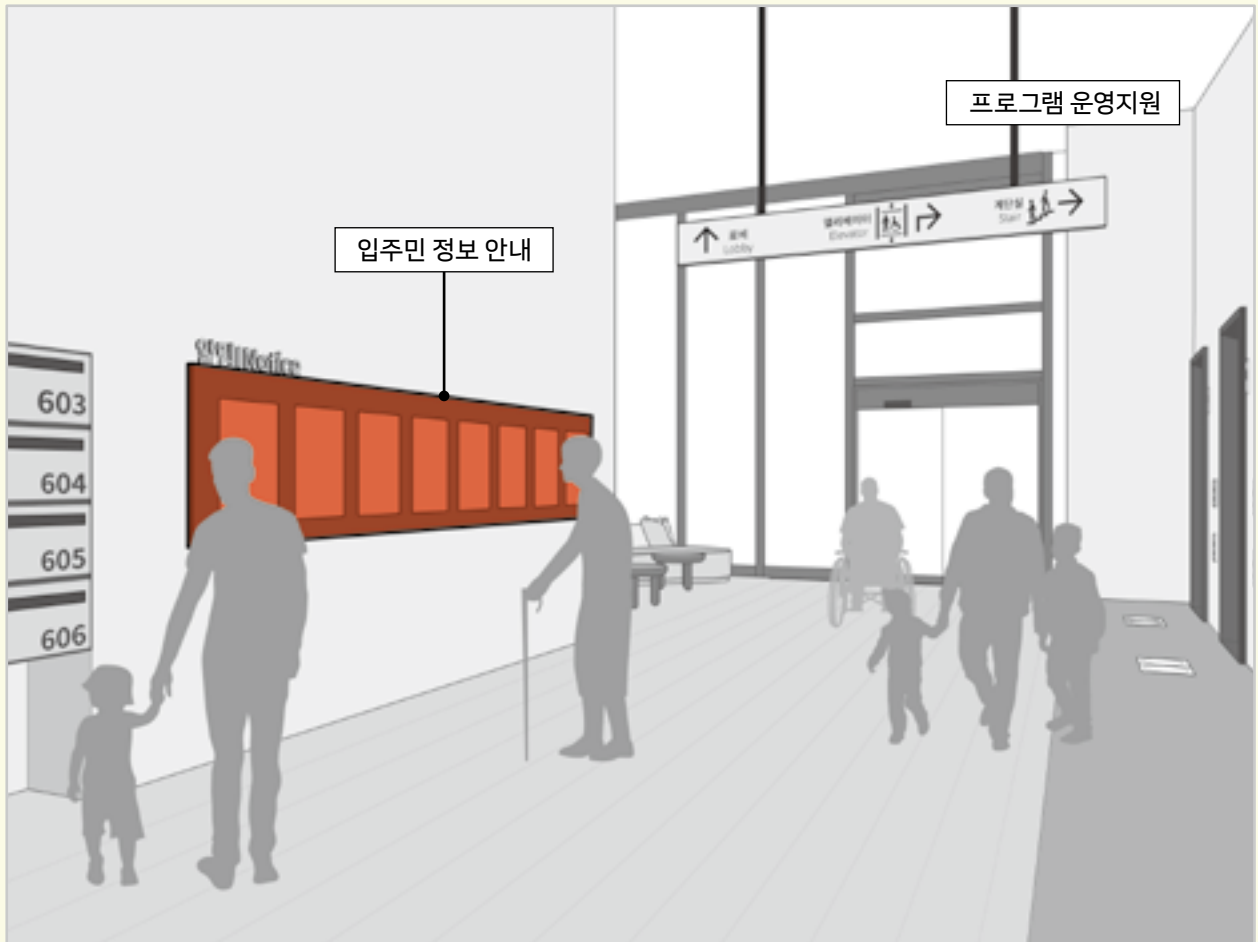
운영 및 유지관리



(1) 공동체 활성화 지원	115
(2) 유지관리 지원	117



(1)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원칙

- 입주민의 외부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주거환경 외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고려한다.
- 공간 및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와 입주민 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및 시설 이용 안내는 누구나 쉽게 이해 및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1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본지침

- 입주민의 건강 및 활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공간 및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 주민센터, 구청 등과 협력하여 입주민의 건강, 활력 증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계획할 수 있다.
 - 쿠킹클래스, 텃밭 가꾸기, 북토크,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 등
-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 공유주방, 공동 사용 가능한 정원용품 구비 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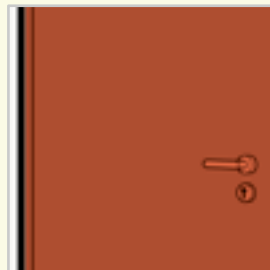
입주민 정보 안내

기본지침

- 단지 내 전달이 필요한 주요 정보는 입주민 누구나 쉽게 확인, 인지 및 이해가 가능하도록 큰 글씨, 그림문자, 주목성 있는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제공을 고려하고, 세대 내외부 방송 안내는 누구나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속도, 음량, 톤 등을 고려하여 제공을 권장한다.
- 입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안내판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설치와 관리를 권장한다.
 - 게시판/안내판은 A3로 규격화, 큰 안내글자, 색약자를 고려한 배색
 -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일러스트 사용 지양
- 세대 방송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속도, 톤 등을 고르게 제공하며, 2회 이상 방송하도록 하고 방송 시간은 주민들이 집에 많이 머무는 시간대로 선정을 고려한다.



(2) 유지관리 지원



계획원칙

- 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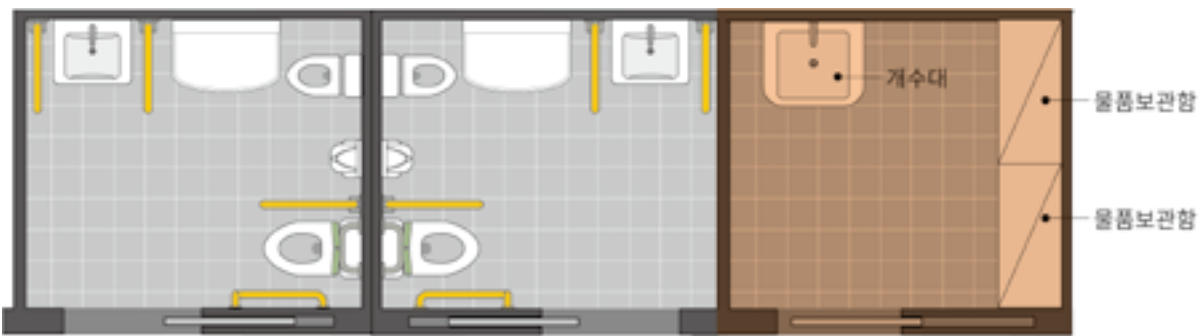


1

공용창고 마련

기본지침

- 공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창고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 빈도가 낮거나 특정 대상을 위한 공간의 창고화 방지를 고려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의 창고화 방지를 위해 청소 구역별 비품 정리 및 창고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2

청소, 소독 등

기본지침

- 깨끗한 단지 환경 유지 및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내역을 공개한다.
- 공간별 청소, 소독 주기를 설정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공간별 위생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점검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를 권장한다.
- 가지치기 등 계절별 수목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병충해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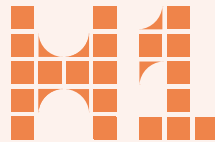
부록

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체크리스트



공용공간 분류			표기방법		
필수		권장	○ 적용	× 미적용	△ 부분 적용
단위세대 분류					
UD세대	▣ 주거약자세대	▨ 중증장애인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세대는 UD세대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 요소까지 충족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세대는 주거약자세대와 UD세대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 요소까지 충족하여야 함 					

옥외공간



13

(1) 외부 접점공간

1	공지 및 단지 경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보행안전공간의 연속성 확보	17		
	공지에 설치되는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휴게의자, 퍼걸러를 설치	17		
	휴게공간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	17		
	휴게공간 내 야간에 얼굴인식이 가능한 적절한 조도 확보	17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의자는 전체 중 1/2이상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제품으로 설치	17	권장	
	담장은 단지 내외부 보행활성화 등을 고려하되, 외부인 침입차단과 자연감시를 통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 설치 권장	16	권장	
	울타리, 담장 등을 경계로 주거공간 경계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16	권장	



2	단지출입구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시설물(상징물, 문주, 조경수 등)을 설치하거나, 구분 가능한 바닥마감재(색상, 재질 등)를 통해 인지성과 영역성 확보를 권장함(단, 지나친 경계 구분으로 단절감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거대하거나 이질적 문주 지양)	18	권장	
	주거단지 명칭 또는 주소 안내 표시는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	18		
	안전한 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활성화를 위해 경비실, CCTV 등의 감시 시설 설치	19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개선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적절한 조도 확보 (예. 문주 하부, 산책로, 경비실 등 인근에 설치)	19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구분하여 계획	19		
	보행로는 단지 내부까지 안전하게 연결하고, 외부 보도와의 점점에서 급격한 높이차이로 인한 경사나 횡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19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0.75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높이차이 극복을 위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계단 및 경사로 등 수직이동시설 설치	19		
	차량과 보행자의 교행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 - 물고임 방지를 위해 경계부에 배수설비 설치 - 경계 및 대기공간에는 이질재, 경고블럭 등 주의·경고시설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	21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시 1대 이상의 정차된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	21		
	주출입구 인근에는 승하차 공간 및 회차 공간 조성을 권장하고 승하차 공간 및 회차 공간은 주차 진입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함	21	권장	
	단지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동선을 짧게 하여 보차 교행구간 최소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	21		
	부출입구는 보도에서 수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지형상의 이유로 계단,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도록 설치	22		
	부출입구의 출입문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설치 (예. 조작설비의 위치, 문의 형태와 규모, 보안키 등)	22		
	방문객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 (예. 차량번호인식 설비, 카메라가 내장된 관리자 통화/호출 설비 등)	21	권장	



(2) 단지 내 이동공간

1	보행로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24		
	거주자 및 외부인의 단지 내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규모와 형태를 계획할 수 있음(예. 광장형, 공원형 등)	24	권장	
	단지 내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차도방향으로 설치하고, 보행공간과 경고 재질 등으로 구분되도록 하며 주동 혹은 자전거 보관대까지 연속 설치	25		
	자전거도로와 보도공간의 교행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주의·경고 표지 설치	25		
	보행자 전용공간으로만 계획하는 경우 자전거를 끌고 보행할 수 있는 경고 안내 설치	25		
	단지 경계, 주요 건물 및 공간, 보행로 및 안내시설 등에 야간 이용시의 안전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	26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 설치 (예: 보안등은 30m 이내마다 설치)	26		
	조명 설치 시 세대 내부 및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접등의 형태로 설치	26		
	안심 공간 확보를 위한 시야 확보, CCTV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시설 설치	26		
	CCTV, 안내시설 등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	26		
	어린이놀이터 등 비상벨 설치 시 인지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상시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실과 연결되도록 함	26		

2	단지 내 횡단보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단지 내 횡단보도 설치 시 누구나 이동이 편리하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7		
	대기공간은 대기자가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차도 및 보행안전구역과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설치	27		
	점자블록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주의 경고 및 안전시설 설치	27		
	대기 및 횡단구간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색을 달리하거나 주변보다 높은 조도로 설치	27		



3	외부 수직이동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단지 내 보행로는 수평 보행로 또는 완만한 기울기의 보행로가 연속되도록 조성해야 하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승강기 등 수직이동시설을 설치 검토	28		
	야간 이용 시의 안전을 고려한 시인성 확보 (예. 계단코, 조도확보, 수평차 재질차이 등)	28		
	외부 수직이동시설은 겨울철 바닥 결빙, 우천 시 물고임, 강한 일조에 따른 사용 불편을 고려하여 설치 (예. 차양, 배수설비, 바닥열선, 미끄럼방지 등)	28		
	계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치 (예. 유효폭 1.2m 이상, 휴식참 1.5m 이상, 수직안전높이 2.1m 이상 확보하며 디딤판은 0.28m 이상, 철편 높이 0.18m 이하)	28		
	계단의 재질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며 적절한 경고시설을 설치	28		
	경사로는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8이하, 횡단구배 1/50이하 확보)	28		
	계단, 경사로 등으로 높이차이 극복이 어려울 경우 승강기 혹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권장	28	권장	
	승강기 혹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유도·안내시설 설치	28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손잡이는 차갑지 않은 재질로 하되, 외기에 의한 변형이 최소화되는 재질로 설치 권장	28	권장	
	승강기 내·외부에는 노인·어린이 등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대기 의자 설치 권장	28	권장	

(3) 차량공간

1	주차장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규정 준수 및 주거동 출입구별 1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 폭 3.5m, 길이 5.0m이상, 휠체어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31		
	가족주차구역은 주동 출입구마다 1면 이상 설치 (폭 3.5m, 길이 5.0m이상, 유아차 활동공간 1.2m 이상에 색상 등으로 노면 표시)	31		
	옥내 주차장 주동 입구 인근에는 장애인 콜택시 탑승, 택배차량, 배달 오토바이의 임시 주차나 장본 짐 등을 내려놓는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	31	권장	

임시 승하차 공간 설치 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대기가 가능하도록 임시 승하차 공간 인근에 벤치를 설치하고 시인성 높은 안내사인 설치	31	권장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며, 충전기는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접근성 확보 (폭 3.0m, 길이 5.0m 이상, 휠체어, 유아차 활동공간 확보)	31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 및 타 시설물과 중첩되지 않는 곳에 계획	31		
1.2m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를 권장하며 보행안전통로는 주거동과 인접한 면 (주거동과 주차공간 사이 공간 활용)에 설치함	33	권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시 차로와 보행자의 교행을 최소화 하며 차로와 보행안전통로 교행 구간에는 횡단보도를 표시하고 교행구간 전후면에 보행자 주의, 서행 유도 표시	33		
보행안전통로 설치 시 주차구역과 단차, 기울기 없이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	33		
옥외주차장에는 수목,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	34	권장	
옥내주차장은 택배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1개 층 이상 2.7m이상의 천정고 확보	34		
옥내주차장에는 빗물에 의한 보행중 미끄럼사고 방지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물고임 방지시설 설치 (예. 출입구 배수시설, 진입부 차수판(벽) 설치 등)	34		
주차장은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구역, 동, 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 수립	34		
안전색채를 제외하고, 인지 및 구분하기 쉬운 안내표지 및 색상 사용	34		
주차장 내 길, 구역안내와 비상용 기능이 부여된 기둥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설치 (예. 비상: 노랑, 소화기: 빨강)	35		
주차장 설치 시 색채,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여 구역, 동, 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도·안내체계 수립 (예. 옥내주차장의 출입구 전면 색상 구분, 출입구 앞 밝은 조명, 눈에 띄는 안내사인(바닥, 벽, 천장, 기둥 등 활용))	34		
옥내주차장은 선큰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와 자연 채광 확보 권장	34	권장	
주차면수 300대 이상의 옥내주차장에는 빈 주차면을 찾기 쉽도록 주차유도 시스템 설치	34	권장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으로 설치 (예. 「주차장법」에 따라 25m이내마다 높이 1.2m 내외로 설치)	35		
CCTV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35		



CCTV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 권장	35	권장	
주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도 확보 (옥외주차장 : 주차구획 최소 10lx이상, 주차장출입구 최소 300lx이상, 보행통로 최소 50lx이상 / 옥내주차장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10lx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300lx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35		

2	단지 내 차량동선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비상차량동선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와 비상차로 진입부 교차구간에 횡경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36		
	불법 주정차 및 진입 방지용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1.5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속하게 탈부착/제거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	36		
	소방차 진입구간은 바닥 및 입식 표지판 등으로 시인성 높게 표시	36		
	이삿짐 운반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며, 시간제로 차량을 통제하고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과 안내사인 등을 활용 권장	36	권장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단지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며 안전상 이동 동선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 배치	37	권장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필요 시 인적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	37	권장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경비실에서 자연감시 또는 CCTV를 통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37	권장	
	통학차량의 탑승형태를 고려하여 연결동선(턱낮춤, 경사로 등) 및 여유공간 확보	37	권장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의 대기공간은 외기 환경에서도 안락하고 편안한 대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예. 지붕, 휴게벤치, 박스형 대기공간 등)	37	권장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에는 이용에 대한 시인성 높은 안내시설 설치	37	권장	



(4) 안내 및 기타공간

1	안내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인근 등 인적안내가 가능한 공간에 주요시설 및 위치, 방향이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안내시설 설치	39		
	종합안내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	39		
	색약자, 시력저하자 등도 인지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	39		
	빛 반사 및 빛 번짐 최소화될 수 있는 재질 사용	39		
	내식성, 내열성 등 외기 환경에 따른 변형과 훼손이 최소화되는 재질 사용	39		
	접촉식 안내판의 경우 금속을 사용하지 않으며, 차양 등을 통해 표면 가열이 최소화 되도록 함	39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혹은 종합안내시설 내 점자표기 등으로 통합 설치 가능	39		
	주요 보도의 교차로와 주요 시설의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방향안내사인 설치	40		
	방향안내사인은 글자의 크기 및 배색을 고려하여 멀리서도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40		
	방향안내사인은 목적 시설의 방향과 소요거리 등을 표기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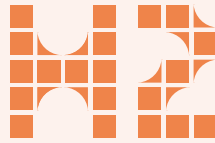
2	휴게, 놀이, 운동, 조경시설물 등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휴게공간은 산책로, 보행로, 놀이공간, 정원 등 이동통로와 주요 공간에 설치하고 보행안전통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알코브형으로 설치	41		
	휴게공간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	41		
	놀이 및 운동공간은 소음,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동 및 차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하고 주변에 안전을 위한 녹지대, 자연감시를 위한 휴게공간 등 완충공간을 조성	42		
	놀이 및 운동공간은 안심공간 영역성 확보를 위한 시야 확보, 감시 기능 확보 (예. 일부 세대 또는 경비실에서의 자연감시, CCTV설치 등)	42		
	놀이 및 운동공간은 보호자가 휴식하며 관찰 가능한 휴게 공간 조성	42		
	놀이 및 운동공간의 바닥재는 충격흡수가 가능하며 휠체어 등 바퀴달린 탈것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견고한 재질 재질을 사용하고 평탄한 마감재 설치	42		
	실버 운동기구 등은 강한 일조, 우천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필로티 하부 공간에 설치하거나 그늘막 등을 설치 권장	42	권장	



입주자 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간 통합을 위한 놀이 및 운동기구 설치 권장 (예. 무장애 놀이터, 초세대 놀이터 등)	42	권장	
단지 내 주민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 등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	43		
미술작품을 포함한 시설물 등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우산 걸림이나 자전거 탑승 시 머리 부딪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수직 안전 높이를 확보	43		
고령자, 어린이 등의 정서 발달을 위해 공동텃밭 설치 권장	43	권장	
텃밭설치 시 텃밭 내에는 보행로 오염,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 권장 (배수시설을 보행로 내 설치 시 배수뚝개 틈새는 20mm 이내)	43	권장	
텃밭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들도 식물이나 작물을 만지고 가꿀 수 있도록 책상형 화분대 설치 권장	43	권장	
놀이 및 운동공간, 텃밭 등에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수전/세족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	43	권장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저층부 단위세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설치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을 지하공간에 설치할 경우 강제 환기 시설 설치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폭 4m이상의 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5톤 이상의 수거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내 통로 및 활동공간의 바닥재질은 습윤 시 정적 마찰계수 0.5이상 확보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내에는 용기별 용도 등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 설치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내 소방안전 등을 위해 불꽃감지 기능이 있는 CCTV 설치	44		
생활폐기물 보관공간은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 확보	44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투입구는 바닥에서 0.85m 내외의 높이의 제품 사용 권장	44	권장	
폐기물 보관공간 내에는 개수대와 트랜치를 설치하며, 개수대 수도꼭지는 레버형으로 설치 권장	44	권장	
생활폐기물 보관공간 내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44	권장	
자전거 보관대는 보행안전공간 외 자전거 도로와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보행로와 이격하여 설치	45		

자전거보관대를 구조물 하부(필로티 등) 외 천정이 없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 자전거 녹음 방지 등을 위해 천정 구조물 설치 또는 일체형 보관대 제품 설치 권장	45	권장	
자전거보관대는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숙이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프레임 거치형 제품으로 접근과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해 거치대 사이가 충분히 이격된 제품 설치 권장	45	권장	
자전거보관대 내 전동킥보드, 보행기, 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주차공간 마련 검토	45	권장	
자전거보관대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설비 설치 권장	45	권장	
환기구는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세대의 시야확보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하며, 급기와 배기를 이격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설치	45	권장	
환기구는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하며,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	45	권장	

주거동



47

(1) 공용출입구

1	주동출입구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주동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출입구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 (예. 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 및 질감이 다른 바닥/벽 재질, 색채 계획 등)	50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상의 출입구 조성 권장	50	권장	
	출입구 전면, 주동현관통제기 전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 (예. 필로티, 차양 등)	50		
	차양 설치 시 깊이 1m 확보	50		
	차양은 깊이 1.5m 이상으로 계획하고 충분한 너비 확보 권장	50	권장	
	주동출입구 재질은 미끄럼방지 성능 확보 (예. 석재 잔다듬 이상)	50		
	출입문 전후면에는 문 개폐 시 소요공간을 제외하고 1.5m × 1.5m 이상의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50		
	출입구 인근에는 노인, 어린이 등이 쉴 수 있는 간이 의자 설치 권장	50	권장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 설치 권장	50	권장	
출입구 인지 및 활동을 위해 100lx 이상 조도를 확보하되 주변에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함	50		
필로티형 출입구는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로 하고 우천 시 배수를 위한 1/50이하 구배 적용	51		
선홈통은 보행공간 외 설치하거나 보행공간 내 설치 시 배수덮개까지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고 배수덮개 및 트렌치는 틈새 10mm이하의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권장	51	권장	
출입구에 계단 설치 시 성인 2인의 교행을 위해 1.2m 이상의 유효폭 확보 및 계단 디딤판은 0.28m 이상, 철펠 높이 0.18m 이하로 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며 계단코, 계단참 등은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설치	51		
경사로 설치 시 경사도 1/18 이하(횡단구배 1/50이하)로 휠체어, 유아차, 수레 등 이동이 편리한 기울기 확보	51		
계단, 경사로 설치 시 전후면 및 휴식참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해 1.5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51		
계단 및 경사로 손잡이는 양측에 모두 설치하며, 잡기 쉽고 차감지 않은 재질로 하고 인지하기 쉬운 색상으로 설치 권장	51	권장	

2	주동출입문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휠체어 통과를 위한 최소 유효폭 확보 (예. 0.9m이상)	52		
	이삿짐, 쌍둥이 유아차,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한 충분한 유효폭 확보 권장 (예. 1.1m 이상)	52	권장	
	색면, 패턴, 도형 등 구분 가능한 형태로 된 수평 띠를 2단으로 부착 (예. 일반높이 1.5m, 어린이·스몸비족 0.5m)	52	권장	
	여닫이나 미닫이 문의 경우 손끼임 방지 설비 설치	52		
	누구나 편안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 자동문으로 설치	52		
	자동문에는 되열림 기능이 작동되는 안전센서 설치 (안전센서 감지범위 : 바닥에서 0.5~0.7m 높이)	52		
	자동문만 설치 시에는 비상 상황에 수동 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	52		
	주동현관통제기는 비상상황에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통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53		



주동현관통제기는 휠체어사용자,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권장 (예. 바닥에서 기기중심까지 1.2m 높이, 모서리에서 0.4m 이상 이격)	53	권장	
주동현관통제기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화각이 확보되는 제품사용 권장 (예. 하단 1.2m이하, 상단 1.8m이상)	53	권장	
색약자, 약시자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버튼 설치 권장 (예. 배경의 명도 대비, 강조 색채의 사용 등)	53	권장	
시각장애인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성 확보 권장 (예. 점자 병기, 음성안내, 양각버튼, 비콘/블루투스 활용 등)	53	권장	

(2) 공용홀 및 복도

1	로비 및 복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서 로비, 승강기(또는 계단실)까지의 시야 확보를 권장하며, 안전 등을 위해 사공간 및 꺾임 최소화 권장	55	권장	
	로비 내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휴식을 위한 교류공간 설치 고려 (예. 라운지, 휴게공간 등)	55	권장	
	로비는 이동 및 방향 확인 등을 위해 100lx 이상의 충분한 조도 확보	55		
	로비에는 주 보행통로를 기준으로 인지하기 쉬운 방향 안내시설 설치	55		
	우체통·무인택배함·계절창고 등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예. 벽부매립형, 전면에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및 바닥에서 0.6~1.2m 사이에 위치)	56		
	우체통·무인택배함·계절창고 등은 누구나 쉽게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함 (예. 바 형태 손잡이, 큰 숫자 표시, 컬러 적용 등 활용하여 인지성 확보)	56		
	무인택배함은 다양한 택배 형태를 고려하여 크기를 차별화하고, 필로티 하부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56		
	단위세대의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과 택배 이용 편의를 고려한 별도의 수납공간 설치 권장 (예. 무인택배함, 계절 창고, SH특화-한칸더 수납장 등)	56	권장	
	공용복도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	57		
	공용복도 유효폭은 1.8m 이상 확보 권장	57	권장	
	복도에는 알코브를 계획하여 세대 출입문과 복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권장	57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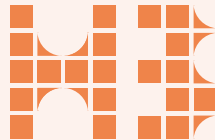
공용복도의 벽과 바닥은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도차이(명도차이 3이상 권장)가 나는 색상으로 마감(안전색채를 배제하고 중명도 계열의 배색 사용)하고 바닥, 벽면, 천장 등에는 시지각적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복잡한 패턴 사용 금지	57		
공용복도에는 세대 호수 방향 안내사인 설치	57		
공용복도는 이동 및 방향 확인 등을 위해 100lx 이상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범죄예방 등을 위해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권장	57	권장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층 또는 동은 보행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벤치 등을 설치	57		
일반세대가 거주하는 층에도 핸드레일, 벤치 등의 설치를 권장	57	권장	
공용복도에 설치하는 창은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개폐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계획	57		
공용복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0.3m이상의 사면처리를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활동 공간 확보 권장	57	권장	
소화전, AED(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눈에 띄게 배치	57		
안전색채, 표준 픽토그램 등을 사용한 대피 안내사인 설치	57		

2	수직이동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승강기 전면에는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회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확보 (예. 1.4 × 1.4m)	59		
	승강기 전면에는 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여유로운 회전을 위한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를 권장 (예. 1.5 × 1.5m)	59	권장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검용으로, 법적 기준 이상의 충분한 규모를 가진 승강기 설치 (12인승 이상)	59		
	15인승 이상 승강기 설치 권장	59	권장	
	승강기 내 조작설비는 크기, 색상, 형태를 활용한 시인성 확보 권장	59	권장	
	건강증진을 고려 1~3층까지 계단 이용 유도 디자인 적용 권장	59	권장	
	계단실은 각 층별 인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	59		



3	공용화장실 및 세족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공용화장실 설치 시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층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 권장	60	권장	
	반려동물 산책 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권장 (예. 반려동물 세족시설, 배변처리기 등)	60	권장	

단위세대



61

(1) 출입문 및 현관

1	현관 외부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벽부/천장/바닥의 재질/색상 등을 달리하여 세대 출입공간의 인지성 확보 권장	64	권장	
	문틀, 문, 손잡이, 주변 벽체, 현관도어 카메라의 시인성 확보 (예: 명도차가 있는 배색 적용 등)	64		
	벽부/바닥 등에는 대피 방향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함	64		
	공간 이용 안전성 등을 위한 동작감지 자동조명 설치	64		
	사생활 보호, 환기 성능 확보 및 갑작스런 문 열림으로 인해 복도에서 이동하는 사람과 ▫ 부딪히지 않도록 알코브 형태의 계획 권장 (예. 1.5m이상의 너비, 0.9m이상의 깊이)	64	권장	
	우체통·무인택배함·계절창고 등은 누구나 쉽게 사용 및 인지가 가능하도록 함 ▫ (예. 바 형태 손잡이, 큰 숫자 표시, 컬러 적용 등 활용하여 인지성 확보)	64	권장	

2	현관문 및 조작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 확보 ▫ (예. 출입문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으로부터 모서리벽까지의 여유폭 0.6m이상)	65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단차 확보 ▫ (예. 15mm 이하~최대 20mm)	65		



	문 손잡이 등 조작설비는 누구나 사용이 쉬운 높이에 설치	65		
	문 손잡이는 쉽고 단순하게 조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65		
	문을 열고 세대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열림 시간 확보 (예. 열림 각도별 닫힘시간 조절이 되는 도어 클로저 설치 (5초 이상))	65		
	출입문은 90도 이상 개방 시 자동 고정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거나 도어스탑을 설치함	65		
▣▣	출입문은 적은 힘으로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 설치	65		
	현관도어 카메라는 출입문 손잡이 방향 벽면에 설치함	65		
▣	현관도어카메라는 어린이, 저신장 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하고 방문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예. 바닥에서 기기 중심까지 1.2m내외 높이, 출입문에서 0.15m이상 이격하여 설치)	65		
▣▣	현관도어카메라는 손가락 끝이 뭉툭한 사람, 손끝 감각이 둔한 사람, 짐을 든 방문객, 시각장애인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제품 설치 권장 (예. 버튼크기 가로세로 각 20mm이상의 큰 버튼과 점자병기 등	65	권장	

3	현관 내부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다양한 활동 지원(보행보조기 이용, 캐리어, 장바구니 소지 등)이 가능한 충분한 현관 내부 유효폭 확보 (예. 가로 1.5m이상 확보)	67		
▣	현관 바닥은 평탄하게 마감 (예. 종·횡단 1/50이하)	67		
▣	현관 내부와 거실 사이는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 (예. 20mm이하)	67		
▣	필요 시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판 설치 (예. 1/10이하 기울기, 습윤시에도 미끄럽지 않은 석재 잔다듬 이상의 미끄럼방지 성능)	67	권장	
▣	손잡이/보조자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벽면 보강 (예. 0.3~1.8m 양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67		
	중문 설치 시 적은 힘으로 조작이 가능한 문으로 설치 (예. 미닫이, 3연동 도어, 자동문 등)	67	권장	
▣▣	휠체어 사용자 거주세대 내 중문 설치 시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으로 미닫이문 또는 버튼형 자동문 형태로 설치 권장	67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을 미닫이문으로 설치 시 손잡이는 세로 바 형태로 문틀과 대비되는 ▣▣ 색상의 제품 설치 권장 (예. 중심 0.85~0.9m 사이에 위치하거나 아래에서 위까지 긴 형태의 손잡이 설치) 	67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을 자동문으로 설치 시 조작버튼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 (예. 바닥에서 0.8~0.9m내외(0.2~0.3m 내외 높이 추가설치 권장), 모서리에서 0.25m이상 이격) 	67		

4	수납공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손잡이는 잡기 쉬운 바 형태	69		
▣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의 수납이 가능한 공간 확보 권장 (예. 바닥에서 0.4m이상의 하부공간)	69	권장	
▣	휠체어, 유아차 등의 수납이 가능한 하부수납장 혹은 수납을 위한 팬트리 설치 권장 (예. 최소 깊이 0.35m, 폭 1.06m, 높이 0.95m이상)	69	권장	
▣	선반은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선반 설치 권장 (예: 0.9m 내외)	69	권장	

5	보조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전기, 가스 등이 차단될 수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70		
▣▣	일괄소등 스위치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위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쪽 모서리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예. 0.3m 이상)	70		
	신발을 갈아신고, 정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 (예. 60~150lx이상 확보)	70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조의자를 설치 (예. 수납장과 연계하여 설치, 높이 0.45m내외, 너비 0.4m이상, 깊이 0.4m이상)	70		
▣	손잡이는 잡기 쉽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권장	70		
▣▣	공간 개방감, 용모 확인을 위해 벽면, 수납가구 문 등을 활용하여 전신거울을 설치	70		
▣	현관 내부에는 전동휠체어 등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	70		



(2) 거실 및 통로

1	통로 및 활동공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거나 1.5m 이상 확보 권장	72		
□	출입문 전후면, 창호전면에 보행보조기/목발 사용자, 임산부 등의 설비 조작과 회전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예. 1.2m × 1.2m이상)	72		
□□	출입문 전후면, 창호전면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설비 조작과 원활한 회전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예. 1.5m × 1.5m이상)	72	권장	
□	여닫이문 당김방향의 경우 문 개폐 소요공간 외에 움직일 수 있는 후면 활동공간을 확보 권장 (예. 1.2m이상)	72	권장	

2	실내 출입문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출입문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 (예. 여닫이문 0.9m이상, 미닫이문 1.0m이상)	73		
	손잡이 방향 측면에는 손잡이 조작을 위한 날개벽 확보 (예. 0.25m이상)	73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문 손잡이 설치	73		
	손끼임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예. 손끼임 방지 커버 등)	73		
	문틀 하부는 10mm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무단차 권장	73		

3	세대단말기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세대단말기로의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 없는 위치에 설치 권장 (예. 바닥에서 기기중심 1.2m내외 높이, 모서리 등에서 0.4m이상 이격하여 설치)	74		
□	누구나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면은 저반사 재질로 적용하고, 디지털약자, 약시자, 시스템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화, 문열림 등의 주요 기능은 양각/점자 등이 병기된 버튼형태를 권장	74		
	청각 장애인, 임산부, 반려견 등을 고려하여 벨과 초인등 병행 설치 권장	74		
	벨/초인등 선택가능 및 음량 조절 기능 제품 사용 권장	74		
□□	조명, 냉·난방 on-off 등 휴대조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 제공 권장	74		



4	조작 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전등스위치는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예. 중심이 바닥에서 1m~1.2m내외 높이로 세대단말기 등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권장)	75	권장	
	스위치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림 또는 문자로 설명 표기 권장	75	권장	
	암전 시 거실 등 전등스위치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권장	75	권장	
▫	환기조절기 및 온도조절기는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 (예. 중심이 바닥에서 1m~1.2m내외 높이로 세대단말기 등과 겹치지 않도록 설치 권장)	75	권장	
▫	환기조절기 및 온도조절기는 전등 스위치와 혼동되지 않도록 색, 형태 등을 통해 구분되도록 하며, 조작이 간편한 제품 설치 권장	75	권장	
▫	전기콘센트는 신체에 무리를 가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권장 (예.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사용 가능위치, 중심이 바닥에서 0.35~0.85m 내외 높이에 설치를 권장하며, 예상되는 기능에 따라 설치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75	권장	
▫	전기콘센트는 모서리 등에서 0.4m이상 이격	75		

5	비상, 응급 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대피경로를 알 수 있는 안내도를 세대별로 부착	76		
	비상대피안내도는 비상 탈출구, 소화기 등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	76		
▫	비상경보기, 비상연락장치는 입주자 요청 시 거실, 욕실, 침실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76	권장	
▫	단지 내 상시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실에 비상연락장치 수신반 설치 권장 (상시 감시가 되지 못하는 경우 자녀, 119등과의 연결 고려)	76	권장	

(3) 주방

1	공간구성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수납, 조리 공간 전면은 다양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여유로운 활동공간 확보 (예. 도구 이용, 짐 옮기기, 보행보조기 이용 등, 최소 1.2m × 1.2m 이상 ~1.5m × 1.5m)	78		
▫▫	수납, 조리 공간 전면은 휠체어 사용자 등의 작업, 이동, 회전 등이 자유로운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권장(예. 1.5m × 1.5m 이상)	78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테이블 등의 사이는 보행보조기 이용자의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예. 최소 1.2m~1.5m)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테이블 등의 사이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권장(예. 1.5m 이상) 	78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하부장의 수납공간 또는 휠체어 무릎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온수분배기는 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 권장 	78	권장	

2	주방가구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대는 사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높이로 설치 할 수 있음 (예. 개수대 상단 높이 평균 0.85m내외, 깊이는 0.6~0.7m내외)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의 요청 등으로 입식 또는 좌식 형태로 설치 가능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장 설치 높이는 이용자의 상부장 이용성, 작업대 시야확보, 머리 부딪힘 등을 고려하여 설치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장 내부 선반은 투명재질 등 시야 확보된 형태로 설치 권장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장은 사용이 편리한 서랍식 구조로 설치 권장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장 아래 공간 확보 또는 수납장 분리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구성 권장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장은 작업대보다 후퇴시켜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 확보 권장 	79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설치 시 시인성이 확보된 바 형태로 설치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열대 상부에는 안전을 위한 자동식소화기 설치 공간을 확보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여부 확인 및 사용하기 편리한 다이얼 방식의 가열장치 설치 (예. 다이얼 조작형 인덕션 등)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기본적인 가전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설치 공간을 마련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대에서 이용이 편리한 콘센트 설치 	79			



3	환기, 조명 등 안전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재료손질, 재료확인, 문구 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작업면 조도를 확보하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위치, 보조조명 설치 등을 고려 (예. 100~150lx이상 확보)	81		
▣	시각에 의존하는 청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충분한 작업면 조도 확보 권장 (예. 조도 300lx이상)	81	권장	
	가스렌지 설치 시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기 설치	81		
▣▣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기 설치 시 시각,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인지성 높은 경보·안내 설비 병행 설치 권장	81	권장	
	가스밸브는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 (예. 1.2m 내외의 높이)	81		
	편의성, 안전성을 위해 가스 자동 차단기 등을 설치 권장	81	권장	
▣▣	환기용 창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 권장 (예. 높이 0.85m내외, 깊이 0.7m이하)	81	권장	

(4) 위생공간

1	공간구성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휠체어 사용자,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규모로 계획	83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의 출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물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의 단차로 설치 권장 (예. 20mm이하)	83	권장	
	겨울 등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적용	83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 (예. 습윤시 정적마찰계수 0.6이상 확보 마감재)	83		
	입구 전면 일부구역에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 (예. 욕실 앞(발매트 설치 구역 등) 미끄럼방지 바닥재 적용 등)	83	권장	
	벽과 바닥은 위생도기와 대비되어 인지될 수 있도록 색상 및 명도를 고려한 타일 선택	83		
▣	향후 입주자 상황에 따라 손잡이/보조일자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벽면 보강 (예. 0.3m~1.8m 앙카/피스 고정 가능 구조체)	83		
▣	보행보조기 사용자가 쉽게 이동 및 회전 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예. 1.2m × 1.2m이상)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제공자가 대상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으며 휠체어사용자가 쉽게 이동 및 회전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 확보 (예. 1.5m × 1.5m이상)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인근 세탁기 설치, 건식 세면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권장 	83	권장	

2	대변기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대변기 좌우에는 대변기 세정장치의 조작, 점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예.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m내외 이격)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좌우에는 안전손잡이 설치와 이용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예. 안전손잡이 설치 시 대변기 중심은 벽면 마감선에서 0.45~0.5m내외 이격) 	85			
	대변기 좌대는 앉고 서기, 휠체어에서의 옮겨 앉기 편리한 높이의 제품으로 설치 (예. 바닥에서 0.4m내외)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좌대는 앉음, 등 기댐, 향후 등받이 설치 등을 고려한 충분한 깊이를 확보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좌대에서 이용 가능한 수평, 수직 형태의 안전손잡이 설치 (예. 0.6~0.7m 높이 위치, 지름 35mm 내외, 측면공간 50mm이상,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120kg의 하중을 지지)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버식 외에 벽면 조작형, 압력감지 또는 센서형 등을 설치 권장 	85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용 창 설치 시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 권장 (예. 높이 0.85m내외, 깊이 0.7m이하) 	85	권장		

3	세면대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누구나 손을 씻거나 세면 가능한 높이에 설치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특성, 세대의 요청 등에 따라 세면대 설치 높이를 달리 조정 가능 	86	권장		
	세면대 하부장 설치 시 하부장은 세면대보다 후퇴시켜 서서 이용하는 사람의 무릎공간 확보된 제품 설치 권장 (예. 50~100mm 후퇴)	86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하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위해 하부공간 확보를 권장 (예. 높이 0.65m, 깊이 0.45m이상 권장) 	86	권장		
	거울은 누구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너비로 설치 권장	86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지지, 수건걸이 등의 활용을 고려한 안전손잡이 설치 (예. 0.8~0.9m 높이 위치, 지름 35mm 내외, 사이간격 50mm 내외,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120kg의 하중을 지지) 	86			



수도꼭지는 레버형 등 on/off, 냉/온수 조작이 쉬운 제품으로 설치	86		
---	----	--	--

4	샤워 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보행보조기 사용자, 노인 등이 몸을 닦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계획 권장 (예. 1.2m × 1.2m 이상)	87	권장	
▣▣	휠체어 사용자, 활동보조인 등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계획 권장 (예. 1.5m × 1.5m 이상)	87	권장	
▣	샤워부스에 출입문 설치 시 여닫기 쉬운 형태의 문으로 보행보조기, 샤워용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 확보 (예. 0.8m 이상, 박여닫이 혹은 미닫이 형태)	87		
▣	샤워부스 출입문 손잡이는 사용하기 쉬운 높이와 형태의 제품으로 설치	87		
	수도꼭지는 누구나 서서 또는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 (예. 0.9m 내외의 높이로 설치)	87		
	필요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고정이 가능한 형태의 슬라이딩 바 설치	87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 선반 설치	87		
▣	서있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앉기 편한 높이 및 수도꼭지 등의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고정식,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 (예. 바닥에서 0.45m 내외 높이)	87		
▣	보조 의자, 수도꼭지 주변에 안전한 이동 및 샤워를 보조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	87		
▣	수평손잡이는 0.8~0.9m 높이에 설치	87	권장	
▣	안전손잡이 규격은 지름 35mm 내외, 사이간격 50mm 이상으로 하고,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및 120kg 하중의 지지가 가능한 것으로 사용 권장	87		

5	욕조 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욕조 내외부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의 욕조를 설치 (예. 바닥면에서 0.4~0.45m 이내 높이)	88		
▣	욕조 내외부 이동보조를 위한 데크 설치 권장 (예. 데크 폭이 0.4m 내외 확보 되는 제품 혹은 매립형 설치 시 확보)	88	권장	
▣	욕조 내 목욕 편의, 자세 유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의자 설치 권장 (예. 미끄럼방지 코팅이 된 낮은 의자 등)	88	권장	
▣	욕조 내외부로 이동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평 손잡이 설치	88		



수평손잡이는 옥조 상단에서 0.3m이내, 수직손잡이는 바닥에서 1.5m내외 높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88	권장	
안전손잡이는 120kg 하중의 지지가 가능한 것으로 사용 권장	88	권장	
안전손잡이 재질은 차갑지 않거나 미끄럽지 않은 소재 사용 권장	88	권장	
수도꼭지는 내외부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권장	88	권장	
활동보조인 활동공간을 확보 (예. 0.7m × 1.2m 이상)	88		

6	비상호출 및 기타설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비상연락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권장 (예. 바닥면에서 0.8m 내외 높이, 변기 앞 끝에서 뒤쪽으로 0.1~0.2m 되는 지점에 설치하며, 가능한 바닥면 0.3m내외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형태 권장)	89	권장		
휴지걸이는 대변기 좌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89			
욕실내부 천장 또는 출입구 인근에 야간이동 시 점등되는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예: 센서형 간접조명)	89			

(5) 방

1	창호 설치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창호의 손잡이는 누구나 조작이 쉬운 높이와 형태로 설치	91			

2	조명제어와 수납가구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이동이 어려운 거주자를 고려하여 누워서도 조명의 조작이 가능한 장치나 서비스 제공 권장 (예. 리모컨, 애플리케이션 등)	92	권장		
불박이장, 드레스룸, 수납장 등의 전면에는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의 조작과 작업을 위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 (예. 최소 0.7 × 1.2m 이상)	92			
키가 작은 거주자 등을 위해 옷걸이, 선반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수납장 설치 고려 (예. 높이 1.2m내외에서 이용 가능한 가동형 상단봉, 시스템 옷장 등)	92	권장		



(6) 다용도실 및 발코니 등

1	공간구성과 문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효폭 확보 (예. 1.2m이상)	94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 (예. 20mm이하)	94	권장	
▫	문 하부 레일 틈새는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는 제품 사용 권장 (예. 20mm이하)	94	권장	
	창호의 손잡이는 누구나 조작이 쉬운 높이와 형태로 설치 (예. 레버형태로 개폐 및 조작이 가능한 제품 등)	94		
▫	입주자 요청 시 부딪힘 방지를 위해 발코니 유리 위에 안전시트 부착	94	권장	

2	세탁실, 보조 주방 등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세탁기 조작과 세탁물 투입 등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예. 0.7 × 1.2m 이상)	95		
	드럼세탁기나 통돌이 세탁기 등의 세탁물 투입구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되도록 설치 (예. 세탁기 설치 공간 단 높이 조정 등)	95	권장	
	세탁물 투입 전후 임시 거치용 선반이나 수거함 등을 세탁기 인접하여 설치 (예. 슬라이딩 선반, 세탁기 하부 서랍장 등)	95		
	건조대는 키가 작은 사람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상하 높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95		
▫	건조대는 자동으로 상하 높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 고려	95	권장	
▫▫	조작설비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조작 가능한 높이에 설치 (예. 높이 0.85m 내외)	95		
▫▫	이용편의성을 위해 휴대용 무선 조작 설비 설치 권장	95	권장	
	수도꼭지와 스프레이건은 조작과 작동 시 적은 힘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지나치게 강한 수압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제품 사용 권장	95	권장	



3	피난공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및 이용 가능한 방화문 권장	96	권장	
▫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최소한의 단차 확보 권장 (예. 20mm이하)	96	권장	
▫	약력이 약하거나,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설치 권장 (예. 레버형 손잡이 설치)	96	권장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 확보 권장 (예. 1.2m × 1.3m이상 확보)	96	권장	
	외국인, 문맹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등으로 피난 통로 표시 권장 (암전시 등에도 확인 가능)	96	권장	

4	보일러 및 실외기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누구나 조작성이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설치 고려	97	권장	
	휠체어 사용자, 키가 작은 사람도 가스 점검/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 (예. 원격식 계량기는 세대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형태로 설치, 직독식 계량기의 경우 높이 조정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	97	권장	

주거동 외 시설



99

(1) 공동체 지원 시설

1	어린이집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출입구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자연감시 가능한 위치에 배치	102		
▫	이동동선 최소화를 위해 단지출입구 및 승하차 공간과 인접 배치	102	권장	
	어린이집 접근로 및 출입구는 유아차를 끌고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행 이상의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평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102		
▫	출입구 인근 작은 정원 설치 권장	102	권장	

출입구 상부에는 강한 햇빛, 우천시 등을 대비하여 포치, 차양 설치	102		
출입구 인근에는 유아차 거치공간 및 부모 대기공간 마련 권장	102	권장	
아동의 시야 확보를 위해 출입문은 아래에서 위로 긴 투시창 설치	102		
문 손잡이는 아동의 이용이 어렵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손끼임 방지 등으로 안전성 강화 (예. 레버형, 푸쉬풀형)	102		
현관은 보호자와 어린이 동시 출입이 가능한 넓은 공간 확보	102		
현관에는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의자와 외부활동 후 흙모래 제거를 위한 에어건 및 손씻기 수전 설치	102		
기저귀 교환공간, 수유공간, 영유아 화장실 등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	102		
회의실, 상담실, 교사실, 교사휴게실 등 관리자가 편한 관리 공간 조성	102		
조리실, 세탁실 등은 최적의 작업동선을 계획하며, 근로자를 위한 세면시설과 탈의실 등을 조성	102		
복도, 계단 등은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며, 시야가 차단되지 않고 방향, 구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102		
영유아 화장실은 영유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 관리가 쉬운 마감재와 설비를 구비	102		

2	경로당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커뮤니티 활성화와 옥외활동이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 (예. 어린이집, 광장, 실버운동기구 등과 인접배치)	104		
	접근로는 지팡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고도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 확보 및 단차 제거	104		
	출입구에는 강한 햇빛, 우천시 등을 대비하여 포치, 차양 설치	104		
	출입구 인근에는 보행보조기 거치공간 마련	104		
	마주오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투시문이나 사용성을 고려한 자동문 설치	104		
	문 손잡이는 노인의 사용이 어렵지 않은 제품 사용하고 손끼임 방지 등으로 안전성 강화 (예. 레버형, 푸쉬풀형)	104		
	현관에는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의자를 충분히 설치	104		



바닥, 벽, 천장 등에는 컬러와 그림 요소 등을 활용하여 공간 정보 등 인지 능력 향상을 돕고 색, 조명 등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 연출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 계획	104		
통로, 복도 등에는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시인성 확보 및 충돌방지시설 설치	104		
주방은 현관 인근에 설치 권장	104	권장	
거실은 식사,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하며,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위해 외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권장	104		
다양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머니/할아버지 방을 조성하며, 개별 화장실 설치	104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	104		
화단, 텃밭 등을 인접 배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	104		
앉고 일어서기 어려운 고령자를 배려하여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비치 권장	104	권장	

3	작은 도서관, 도서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접근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 확보 및 단차 제거	106		
	출입구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 없는 여유로운 전면 공간을 확보	106		
	출입구에는 강한 햇빛, 우천 시 등을 대비하여 상부 포치, 차양 설치	106		
	출입구 인근에 유아차, 보행보조기 거치 공간 마련	106		
	서가 사이는 누구나 이동 및 멈춰서 책을 고를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 (예. 1.2m 이상)	106		
	서가는 누구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설정 (예. 1.5m 이하)	106		
	다양한 형태의 높낮이 및 재질을 가진 의자 설치 권장	106	권장	
	휠체어 사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책상 설치 권장 (예. 하부공간 확보된 형태, 높낮이 조절 책상 등)	106	권장	
	눈부심, 그림자 없도록 간접등 설치	106		
	바닥재질은 흡음 성능이 좋고, 울림이 적은 재질 설치 권장	106	권장	
	돋보기 등 필요한 보조 설비 구비	106		



4	게스트하우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설치	107		
	입주민에게 이용 안내 등을 제공	107		
	온라인, 방문, 전화 등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을 운영	107		

5	그 외 공동체 지원시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지역 돌봄시설(어린이, 노인 등), 공유시설(공유주방 등),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고려	108		
	단지 외곽 외부 가로와 바로 연결되도록 배치 권장	108		
	관리사무소, 경비실 인접 배치하여 유지관리 및 안내가 용이하도록 설치	108		
	입주민 주차공간과 분리된 별도 주차공간 및 이동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며, 어려울 경우 주차장 내 별도 지상 연결 및 수직이동시설 설치 고려	108		

(2) 관리지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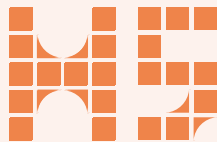
1	관리사무소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인적 서비스 등의 지원이 쉽도록 공동체 지원시설과 인접 배치	109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규모, 형태, 설비를 계획	109		
	접수 창구, 주민상담실 등 공동주택 내 민원접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공간 조성	109		
	접수 창구는 앉아서 대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109		
	충분한 대기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도록 계획	109		
	숙직실, 탕비실 등 직원 서비스 공간 마련	109		
	통신실, 종합방재실, 방범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통신 설비 설치	109		
	비상 구급약 비치,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호송계획 수립 권장	109	권장	
	화장실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 권장	109	권장	



2	경비실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주요 공간과 외부 출입구 등 개방된 경계부위에 출입자 감시가 효율적이도록 배치	110		
	최소 2면 이상의 외부 창호 등 자연 감시 기능 확보	110		
	3면 이상의 벽면에 창 설치 권장	110	권장	
	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	110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낮은 창구 설치	110		
	휴게실 설치	110		
	냉난방기 설치	110		
	안전손잡이, 장애물 없는 화장실 설치	110		

3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5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은 휴게공간, 샤워/탈의 공간, 식사공간 등 청소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여 배려있는 환경 조성	111		
	관리사무소와 별도 출입구 계획	111	권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3

(1) 공동체 활성화 지원

1	프로그램 운영지원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건강, 활력 증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116	권장	
	창고, 수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권장	116	권장	

2	입주민 정보 안내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게시판은 A3로 규격화하고, 큰 안내글자를 사용하며, 색약자를 고려한 배색	116	권장	
	내용과 상관없는 과도한 일러스트 등 지양	116	권장	
	세대 방송은 명확하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속도, 톤 등을 고르게 제공하며, 2회 이상 방송	116	권장	

(2) 유지관리 지원

1	공용창고 마련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장애인용 화장실의 창고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별 비품함 설치 권장	118	권장	

2	청소, 소독 등	PAGE	적용여부	해당없음
	공간별 청소, 소독 주기 설정하고, 감염병 예방등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수행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리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	118	권장	
	가지치기 등 계절별 수목관리 진행, 병충해 소독 정기적 수행	118	권장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공공주택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s, PUBLIC HOUSING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 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주택품질혁신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정책연구실
집 필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주택품질혁신처 (이원철, 이동화, 조예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정책연구실 (이주형, 박선희, 허송이, 김민수)
발행일	2023년 3월 1일 초판 발행
책 디자인	사록(sarok)
ISBN	979-11-6599-881-3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 및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Copyright 202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eoul Universal Design Center All rights reserved.